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869-01

2015. 2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 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경 필 연구위원
연구 원: 반 현 정 연구원
한 정 훈 연구원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 경 필 연 구 위 원
반 현 정 연 구 원
한 정 훈 연 구 원

연구 담당

| | | |
|-----|------|------------------|
| 김경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 1장~제 6장 |
| 반현정 | 연구원 | 제 2장, 제 4장, 제 5장 |
| 한정훈 | 연구원 | 제 2장, 제 3장 |

머 리 말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식품 개별품목도 관세 하락에 의해 교역증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세하락에 의한 시장 개방화 여건이 진전되면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농식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강화하는 경향이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국의 비관세조치 폐지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 달성을 위해서 주요 수입 국가의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식품 수출 주요 국가에 대한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농식품 수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영향 분석,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기관별 역할 개선방안 등이다.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할랄식품 및 관련 시장 동향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농식품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농식품 수출증대와 인프라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5.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약

최근 비관세장벽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비관세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농식품 관련 비관세조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한국 기업이 중국 수출에서 직면한 비관세조치는 대부분 SPS와 관련된 사항이다. 최근 중국은 식품 안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 이러한 법규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수출에서는 대부분 기술 규제(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되고,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조치는 품질 기준, 수입 허가제(import licensing), 수입 쿼터제, 표시제(labeling)라고 볼 수 있다.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할랄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 및 생산-가공-포장-저장-유통 등 전 과정의 할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비관세조치의 계량화를 위하여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산출하였으며, 산업연관모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Kee et al.(2009)이 적용한 수입수요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김치류(HS 200599) 단일품목의 전 세계 수입수요함수를 추정된 결과, 중국의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는 2011년 13.1%, 2012년에는 11.6%로 산출된다. 2011년과 2012년의 중국의 최혜국관세(MFN)가 25.0%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본 분석에서 추정된 13.1%와 11.6%라는 관세상당치는 낮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실측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추정된 결과, 생산유발액은 국내 전체 산업에 122~1,220억

원, 농림축산업에는 24~238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부가가치유발액의 경우 국내 전체 산업은 42~422억 원, 농림축산업에는 13~129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취업유발효과는 국내 전체 산업은 136~1,365명, 농림축산업은 54~543명으로 산출되었다.

각 국가들의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증대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 협업·역할 분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장벽 대응 관련기관별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관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출국 비관세장벽 대응 협상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수산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체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위생·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조치 관련 수출 애로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SPS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SPS 문제가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각 협의체의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범부처 수출개척 TF에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민관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에서 협의하고, 그 밖에 ‘국가 간 관세청장회의’, ‘기관 간 협의체’, ‘FTA·WTO 협상’, 양자·다자회의 등 의제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방법 11
4. 연구 추진체계 13

제2장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

1. 농식품 수출동향 15
2. 비관세조치 정의 및 분류 18
3.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 실태와 사례 24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65

제3장 농식품 비관세조치 경제효과 사례분석

1. 중국의 김치류 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68
2. 중국시장 김치 수출증대 파급효과 분석 84

제4장 비관세장벽 관련기관별 역할 개선방안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1
2. 관련기관별 비관세장벽 업무 현황 및 실태 93
3.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개선방안 105
4. 시사점 112

제5장 비관세장벽 대응 및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113

| | |
|---------------------------------|-----|
| 2. 비관세장벽 트렌드 대응 강화 | 115 |
| 3. 비관세장벽 대응 부처별·기관별 연계 강화 | 119 |
| 4. 국제협상의 비관세조치 항목 구체화 | 120 |

제6장 요약 및 결론

| | |
|------------------------------|-----|
| 1. 비관세장벽 실태 및 개선방안 | 121 |
| 2. 농식품 비관세조치 경제효과 분석 | 123 |
| 3. 비관세장벽 관련기관별 역할 개선방안 | 126 |

부록

| | |
|-------------------------------|-----|
| 부록 1.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 129 |
| 부록 2. 중국의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 133 |
| 부록 3. 중국의 품목별 NTM 적용 현황 | 142 |
| 부록 4. 할랄 시장 | 150 |

| | |
|-------------|-----|
| 참고 문헌 | 163 |
|-------------|-----|

표 차 례

제1장

| | | |
|------|---------------------------|----|
| 표 1- | 1. 연구 부문별 분석자료 및 분석 | 12 |
|------|---------------------------|----|

제2장

| | | |
|------|--|----|
| 표 2- | 1. 우리나라의 부류별 농식품 수출 실적 | 16 |
| 표 2- | 2.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상위 품목 | 17 |
| 표 2- | 3.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국가별 수출실적 | 17 |
| 표 2- | 4. 비관세조치의 분류 방법 | 19 |
| 표 2- | 5. UNCTAD의 NTM 분류 | 20 |
| 표 2- | 6. MAST의 비관세장벽(NTM) 분류 | 22 |
| 표 2- | 7. 중국의 NTM 현황 | 25 |
| 표 2- | 8. 중국의 품목별 NTM 적용 현황 | 27 |
| 표 2- | 9. 중국의 NTM 조치가 적용되는 한국산 농산물 품목(HS 8단위) ... | 28 |
| 표 2- | 10. 미국 농식품에 관한 중국의 NTM 제한 조치 사례 및 내용 ... | 31 |
| 표 2- | 11. 중국의 주요 통관 보류 및 역류 사례 분석(2012.1~2014.7) ... | 38 |
| 표 2- | 12. 베트남의 NTM | 40 |
| 표 2- | 13.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베트남의 NTM | 40 |
| 표 2- | 14. 인도네시아의 NTM 현황 | 43 |
| 표 2- | 15.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인도네시아의 NTM | 46 |
| 표 2- | 16.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현황(2007년) | 47 |
| 표 2- | 17. 2012년 할랄과 코셔 육류의 수입액 | 50 |
| 표 2- | 18.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 현황 | 52 |
| 표 2- | 19. 한국 농식품 수출 국가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분석 | 55 |
| 표 2- | 20. 국가 및 연도별/품목 유형별 분석 | 56 |

| | | |
|---------|--|----|
| 표 2-21. | 한국산 감귤 제품의 미국 수출액 추이(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개년) ... | 60 |
| 표 2-22. |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산 감귤 제품의 미국 수출 감소액 추정 ... | 61 |
| 표 2-23. | 한국산 사과 제품의 대만 수출액 추이(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개년) ... | 61 |
| 표 2-24. |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산 사과 제품의 대만 수출 감소액 추정 ... | 62 |
| 표 2-25. | 한국산 육류 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액 추이(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개년) ... | 63 |
| 표 2-26. |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산 육류 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 감소액 추정 ... | 63 |
| 표 2-27. | 한국산 건멸치의 미국 수출액 추이(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개년) ... | 64 |
| 표 2-28. |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산 건멸치의 미국 수출 감소액 추정 ... | 64 |

제3장

| | | |
|---------|--|----|
| 표 3- 1. | 중국의 김치류 제품 수입 현황 | 71 |
| 표 3- 2. | 중국의 김치류 수입시장의 상위 5대 수출국 | 71 |
| 표 3- 3. | 한국의 김치 수출입 현황 | 72 |
| 표 3- 4. | 한국의 대중 김치 수출 현황 | 73 |
| 표 3- 5. | 비관세상당치 추정을 위한 분석자료 요약 | 78 |
| 표 3- 6. | 핵만의 1단계 추정 결과(probit 모형): 비관세조치 더미(종속변수) ... | 79 |
| 표 3- 7. | 김치류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결과(2011년, 2012년) ... | 80 |
| 표 3- 8. | 중국의 최혜국관세율(MFN)과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비교 ... | 81 |
| 표 3- 9. | 비관세조치가 없을 경우 중국의 전 세계 김치류 수입량 추정 ... | 82 |
| 표 3-10. | 산업연관표의 가공식품 부문분류표 | 85 |
| 표 3-11. | 중국 김치 수출증대 시나리오별 국내산업 파급효과 분석 | 89 |

제4장

| | | |
|---------|-----------------------|-----|
| 표 4- 1. | 해외통관애로 해소 활동 현황 | 103 |
|---------|-----------------------|-----|

그림 차례

제1장

- 그림 1-1. 농식품 수출입 동향 2
- 그림 1-2. 국가별 농식품 수출 동향 3
-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도 13

제3장

- 그림 3-1. 농식품 교역 품목의 비관세조치와 수입수요 및 공급 74

제4장

- 그림 4-1.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업무 수행 절차 104
- 그림 4-2.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관세장벽 사례 처리절차 105
- 그림 4-3. 농식품 비관세장벽 해소체계 개선(안) 107
- 그림 4-4. 농식품 비관세장벽 관련 관계기관별 역할 체계 108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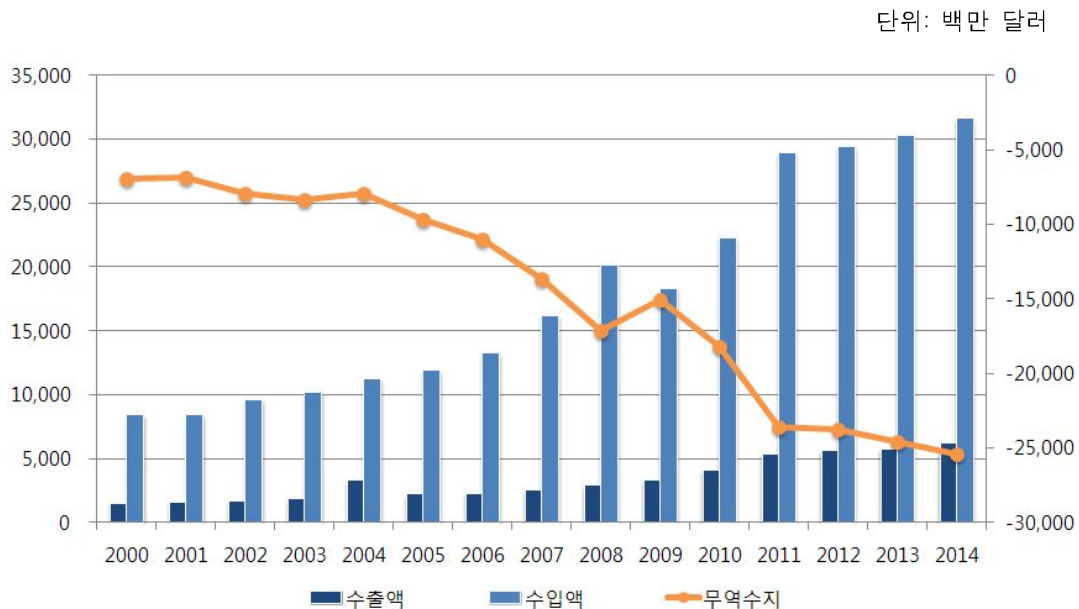
1.1. 연구의 필요성

-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신성장동력 확충과 창조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출목표(2017년 100억 달러)를 설정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추진전략 내용은 중국시장 진출전략 수립, 농업 미래성장산업 토론회 개최 등 경쟁력있는 농식품 산업기반 구축 등이 있음.

- 정부의 FTA 체결 추진 노력이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한·중 FTA 타결 외) 근거리에 위치하면서도 한국과 식문화가 비슷한 국가(중국, ASEAN 국가)를 국내 농식품수출 확대시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선제적으로 수출장애요인 발굴과 관련 대책·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FTA 등 시장개방 확대는 국내 농식품 산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베트남 등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농식품 분야도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시장은 내수시장 확대 정책,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로 수출 기회가 늘어나고, 베트남은 VIP 국민 방문, K-pop·드라마 등 한류 확산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농식품 수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 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농식품 주요 수출국이면서 지리적 이점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ASEAN 지역으로의 수출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그림 1-1. 농식품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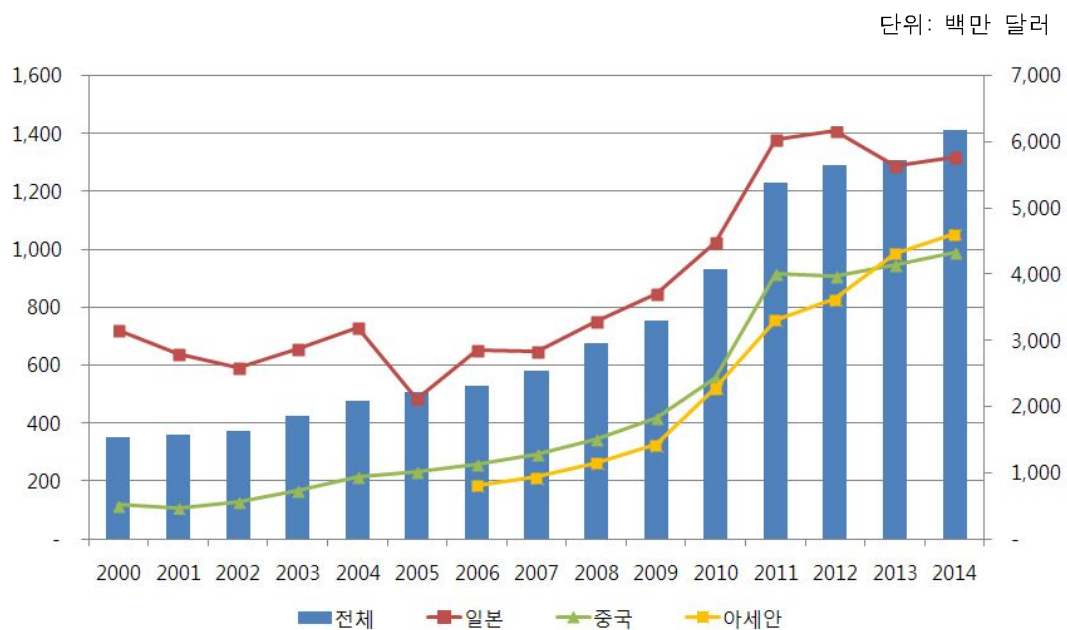


주: 수출액과 수입액은 좌측 Y축, 무역수지는 우측 Y축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4. aT.

- 우리나라의 농식품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ASEAN이며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 가운데 각각 22.5%, 16.6%, 17.2%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과 ASEAN 등 신흥시장 수출이 최근 5년간 20% 이상 성장하였음.
- 대일본 수출액은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로 바뀌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수출액 증가세가 2011년 이후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성장 잠재성이 높으며, ASEAN은 수출액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8~2013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ASEAN 30.1%, 중국 22.1%, 일본 11.3% 순서임.

그림 1-2. 국가별 농식품 수출 동향



주: 전체 수출액은 우측 Y축, 일본, 중국, 아세안 수출액은 좌측 Y축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4. aT.

- 최근 중국은 한류 영향과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수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되어 (2014.11.10.) 향후 수출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ASEAN 10개 국가 중 베트남이 2013년 수출액 기준으로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 농식품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출 확대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됨.
 - 2013년 9월 한-베트남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교역 700억 달러 교역 목표를 제시하였음. 베트남은 최근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산 인삼 및 조제분유의 우수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한편, 관세 하락에 따른 시장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 국가별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중국 시장으로는 생우유, 인삼제품 등 수출에 어려움이 있고, 우유 제품은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베트남 등 Asian 시장에서도 인증제도, 수입 식품등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농식품은 공산품과 달리 병충해·식문화 차이 등으로 비관세장벽이 두터워 수출기반이 있어도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농식품의 경우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로 인해 수출 대상국별 자국 기준에 맞는 수입위험분석 절차(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되는데 평균 7~8년 이상 소요됨.
 - 최근 한·중 양국 간 교역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어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함(이상훈 외, 2012).

- 따라서 최근 농식품 수요가 커져서 수출유망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식문화가 비슷한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 증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 장벽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세부적으로는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 분석,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영향 분석,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 역할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선행연구 검토

2.1.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 관련 연구

-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타산업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농식품분야의 비관세장벽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임. 농림축산식품부(2014.11)는 한·중 FTA 협상결과 동식물 위생·검역(SPS) 부문에서는 WTO/SPS 협정 수준으로 최종 합의하였음. 주요 내용은 지역화 등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 삭제,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의 강화를 위한 SPS 위원회 설치,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국이 확인한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에 대하여 “상품무역 위원회 산하 작업반”을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함. 위생·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사안을 제

외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투명성 증진 협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합의함.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의채널은 국내 농식품 수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임.

-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 가공식품류는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함. 낙농품, 화훼·채소류, 과일, 곡물·곡분 등 신선농산물은 완전생산 기준을 설정함. 소시지, 초콜릿, 조제분유, 과채류 조제품 등은 수입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을 완화함.
- 조윤희(2013)는 농식품 수출확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해외시장개척사업과 관련하여 라벨링 표기오류, 유해색소 첨가, 영양분 석표 미흡 등으로 통관이 거부되거나 수출국 식품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리콜조치를 당하는 등 수출국에 대한 정보 파악 미흡을 지적함.
- 송주호 외(2010)는 농식품 관련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을 분류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대미 감귤 수출 재개로 인해 감귤수출이 2,600톤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5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 송주호 외(2013)에서는 농식품 수출과정상의 애로사항, 식품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함. 통상정책 우선순위는 수출대상국의 통관절차 완화, 수출대상국의 까다로운 식품안전위생 검역문제 완화 순으로 제시함.
- 전형진(2012a, 2012b)은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상황에서 중국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에 대해 소개하였음.

2.2. 타 산업분야 비관세장벽 관련 연구

2.2.1.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연구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2013)는 주요 국가의 통상환경을 정리하였음. ‘지역별 통상환경’에는 총 83개국의 경제동향, 우리와의 무역관계, 각종 제도를 정리하였으며, ‘분야별 통상환경’에는 관세, 수입 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등 15개 분야별 통상환경을 정리하였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함.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2013)는 중국의 무역장벽으로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포장기준 적용, 통관항 임의 지정,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식품 수입통관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 김치 등 특정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등을 제시하였음. ASEAN 국가 중 베트남의 경우 HS 코드 세부분류 비일관성으로 인한 애로,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식물별 검역기준 미흡 등을 제시하였음.
 - 중국에서 식품 관련 무역장벽으로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등
- 정환우(2013)는 중국의 수출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으로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것을 지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기존 논의에서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의 철폐와 인허가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비관세장벽 분야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중국의 비관세장벽, 즉 기술무역장벽이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기는 하나 중국의 제도 운용 소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임.

- 정환우(2012)는 비관세장벽이 한-중 FTA에서 관세철폐만큼 중요하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분야 중 하나로 TBT, SPS 등 주요 비관세장벽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TBT 관련 비관세장벽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e: CCC), 자발적 인증제도, 차이나 RoHS, 차이나 REACH를 제시함
 - SPS 관련 비관세장벽으로 규범상 법규 미비,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위험평가, 투명성의 한계가 있으며 제도·집행상의 문제로 규제시스템, 설비, 인적 여건 등의 미비점을 지적함.

- 박상길 외(2010)는 한국, 중국,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각국의 무역구조 및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음.
 -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직접적 수입통제, 산업정책적 규제, 위생검역, 검사 및 인증, 행정관련 규제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행정관련 규제의 경우 정부조달의 불투명성, 세관의 불투명한 행정 관행, 법시행 관련 불투명성을 제시함.

- 김종훈(2012)은 중국시장의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 비관세장벽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비관세장벽의 광범위한 범위와 지속적인 변화와 발달에 따른 애로점을 한계로 제시함.

- 이상훈 외(2012)는 한-중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제거가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통관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음. 그 다음으로 기술장벽, 투명성, 가공무역관련 순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김유미(2012)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2.2. 비관세장벽 영향분석 연구

- 장용준 외(2011)는 최근 국제통상의 중요 이슈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 논의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이므로 주요 교역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의 TBT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태운 외(2010b)는 상품코드(HS) 6단위 관세품목별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수입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추정한 후, 이를 가격효과로의 전환을 통해 관세상당치(Ad-Valorem Equivalents: AVEs)를 추정함.
 - 인도네시아(철강)의 수량제한 및 기술규제조치는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2.2.3.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 박명현(2014)은 국제 무역시장은 이전에 비하여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각 국가, 지역별로 상이한 비관세장벽 현황을 공시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컨트롤 타워 메커니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음.
- 정환우(2013)는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이 향후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상호인정협정(MRA)을 FTA 협정에 포함시킬 것과 SPS 관련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함.¹

- FTA SPS 규정과 관련하여 리스크분석, 동등성, 기술원조, SPS 증서 제출, 실시 조치 등 포괄적인 규정을 상세하게 적시할 필요성도 높음.
- 이재윤(2010)은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보호무역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특히 국제기구와의 협조 체제 구축과 정보의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무역장벽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양평섭 외(2013)는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므로,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 제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 요구를 제시함.
- 김태윤 외(2010a)는 ASEAN 주요국에서 최근 도입된 비관세장벽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한국의 수출업체와 관련 협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또는 대응전략을 찾고자 하였음.
 - 비관세장벽 자료 구축 및 적극적 활용,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강화, 개별 국가 간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을 시사점으로 제시함.

¹ 상호인정협정이란 각국의 인정기관 간에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협정임.

2.3.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의 농식품 수출확대 연구는 주로 생산 및 유통 구조 개선, 마케팅 전략 수립 측면에서 수행되었으며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본 연구는 농식품의 수출의 장애요인을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 및 실태파악, 경제적효과 분석, 관련기관 역할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비관세장벽 실태 및 사례는 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분석함.

3.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 국가별 수출입 통계자료 분석
 - 농식품 수출 및 비관세장벽 선행연구 정리
- 농식품 신흥시장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 수출 비관세장벽 실태 및 현황, 통계자료 수집
 -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현황 자료 분석
- 농식품 수출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관련기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농식품 수출업체 전문가 회의 (FGI)

□ 전문가 공동 연구

- 농식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 아시아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조치 실태 분석

□ 통계 및 계량모형분석

- 중력모형을 활용한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수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농식품 수출 증대 시 국내 산업 및 농업분야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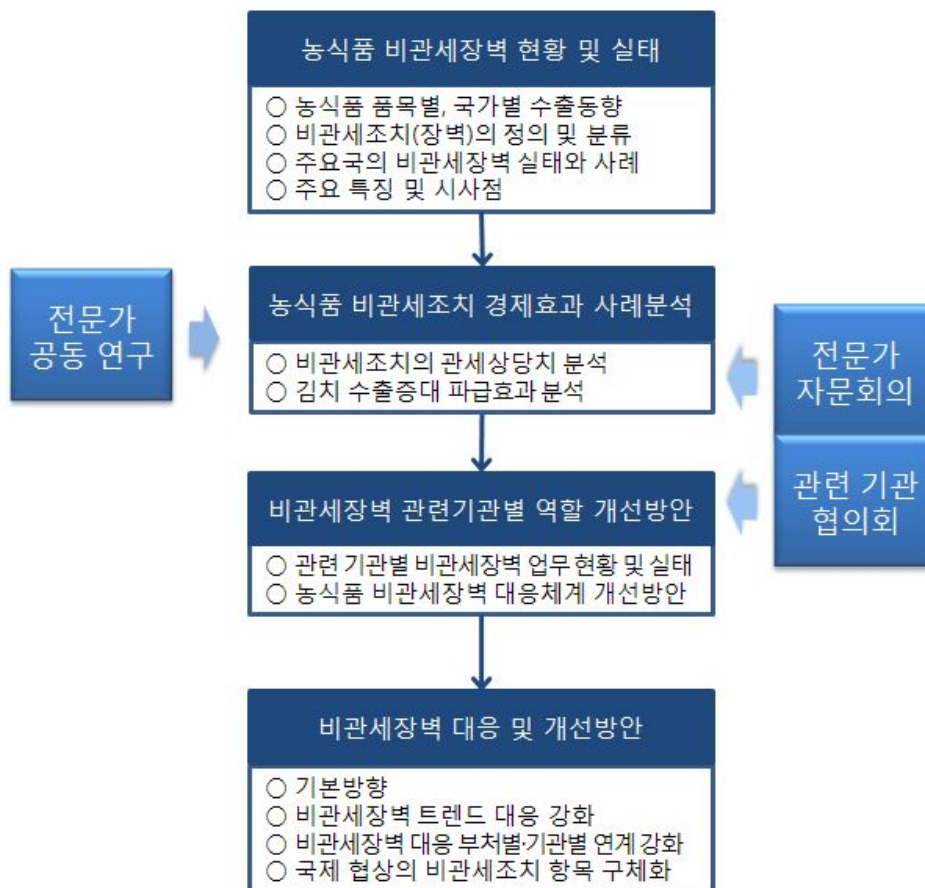
표 1-1. 연구 부문별 분석자료 및 분석

| 연구 내용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분석결과 활용 |
|---------------|--|---|--|
|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 |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 건수와 사례를 장벽 및 품목 유형별 내용 및 특징 파악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비관세장벽 사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 KATI, 농정원 maps, aT 및 김역본부 자료 - 외국의 통상 환경 보고서 등 | 비관세장벽 유형별 발생건수와 특징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 관련기관별 역할 정리 등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 비관세장벽 영향 분석 | 비관세장벽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력모형을 응용한 관세상당치 추정 2. 중력모형 응용한 수출방정식 추정 3.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중국시장 김치 수출증대 파급효과 분석 | 비관세장벽의 효과를 상대국에 설명·완화 요청 및 통상전략 수립에 활용 |
| 관계기관별 역할 | 비관세장벽 유형별·사례별 효과적인 대응 위한 관계기관 업무 파악 및 역할 정립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처 업무분장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 김역본부, 농진청, kotra 등 ○ 관련부처 전문가회의(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식약처 등 | 비관세장벽 대응 관련 기관별 정보 공유와 효율적 대응방안 제시에 활용 |

4.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는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농식품 비관세조치 경제효과를 사례별로 분석한 뒤, 관련 기관별 역할 개선방안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도



제 2 장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

1. 농식품 수출동향

- 우리나라의 농식품 부류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가공식품 50.6억 달러, 신선농식품 11.2억 달러로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최근 7년 간 연평균 성장률도 신선농식품(9.4%)에 비해 가공식품이 14.7%로 높음<표 2-1>.
- 우리나라는 신선농식품에 비해 가공식품 수출액이 더 많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신선농식품은 인삼, 김치, 파프리카 등이며, 가공식품으로는 켈런, 커피조제품, 음료, 라면, 자당 등임<표 2-2>.
 - 2014년 기준으로 인삼은 1.8억 달러, 김치와 파프리카는 0.8억 달러 수출함.
 - 2014년 기준으로 켈런은 6.7억 달러, 커피조제품은 3.0억 달러, 음료와 라면, 자당은 각각 2~3억 달러 수준임.

- 주요 품목별 수출 국가를 살펴보면 인삼은 홍콩, 중국, 일본으로, 김치는 일본, 미국, 홍콩으로,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켈런은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베트남으로, 커피조제품은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로, 음료는 미국, 중국, 캄보디아로, 라면은 중국, 미국,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음<표 2-3>.

표 2-1. 우리나라의 부류별 농식품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 품목 | 연도 | 2000 | 2001 | 2004 | 2007 | 2010 | 2013 | 2014 | 연평균 성장률 | |
|---------|----|-------|-------|-------|-------|-------|-------|-------|---------------|---------------|
| | | | | | | | | | 2007 ~2014 | 2000 ~2014 |
| □ 농식품 | | 1,509 | 1,580 | 2,085 | 2,532 | 4,082 | 5,725 | 6,185 | 13.6 | 10.6 |
| ○ 신선농식품 | | 529 | 522 | 551 | 597 | 874 | 1,181 | 1,123 | 9.4 | 5.5 |
| 채소 | | 107 | 121 | 127 | 121 | 178 | 220 | 230 | 9.6 | 5.6 |
| 김치 | | 79 | 69 | 103 | 75 | 98 | 89 | 84 | 1.6 | 0.4 |
| 인삼 | | 79 | 75 | 89 | 92 | 124 | 175 | 184 | 10.4 | 6.2 |
| 화훼 | | 29 | 32 | 49 | 58 | 103 | 61 | 41 | -4.8 | 2.5 |
| 과실 | | 45 | 56 | 86 | 145 | 195 | 233 | 260 | 8.7 | 13.3 |
| 버섯 | | (6) | (7) | (3) | (9) | 39 | 38 | 37 | 22.4 | 13.9 |
| 돼지고기 | | 52 | 46 | 27 | 26 | 1 | 5 | 8 | -15.5 | -12.5 |
| 가금육 | | 5 | 5 | 4 | 9 | 32 | 42 | 35 | 21.4 | 14.9 |
| 산림부산물 | | 133 | 119 | 67 | 71 | 103 | 316 | 245 | 19.4 | 4.5 |
| ○ 가공식품 | | 981 | 1,057 | 1,534 | 1,935 | 3,208 | 4,544 | 5,063 | 14.7 | 12.4 |
| 면 | | 118 | 141 | 214 | 179 | 240 | 321 | 302 | 7.8 | 6.9 |
| 소스 | | 38 | 39 | 67 | 107 | 130 | 181 | 188 | 8.4 | 12.1 |
| 주류 | | 146 | 148 | 204 | 192 | 313 | 386 | 404 | 11.2 | 7.5 |
| 과자 | | 153 | 153 | 183 | 226 | 291 | 434 | 490 | 11.7 | 8.7 |
| 연초류 | | 52 | 90 | 234 | 414 | 542 | 553 | 702 | 7.8 | 20.4 |
| 유제품 | | 11 | 15 | 27 | 34 | 58 | 123 | 157 | 24.4 | 20.9 |
| 목재류 | | 122 | 91 | 97 | 57 | 111 | 232 | 244 | 23.1 | 5.1 |
| 기타 | | 341 | 380 | 509 | 726 | 1,523 | 2,315 | 2,575 | 19.8 | 15.5 |

주: 버섯은 2008년부터 신선농식품에 포함

자료: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4. aT.

표 2-2.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상위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순위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 신선식품 | 1 | 인삼 | 124.2 | 인삼 | 189.3 | 인삼 | 150.8 | 인삼 | 174.9 | 인삼 | 183.9 |
| | 2 | 김치 | 98.4 | 김치 | 104.6 | 김치 | 106.6 | 김치 | 89.3 | 김치 | 84.0 |
| | 3 | 파프리카 | 58.3 | 파프리카 | 65.9 | 파프리카 | 88.8 | 파프리카 | 87.0 | 파프리카 | 80.1 |
| | 4 | 배 | 54.1 | 배 | 47.3 | 단일과실조제품 | 69.0 | 단일과실조제품 | 72.4 | 단일과실조제품 | 75.6 |
| | 5 | 유자차 | 32.6 | 유자차 | 40.4 | 배 | 49.9 | 배 | 55.0 | 배 | 62.3 |
| 가공식품 | 1 | 퀵런 | 536.5 | 퀵런 | 549.8 | 퀵런 | 606.4 | 퀵런 | 524.9 | 퀵런 | 669.1 |
| | 2 | 자당 | 242.1 | 커피조제품 | 302.2 | 커피조제품 | 297.2 | 커피조제품 | 306.1 | 커피조제품 | 303.7 |
| | 3 | 커피조제품 | 205.9 | 자당 | 291.2 | 자당 | 262.9 | 음료 | 243.5 | 음료 | 281.8 |
| | 4 | 라면 | 157.2 | 라면 | 186.7 | 음료 | 225.9 | 라면 | 212.5 | 라면 | 208.5 |
| | 5 | 소주 | 123.1 | 음료 | 184.1 | 라면 | 206.2 | 자당 | 203.1 | 자당 | 173.0 |

자료: 농림수산물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4. aT.

표 2-3.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 국가 | 2005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인삼 | 홍콩 | 21.8 | 27.8 | 38.9 | 26.6 | 43.8 | 46.3 |
| | 중국 | 4.8 | 16.1 | 45.6 | 32.2 | 39.1 | 36.9 |
| | 일본 | 29.3 | 29.8 | 33.1 | 36.6 | 32.3 | 36.4 |
| 김치 | 일본 | 86.4 | 82.8 | 86.8 | 84.6 | 65.9 | 56.6 |
| | 미국 | 1.2 | 2.7 | 2.8 | 3.9 | 4.9 | 4.9 |
| | 홍콩 | 0.8 | 1.8 | 2.4 | 3.3 | 3.6 | 4.7 |
| 파프리카 | 일본 | 53.1 | 58.3 | 65.7 | 88.8 | 86.8 | 79.5 |
| 퀵런 | 아랍에미레이트 | 108.6 | 201.9 | 158.8 | 199.4 | 165.5 | 274.4 |
| | 일본 | 4.2 | 4.4 | 8.2 | 20.8 | 38.5 | 78.2 |
| | 베트남 | 0.2 | 9.1 | 43.8 | 72.3 | 56.4 | 66.7 |
| 커피조제품 | 중국 | 13.4 | 43.2 | 50.7 | 54.2 | 52.1 | 53.8 |
| | 러시아 | 40.5 | 48.5 | 49.2 | 53.3 | 49.1 | 41.5 |
| | 인도네시아 | 14.5 | 20.7 | 34.7 | 34.6 | 42.4 | 37.8 |
| 음료 | 미국 | 8.6 | 25.1 | 33.8 | 50.3 | 48.2 | 59.8 |
| | 중국 | 2.7 | 20.6 | 21.6 | 31.4 | 37.9 | 38.3 |
| | 캄보디아 | 0.0 | 0.9 | 5.3 | 16.0 | 26.1 | 34.9 |
| 라면 | 중국 | 12.6 | 28.3 | 26.5 | 28.6 | 37.8 | 34.6 |
| | 미국 | 37.8 | 19.8 | 20.5 | 22.1 | 26.2 | 26.1 |
| | 일본 | 14.5 | 39.1 | 52.8 | 42.9 | 32.0 | 24.5 |

자료: 농림수산물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4. aT.

2. 비관세조치 정의 및 분류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NTM)는 국제 상품무역에서 거래 물량이나 가격 또는 이 둘을 모두 변경시키는 경제효과를 잠재적으로 가지는 관세 이외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의미함(UNCTAD, 2013).² NTM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 수단을 일컫는 용어이므로 그 범주가 크고 종류가 다양함.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비관세조치 가운데 무역 감소 영향을 주는 의도적인 조치를 비관세장벽으로 이해할 수 있음(전형진 외, 2010).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 개념으로부터 유래된 개념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이 특징임.
 - 공인된 유형이나 개념이 없으며 국가별, 연구기관별로 분류체계가 상이함.
- 국제기구인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와 무역규범을 다루는 WTO는 그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일관되게 NTM을 코드로 분류하고 있음.

² 원문은 “government measures other than ordinary tariffs that can potentially have an economic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changing quantities traded, or prices or both”임.

표 2-4. 비관세조치의 분류 방법

| 분류 기관 | 내용 | | |
|--------------------------------|--|---|---|
| 외교통상부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규제(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표준 및 인증) 지적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 | |
| MAST (OECD, 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상 기술장벽 기타 기술적 조치 가격통제조치 수량통제조치 준관세조치 재정조치 반경쟁조치 수출관련조치 유통제한 | | |
| UNCTAD (Kuwahara, 2009) | 수입 조치 | 기술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 검역, 무역상 기술장벽 |
| | | 비기술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적 전 검사와 기타 조치들 가격제한조치 수입허가·쿼터·수입금지 및 기타 수량제한 조치 요금·세금 및 기타 유사관세조치 금융조치 불공정조치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수출보조제외) 정부조달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
| | 수출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관련 조치(수출제한 등) | |
| Deardoff and Stern(19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량제한과 이와 유사한 제한(수입쿼터, 수출제한, 허가증제도, 환율 및 재정통제 등)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 및 이와 유사한 정책(가변부과금, 사전거치금, 반덤핑부과금 등) 무역에 관한 정부관여 및 무역규제조치(보조금, 정부조달, 국영무역 등) 통관절차 및 행정적 절차(수입금액평가, 통관상품분류 등) 무역상 기술장벽(건강 및 위생규정과 품질 기준, 안전 및 산업표준, 포장 및 라벨링 규정 등) | | |

자료: 이상훈 외(2012), 송주호 외(2010) 재인용.

표 2-5. UNCTAD의 NTM 분류

| 분류 코드 | 조치 유형 | 세부 분류 코드 | 세부 조치 |
|-------|------------|----------|--------------|
| 1000 | 관세 | (생략) | (생략) |
| 2000 | 준관세 | 2100 | 관세부과금 |
| | | 2200 | 추가 세금과 부과금 |
| | | 2300 | 내국세 및 부과금 |
| | | 2400 | 관세평가 |
| | | 2900 | 기타 준관세 조치 |
| 3000 | 가격통제 | 3100 | 행정가격 적용 |
| | | 3200 | 자발적 수출가격제한 |
| | | 3300 | 변동 부과금 |
| | | 3400 | 반덤핑 조치 |
| | | 3500 | 상계조치 |
| 3900 | 기타 가격통제 조치 | 3900 | 기타 가격통제 조치 |
| | | 4100 | 사전 지급요건 |
| | | 4200 | 복수 환율 |
| | | 4300 | 제한적 외국환 배정 |
| | | 4500 | 수입대금 지급요건 규정 |
| 4000 | 금융 | 4600 | 이체 지연 |
| | | 4900 | 기타 금융조치 |
| | | 5100 | 자동 허가 |
| | | 5200 | 수입 모니터링 |
| 5000 | 자동 허가 | 5700 | 인도 요건 |
| | | 5900 | 기타 자동 허가조치 |
| | | 6100 | 비자동 허가제 |
| 6000 | 물량 제한 | 6200 | 쿼터 |
| | | 6300 | 금지 |
| | | 6600 | 수출제한 |
| | | 6700 | 기업 특정 제한 |
| | | 6900 | 기타 물량 제한 |
| 7000 | 독점 | 7100 | 단일 창구에 의한 수입 |
| | | 7200 | 강제 국가 서비스 사용 |
| | | 7900 | 기타 독점조치 |
| 8000 | 기술 | 8100 | 기술 규정 |
| | | 8200 | 선적 전 검사 |
| | | 8300 | 특별 통관 요건 |
| | | 8400 | 복귀 요건 |
| | | 8900 | 기타 기술 조치 |

주: 숫자 4단위 중 첫 2단위로 세분된 분류만 표기함.

자료: UNCTAD(2005).

- UNCTAD에 의한 NTM 분류활동은 2006년부터 여러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MAST 작업반(Multi-Agency Support Team)의 도움으로 표준화되면서 발전해 왔음.³ MAST에 동참한 국제기구는 FAO, IMF,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http://www.intracen.org/>), OECD, UNCTAD, UNIDO(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http://www.unido.org/>), 세계은행(World Bank), WTO 등임.
- 2007~12년에 걸쳐 이뤄진 작업반의 NTM 분류는, ① 위생이나 환경보호 수단과 같은 기술 조치, ② 쿼터, 가격통제, 수출제한, 조건부 무역보호 조치와 같은 전통적 통상정책, ③ 국경 안(behind-the-border) 장벽으로서 경쟁,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정부조달, 분배제한 등으로 구성됨<표 2-5>.
- NTM 분류는 분류 체계에 따라 16개 절(chapter, A부터 P까지)이 있고, 각 절은 HS 코드 체제와 비슷하게 1~3단위로 세분됨. 수출국이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조치(chapter P)를 제외하고는 A~O절은 모두 수입조치임<표 2-6>.
 - 예를 들면, “A”는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이고, “A1”은 SPS에 근거한 최종 제품의 수입제한에 해당함. 이를 더 세분하면, “A11”은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고, “A12”는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함.
 - 아라비아 숫자 2단위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나, 3단위도 존재함. 예를 들면, “E12”는 경제 이외의 목적아래 수입을 허가하는 조치인데, “E121”은 종교, 도덕, 문화의 목적(예: 알코올음료 수입을 호텔과 식당에만 허용)이고, “E122”는 정치적 목적(예: 특정 국가로부터 모든 상품의 수입에 적용)을 말함.

³ UNCTAD(2005)와 MAST 작업반에 의한 분류를 모두 소개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NTM은 전자 기준, 중국의 NTM은 후자 기준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임.

표 2-6. MAST의 비관세장벽(NTM) 분류

| | | | |
|----|----------|----------|---|
| 수입 | 기술 조치 | A | SPS 조치 |
| | | B |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TBT) |
| | | C | 선적하기 전의 검사와 기타 요건 |
| | 기술 이외 조치 | D | 조건부 무역제한 조치(반덤핑, 상계조치 등) |
| | | E | SPS나 TBT 이외의 비자동(non-automatic) 허가, 쿼터, 금지 및 물량 통제 조치 |
| | | F | 추가 세금과 부과금과 같은 가격 통제 조치 |
| | | G | 금융 조치(사전지급 요건 등) |
| | | H |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국영무역 등) |
| | | I | 무역 관련 투자 조치(일정비율의 국내산 원료의 사용 의무 부과 등) |
| | | J | 배분에 관한 제한(판매할 수 있는 지역 규정 등) |
| | | K | 판매 후 서비스에 관한 제한 |
| | | L | 보조 |
| | | M | 정부조달 제한 |
| | | N | 지적 재산권 |
| | | O | 원산지 규정 |
| 수출 | P | 수출 관련 조치 | |

자료: UNCTAD(2013).

-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조치는 대부분 WTO 협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관세 장벽의 주요 수단이 과거 수량제한 등의 조치에서 최근 기술장벽, 위생검역 조치, 통관절차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전형진 외, 2010).
 - WTO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으로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GATT20조(일반적 예외: 공중도덕 보호조치,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조치, 유한천연자원 보존조치, 공급부족산품의 획득 등)’ 등임.

- 농식품 관련 주요 비관세장벽으로는 기술조치 중 검사·검역, 비기술조치 중 원산지, 통관 및 수입허가 및 식품 표시 인증 및 수입허가 등록제도 등이 있음(송주호 외, 2012).
 - (검사·검역) 식품 검역 및 대상국 식품 관련 법규 문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함.
 - (원산지)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 체결을 통해 수출 확대를 모색해왔으나 실제로 FTA 체결 상대국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협정당사자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고, 동일 품목(고추장, 김치, 버터밀크 제외 한 낙농제품)이라도 FTA 체결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어 어려움이 많음.
 - (통관 및 수입허가) 통관이 지연되어 상품가치가 하락되고(예: 버섯) 실질적으로 유통 가능한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예: 조제분유), 국가나 항구별로 표기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상이한 문제들이 있음.
 - 할랄마크 등 식품 관련 인증,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번호등록(ML)제도 문제, 육가공품의 정부간 위생협정 체결 확대 문제 등이 있음.
 - 중국의 수입 관세 이외의 증치세 추가 부과, 브라질의 공업세·유통세·사회기여세 등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가공식품 표절품 판매, 남미에서의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유사품 생산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3.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 실태와 사례

- 주요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수행했으며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미국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음.⁴
 - 국내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조치 현황은 aT KATI 등의 자료를 분석함.

3.1. 중국

3.1.1. 중국의 비관세조치 분석

가. 비관세조치 개관

- 중국은 다양한 NTM을 적용하고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의 WITS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총 28,097개 농산물(HS 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다양한 NTM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 NTM 중 SPS 조치가 가장 큰 비중(67.0%)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약 수입조치(P 제외)만 감안하면 전체의 88.1%가 SPS에 근거한 수입제한 조치임. 그 세부항목 중 가장 빈도가 많은 조치는 “A110”으로 전염병에 관한 우려 아래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임. 그 다음으로 많은 “A140”은 SPS와 관련하여 수입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조치이며, “A210”은 농약이나 중금속 물질과 같은 잔류량의 수준에 따른 규제임.

⁴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에게 위탁한 결과를 재정리함.

표 2-7. 중국의 NTM 현황

| 분류 | 빈도 | 분류 | 빈도 | 분류 | 빈도 | 분류 | 빈도 | 분류 | 빈도 | 분류 | 빈도 |
|------|--------|------|-------|------|----|------|-----|------|----|------|-------|
| A110 | 3,328 | B110 | 9 | D120 | 6 | E100 | 25 | H100 | 57 | P600 | 9 |
| A120 | 635 | B140 | 4 | D220 | 13 | E120 | 10 | H110 | 6 | P620 | 6,639 |
| A140 | 2,921 | B150 | 20 | D321 | 9 | E129 | 6 | | | | |
| A150 | 499 | B310 | 683 | | | E211 | 86 | | | | |
| A190 | 597 | B330 | 2 | | | E300 | 20 | | | | |
| A210 | 2,218 | B420 | 11 | | | E320 | 11 | | | | |
| A220 | 382 | B810 | 761 | | | | | | | | |
| A310 | 775 | B820 | 777 | | | | | | | | |
| A330 | 529 | B830 | 2 | | | | | | | | |
| A410 | 549 | B840 | 4 | | | | | | | | |
| A420 | 51 | B851 | 24 | | | | | | | | |
| A500 | 14 | | | | | | | | | | |
| A510 | 56 | | | | | | | | | | |
| A530 | 3 | | | | | | | | | | |
| A590 | 1 | | | | | | | | | | |
| A640 | 72 | | | | | | | | | | |
| A820 | 1,827 | | | | | | | | | | |
| A830 | 1,215 | | | | | | | | | | |
| A840 | 869 | | | | | | | | | | |
| A850 | 858 | | | | | | | | | | |
| A851 | 316 | | | | | | | | | | |
| A852 | 224 | | | | | | | | | | |
| A853 | 302 | | | | | | | | | | |
| A860 | 661 | | | | | | | | | | |
| 합계 | 18,902 | 합계 | 2,297 | 합계 | 28 | 합계 | 158 | 합계 | 63 | 합계 | 6,648 |

- 주 1) “빈도”는 각 조치에 해당하는 HS 8단위 기준의 품목 수를 말하며, 조치 간 품목 수(빈도)는 중복해서 계산될 수 있음.
- 2) 분류체계에서 A는 수입 관련 SPS 조치, B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TBT), D는 조건부 무역제한조치(반덤핑 상계조치 등), E는 SPS나 TBT 이외의 비자동(non-automatic) 허가, 쿼터, 금지 및 물량 통제 조치, H는 국영무역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P는 수출 관련 조치임<표 2-6 참조>.

자료: WITS(<http://wits.worldbank.org>).

- NTM 중 SPS 조치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TBT 조치로 2,297개(8.2%) 품목에 적용되고 있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에 적용되는 조치인 “B820”은 샘플링(sampling)을 통한 검사 요건이며, 그 다음은 “B810”은 상품 등록 요건으로 예를 들면, 등록된 GMO만 수입되도록 하는 것임. 이 밖에도 중국은 D(조건부 무역제한 조치), E(수입물량 제한 조치), H(국영무역) 등의 NTM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의 NTM이 어떤 농산물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HS 4단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2-8>과 같음. NTM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품목은 HS 0207(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로 총 “품목 수”가 3,165개에 달함. 여기에는 신선, 냉장, 냉동한 가금육이 포함되며 이 품목에 적용되는 NTM의 종류도 19개로 가장 많음.⁵ 각종 SPS에 기초한 조치(A11~A85), 품목 등록(B81)이나 검사 요건(B82), 상계관세(D22), 경제적인 이유로 요구하는 허가제(E10), SPS나 TBT 이외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입금지(E30), 수출하기 위한 SPS 또는 다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건(P62) 등이 있음.
- 그 다음으로 품목 수가 많은 것은 HS 0106(기타 산 동물)으로 총 1,262개임. 관련 NTM은 SPS를 근거로 특정지역에 부과한 임시 수입금지(A11), 안전정보 부재에서 비롯한 수입금지(A12), SPS에 관한 특별한 승인 요건(A14), 그 밖의 SPS에 의한 수입금지 또는 제한(A19), 잔류물질 제한(A21), 저장 및 운송 조건(A64), 검사요건(A82), 인증요건(A83), 검사요건(A84), 이력 추적요건(A85), 검역요건(A86), 추적정보 요건(B85), 수출국에 의한 인증(P62) 등이 있음.⁶

⁵ 식용 설육은 머리, 발, 장기 등 몸체 부속물을 의미함(관세청, <http://goo.gl/miFvtL>).

⁶ A82와 A84는 비슷한 개념이나 후자는 실험실 검사가 포함되지 않음.

표 2-8. 중국의 품목별 NTM 적용 현황

| HS코드 | 품목 수 | HS코드 | 품목 수 | HS코드 | 품목 수 | HS코드 | 품목 수 | HS코드 | 품목 수 |
|------|-------|------|------|------|------|------|------|-----------|---------------|
| 0101 | 172 | 0603 | 140 | 0908 | 54 | 1404 | 40 | 2001 | 54 |
| 0102 | 121 | 0604 | 60 | 0909 | 108 | 1501 | 43 | 2002 | 90 |
| 0103 | 262 | 0701 | 36 | 0910 | 90 | 1502 | 84 | 2003 | 108 |
| 0104 | 308 | 0702 | 25 | 1001 | 72 | 1503 | 41 | 2004 | 36 |
| 0105 | 559 | 0703 | 174 | 1002 | 30 | 1504 | 123 | 2005 | 396 |
| 0106 | 1,262 | 0704 | 105 | 1003 | 30 | 1505 | 21 | 2006 | 54 |
| 0201 | 183 | 0705 | 76 | 1004 | 28 | 1506 | 38 | 2007 | 72 |
| 0202 | 171 | 0706 | 42 | 1005 | 43 | 1507 | 32 | 2008 | 540 |
| 0203 | 452 | 0707 | 23 | 1006 | 254 | 1508 | 26 | 2009 | 416 |
| 0204 | 684 | 0708 | 64 | 1007 | 30 | 1509 | 24 | 2102 | 36 |
| 0205 | 52 | 0709 | 293 | 1008 | 75 | 1510 | 12 | 2102 | 52 |
| 0206 | 506 | 0710 | 236 | 1101 | 20 | 1511 | 64 | 2103 | 91 |
| 0207 | 3,165 | 0711 | 161 | 1102 | 93 | 1512 | 51 | 2104 | 26 |
| 0208 | 410 | 0712 | 354 | 1103 | 147 | 1513 | 48 | 2105 | 13 |
| 0209 | 56 | 0713 | 356 | 1104 | 146 | 1514 | 80 | 2106 | 83 |
| 0210 | 475 | 0714 | 240 | 1105 | 34 | 1515 | 122 | 2201 | 54 |
| 0401 | 156 | 0801 | 163 | 1106 | 48 | 1516 | 30 | 2202 | 26 |
| 0402 | 254 | 0802 | 345 | 1107 | 33 | 1517 | 39 | 2203 | 17 |
| 0403 | 100 | 0803 | 26 | 1108 | 103 | 1518 | 10 | 2204 | 70 |
| 0404 | 100 | 0804 | 163 | 1109 | 16 | 1520 | 2 | 2205 | 34 |
| 0405 | 152 | 0805 | 176 | 1201 | 125 | 1521 | 6 | 2206 | 34 |
| 0406 | 253 | 0806 | 52 | 1202 | 72 | 1522 | 4 | 2207 | 36 |
| 0407 | 373 | 0807 | 125 | 1203 | 12 | 1601 | 114 | 2208 | 156 |
| 0408 | 180 | 0808 | 139 | 1204 | 15 | 1602 | 731 | 2209 | 15 |
| 0409 | 46 | 0809 | 96 | 1205 | 60 | 1603 | 36 | 2301 | 182 |
| 0410 | 259 | 0810 | 360 | 1206 | 44 | 1604 | 629 | 2302 | 24 |
| 0501 | 39 | 0811 | 92 | 1207 | 294 | 1605 | 324 | 2303 | 8 |
| 0502 | 305 | 0812 | 32 | 1208 | 42 | 1701 | 41 | 2304 | 4 |
| 0504 | 362 | 0813 | 208 | 1209 | 197 | 1702 | 33 | 2305 | 2 |
| 0505 | 110 | 0814 | 23 | 1210 | 24 | 1703 | 32 | 2306 | 17 |
| 0506 | 165 | 0901 | 96 | 1211 | 655 | 1704 | 14 | 2307 | 4 |
| 0507 | 149 | 0902 | 200 | 1212 | 456 | 1806 | 30 | 2308 | 6 |
| 0508 | 74 | 0903 | 16 | 1213 | 24 | 1901 | 34 | 2309 | 128 |
| 0510 | 180 | 0904 | 72 | 1214 | 24 | 1902 | 120 | 2401 | 285 |
| 0511 | 366 | 0905 | 18 | 1301 | 59 | 1903 | 14 | 2402 | 2 |
| 0601 | 120 | 0906 | 54 | 1302 | 266 | 1904 | 60 | 2403 | 3 |
| 0602 | 308 | 0907 | 18 | 1401 | 70 | 1905 | 94 | 합계 | 12,889 |

주 1) “품목 수”는 명시된 HS 4단위 안에 포함된 품목이며, HS 8단위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 것임
 중국이 다수의 국가로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품목 수”는 중복 계산됨.

2) HS 8단위로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일부 자료는 위의 표에 포함시키지 않아 품목 수의 합계
 (28,061개)가 원본(28,097개)보다 작음.

3) 적용 NTM 형태는 부록 3 참고.

자료: WITS(<http://wits.worldbank.org>).

표 2-9. 중국의 NTM 조치가 적용되는 한국산 농산물 품목(HS 8단위)

| 구분 | 분류 | HS 8단위 |
|----|-------------------------|--|
| 1 | 살아있는 돼지 | 01031000, 01039110, 01039120 |
| 2 | 육과 식용 설육 | 02011000, 02012000, 02013000, 02021000, 02022000, 02023000, 02031110, 02031190, 02031200, 02031900, 02032110, 02032190, 02032200, 02032900, 02041000, 02042100, 02042200, 02042300, 02043000, 02044100, 02044200, 02044300, 02045000, 02050000, 02061000, 02062100, 02062200, 02062900, 02063000, 02064100, 02064900, 02068000, 02069000, 02071100, 02071200, 02071311, 02071319, 02071321, 02071329, 02071411, 02071419, 02071421, 02071422, 02071429, 02072400, 02072500, 02072600, 02072700, 02073210, 02073220, 02073230, 02073310, 02073320, 02073330, 02073400, 02073510, 02073520, 02073530, 02073610, 02073620, 02073630, 02081010, 02081020, 02081090, 02083000, 02084000, 02085000, 02089010, 02089090, 02090000, 02101110, 02101190, 02101200, 02101900, 02102000, 02109100, 02109200, 02109300, 02109900 |
| 3 | 돼지털과 웨이스트 | 05021010, 05021020, 05021030, 05029011, 05029012, 05029019, 05029020 |
| 4 | 돼지와 가금의 지방 | 15010000 |
| 5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과 식육 또는 피 | 16021000, 16022000, 16023100, 16023210, 16023291, 16023292, 16023299, 16023910, 16023991, 16023999, 16024100, 16024200, 16024910, 16024990, 16025010, 16025090, 16029010, 16029090, |

주: HS 8단위의 농산물은 예를 들어 분류상 살아있는 돼지의 0131000번은 번식용, 01039110번은 기타 50kg 미만인 것, 01039120번은 기타 50kg 이상인 것임.

자료: WITS(<http://wits.worldbank.org>).

- 이밖에도 HS 1602(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류, 설육 또는 피), 0204(면양과 산양의 고기), 1211(향료, 살충, 살균용 등에 적합한 식물), 1604(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0105(가금류), 2008(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및 식용 식물), 0206(식용 설육) 등이 500개 이상의 품목 수를 기록하고 있음.

- WITS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하는 NTM은 모두 “A11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 품목은 총 108개임<표 2-9>. 이 가운데 79개 품목은 HS 02류에 속하는 육류와 식용 설육으로 육류 제품에 대한 SPS 조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음.
- 중국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직면한 NTM은 대부분 SPS로 분류할 수 있음.⁷
 - 과도한 위생증명서 발급 및 검역 기준을 요구하거나, 열처리된 축산가공식품 수입을 규제함. 지역별로 통관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거나 담당자의 재량이 남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나. 비관세조치 사례⁸

- 중국의 NTM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USITC, 2011),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 지적되는 NTM 사례들을 정리하면 <표 2-10>과 같음.
- 1994년 GATT를 포함한 WTO 협정은 동식물과 인간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유지하려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였으나 WTO/SPS 협정은 이러한 조치들이 순전히 수입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틀을 설정하였음.
- WTO/SPS 협정 제 3조는 국제기구의 기준(standard), 지침(guideline) 또는 권고(recommendation)(이하 SGR)와 다른 기준을 회원국이 설정하려면 과학적 정당성이 있을 때, 또는 국제기구의 기준과 지침 및 권고의 과학적 평가가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안전수준을 주지 못한다고 나타났을 때

⁷ 부록 1 참고.

⁸ USITC(2011)의 SPS 문제 중심으로 작성함.

가능함. SPS 협정이 허용된 SGR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적절한 국제기구로서 인정하는 유관 기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OIE), 코덱스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국제식물보호협회(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임.

- WTO/SPS 협정 제 5조는 국제기준이나 지침보다 더욱 제한적인 SPS 조치는 관련 개체군에 미치는 위험 평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함. 위험 평가에서 회원국은 “적절한 과정과 생산방식, 적절한 검사와 표본 및 검증방식, 특정 질병이나 해충의 유병률, 무해충 또는 무명지역의 존재, 적절한 생태와 환경 조건, 검역 또는 기타 처리 등을 감안해야 함.
- 중국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SPS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WTO 가입 당시(2001.12) 중국은 SPS 협정 조건에 맞게 SPS 조치를 운용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중국의 SPS 조치들은 기준 발급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 자원 부족, 내국민 대우 부족 등 규제체제의 구조 측면에서 미흡함을 나타냄. SPS 우려로 수입되지 않았을 상황에도 시장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규제가 훨씬 완화됨.⁹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중국의 SPS 조치는 위험을 증대시키는 불확실성과 이러한 불확실성이 수출국에 전가되는 비용을 동반함.

⁹ 예를 들면, 미국산 딸기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수요 증대로 중국으로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올림픽 종료 후 수출은 금지되었음(USTR, 2010).

표 2-10. 미국 농식품에 관한 중국의 NTM 제한 조치 사례 및 내용

| 구분 | NTM | 설명 |
|----|------------------------|---|
| 1 | H1N1 인플루엔자 제한 | 돼지 플루와 관련된 미국 돼지고기의 수입 불가. OIE에 따르면 돼지고기 소비에 의한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은 없음. |
| 2 | 락토파민(Ractopamine) 금지 | 락토파민(돼지고기에서 사료 첨가물로 사용) 무용인(zero tolerance) |
| 3 | 병원균 무용인 | 무용인은 과학적 위험평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음. 육류와 가금육의 수입 제한 정책 |
| 4 | 광우병(BSE) 제한 | OIE 지침을 위반하면서 2003년 12월에 미국 소의 BSE 발견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함 |
| 5 |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LPAI) 제한 | LPAI가 발견된 일부 미국 주의 가금육 제품 수입을 금지함. OIE 지침에 어긋남. |
| 6 | 화상병(fire blight) 제한 | 미국 3개주로부터만 2종류 사과와 수박의 수입을 허용하고 배는 수입금지임. 증상이 없는 사과나 배의 상업용 품종에서 화상병의 위험이 증명된 연구가 없음. |
| 7 | 감자 해충 위해성 평가 | 미국 감자의 해충 위해성 평가가 10년 동안 지연됨.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SPS 문제와 연동시킴. |
| 8 | 딸기 수입 금지 | 베이징 올림픽 때 일시 제한을 풀었으나, 신선 딸기의 수입을 금지함. |
| 9 | 생명공학 규정 | GMO가 포함된 모든 품목은 표기를 해야 함. 수출국에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중국에서 등록과정을 시작할 수 없음.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함. |
| 10 | 증치세(VAT) 정책 | 증치세(VAT) 정책은 중국 국내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비용 우위를 허용하여 수입산보다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함. |
| 11 | 표시제 요건 | 일부 품목은 모두 중국어로 표기해야 하거나 한자 이외의 단어는 스티커로 가려야 함. |
| 12 | 통관 조치 | 일부 품목은 기준 가격(reference pricing) 대상이며, 분류가 일관되지 않고 통관이 지연됨. |
| 13 | 다수 및 중복 | 다수의 부처와 청이 허가, 증명, 검사에 관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
| 14 | 성과 지역의 차이 | 규정, 기준, 시행이 지역에 따라 변함. |
| 15 | TRQ 관리 | 쿼터 상당부분이 국영무역에 배정됨. 작은 물량이 민간 무역업자에게 배분되고 재배분은 거의 없음. |
| 16 | 투명성 부족 | 많은 부처와 규제 기관은 합의한 말과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음. TRQ 배분과 수입허가권 소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음. |

자료: USITC(2011).

(1)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 GMO와 관련된 WTO 무역규범은 SPS 협정,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 GATT 협정 등이 있음.
 - 이 밖에도 환경협약 중에서는 UN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아래 2003년에 발효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G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자세한 절차를 다루고 있음(장호민 외, 2008).
- SPS 협정에 속하는 GMO 관련 사항은 ① 식품에 포함된 첨가물, 오염물질, 독성물질 또는 질병유발 생물체에서 비롯한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삶을 보호, ② 병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확산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 등임. GMO의 잠재 위험이 위 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만약 ①에 해당된다면 GMO에 관한 규율은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와 최소한의 무역제한 조치여야 한다고 명시한 SPS 규정들을 따라야 함. SPS 협정 제 5.7조에 근거하여 수입국은 그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수입국은 추가 정보를 구해야 하고 일정 기간 안에 해당 무역조치를 검토해야 함.
- 외국에서 개발된 농생명공학 제품은 중국 당국이 중국내 사용에 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개발된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규정임. 이에 따라 2013년 말에 미국의 옥수수 수출이 상당히 지연되었음. 적용 이후(post-application) 포장시험과 최종 단계의 승인 과정에서 지연도 늘고 있음.

(2) 식품안전

(가) 락토파민

- 중국은 돼지의 사료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하는 락토파민을 일종의 동물약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잔류량을 지닌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함. 락토파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과학적 기준, 미국 정부의 승인 및 CODEX 기준에도 중국의 금수조치는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7월에 CODEX는 돼지와 소에 사용하는 락토파민의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채택하였음. 2013년에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검사요건은 돼지고기에 락토파민 잔류가 없다는 검사인증서를 동봉하도록 하는 것임. 현재 중국은 항구에서 돼지고기를 검사하고, 락토파민, 테트라시클린(tetracycline), 설파(sulfa) 약품 잔류가 검출된 화물은 막고 있음.

(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 2003년 12월에 중국은 미국에서 BSE 양성 동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산 생소,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금수조치를 단행했음. 2006년 5월까지 세 차례의 협상을 가진 후 중국은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시장을 개방하였음. 한 달 후에 중국은 스물 두 가지의 자세한 수입조건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BSE에 의한 위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다) 육류와 가금육

- 중국은 수입되는 원료 육류와 가금육에 살모넬라(salmonella), 리스테리아(listeria), 모노시토진(monocytogenes)에 대해 무용인(zero tolerance) 제약을 부과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은 공인된 기준이 아님. 식품안전 전문가와 과학자들은 원료 육류와 가금육은 살모넬라와 밀접하여 연동되어 있으나, 적절

한 보관, 취급 및 요리를 통해 이러한 미생물에 의해 초래되는 식품관련 질병의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함. 2009년에 중국 당국은 가공육에 있어 살모넬라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14년 현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임.

(라) 가공육 제품

- 2012년 중국의 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는 미국의 소시지와 닭고기 지방 등 가공육 업체들이 사전에 AQSIQ에 등록하지 않고 수출한 가공육을 압류하였음. 중국은 미국 생산업체의 AQSIQ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음.

(마) 포도주와 증류주

- 2013년 2월부터 AQSIQ는 실험실 검사를 통해 포도주와 증류주에 특정 프탈레이트(phthalate)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수입품이 시장에 출하되기 전에 의무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새로운 요건에 관한 수입항마다 다른 검사방법과 절차가 요구되고 있음. 중국은 종합적으로 국가 전체의 위해성평가를 완결할 때까지 새로운 검사요건을 유지할 것임을 표방하고 있음.

(3) 동물 건강

(가) 쇠고기

- 2003년에 중국은 BSE 관련 우려로 단백질이 없는 미국산 우지(tallow)의 수입을 금지하였음. OIE는 수출국의 BSE 상황에 관계없이 불용성 불순물의 중량기준 최대 0.15%까지 우지의 무역을 허용하고 있어 2012년에 양국 당국은 일부 이견을 해소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나) 가금육

- 중국은 2013년 중 두 달 간 알래스카주로부터 수입하는 가금육 금지를 해제 하였으나 LPAI가 발견된 후 다시 금지하였음. 중국은 LPAI가 검출된 알래스카주, 버지니아주, 뉴욕주, 위스콘신주로부터 가금육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조류 인플루엔제 관련 수입금지는 OIE 지침과 부합하지 않음.

(4) 식물위생

(가) 사과

- 1995년 이래 중국은 아디아호주, 오레곤주, 와싱턴주 등 세 개 주로부터 두 품종의 사과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다른 품종의 사과는 병해충 특히 화상충 박테리아에 대한 우려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음. 미국은 이들 세 개 주로부터 추가로 다른 품종 및 캘리포니아주 사과의 수입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은 잘 익고, 증상 없는 상업용 사과가 화상병을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중국은 계속 화상병과 곰팡이 병원균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2013년 8월에 중국의 AQSIQ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미국에 제출한 상태임. 2012년에도 중국은 곰팡이 병원균에 관한 우려로 와싱턴주 사과의 수입을 보류하기도 하는 등 양국은 현재 추가 사과 품종의 수입과 관련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병해충 목록을 논의하고 있음.

(나) 아보카도(avocados)

- 중국은 캘리포니아주 신선 아보카도의 수입을 금지하여 2005년에 미국은 AQSIQ에 병해충 위해성 평가(pest risk assessment: PRA)를 완료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음. 2013년 6월에 중국은 광둥(Guangdong)에 의해 PRA가 완료되었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하였으나 추가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다) 감자

- 다양한 식물 병해충과 병에 관한 우려로 중국은 미국산 식용 감자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2000년에 미국은 아이다호주, 오레곤주, 와싱턴주의 신선감자를 수입하도록 공식 요청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AQSIQ는 미국 정부에 PRA 결과를 제출했으나 시장개방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라) 딸기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딸기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08년에 AQSIQ는 베이징 올림픽과 장애인(paralympic) 올림픽 기간에 딸기 수입을 허용하였음. 당시 중국 당국은 캘리포니아산 딸기가 안전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미국이 영구적인 시장접근을 추구하자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학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마) 밀

- 1999년에 미국과 중국 간 TCK(*tilletia controversa* Kuhn)와 KB(Karnal bunt)에 관한 양자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국은 가을밀(winter wheat)에 제한적 검역요건을 유지하고 있음. 이 협정은 중국의 어느 항구에서든 화물선으로부터 추가 조치 없이 소비자와 가공업자에게 미국산 밀을 신속히 전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남부지방에 있는 항구의 경우 미국산 밀은 지정된 한 항구에서만 하선이 가능하고 통관비용이 징수됨. 시장가격 측면에서 미국산 가을밀은 중국산보다 경쟁력이 있으나, 하선 문제 및 통관시설로부터 다른 배에 옮겨 실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으로 수입업체가 꺼리는 상황임.

3.1.2. 중국 수출 애로 사례¹⁰

- 최근에 중국은 식품 안전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파는 식품을 그대로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 사례는 김치, 삼계탕, 생우유 등이 있음.
 - 중국의 세척상 김치 품목에 대한 단독 세 번이 없어 절임류 총칭인 파오차이에 포함되어 검역 규정상 미생물 기준치가 100g당 30마리로 제한되어 수입 통관 어려움.¹¹
 - 중국은 2003.12월 한국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가금육 및 관련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여 삼계탕의 경우에도 열처리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제한되어 수출이 어려움.
 - 최근 수출 신장세가 빠르던 우유의 경우 생우유 멸균제품 분류 움직임으로 검사 소요기간이 장기화(7일 이상)되면 사실상 한국 생우유 제품은 유통이 불가능해짐.¹²

¹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T에서 작성한 통관 애로사항과 비관세장벽 관련 문헌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서 공동 발간한 ‘2013 무역장벽 보고서’, aT KATI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관 보류 및 역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 농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정리하였음.

¹¹ 청와대에 따르면 2014.7.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협력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김치가 우선 협력 분야로 지목됐는데, 이는 현재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김치 수출 위생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3/0200000000AKR20140703161200017 .HTML?from=search](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3/0200000000AKR20140703161200017.HTML?from=search)).

¹² 중국 국가 인증 인가 감독 관리 위원회(CNCA)는 2015.1.26~2.2일까지 우리나라의 공장을 실사하는 등 국내 유가공 기업을 대상으로 살균유 수입 등록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으로 중국 흰우유 수출 재개 가능성은 있음.

- 그 밖에 대중국 농식품 수출 시 통관(위생증 수령 포함)까지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유통기간이 짧은 농식품 특성 상 판매에 어려움이 있음.
 - 인삼은 중국의 수입약재등록제도와 보건식품등록제도 적용으로 필요한 등록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홍삼가공제품은 사전허가 신청부터 위생허가증 발급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됨.

표 2-11. 중국의 주요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분석(2012.1~2014.7)

| 구분 | 부문 | 사례 수 (건) | 비중 (%) | 구분 | 부문 | 사례 수 (건) | 비중 (%) | | |
|-----------|----------|-------------|-----------|---------|---------|----------------|-----------|-------|------|
| 담당 검역소 | 산둥 | 103 | 58.2 | 품목명 | 음료 | 33 | 18.6 | | |
| | 광둥 | 17 | 9.6 | | 과자류 | 20 | 11.3 | | |
| | 심천 | 13 | 7.3 | | 유제품 | 19 | 10.7 | | |
| | 상해 | 11 | 6.2 | | 기타 수산물 | 8 | 4.5 | | |
| | 북경 | 5 | 2.8 | | 모든 김 | 7 | 4.0 | | |
| | 상하이 | 5 | 2.8 | | 라면 | 5 | 2.8 | | |
| | 하문 | 4 | 2.3 | | 모든 어류 | 5 | 2.8 | | |
| | 장쑤성 | 3 | 1.7 | | 모든 소스류 | 4 | 2.3 | | |
| | 주해 | 3 | 1.7 | | 김 | 3 | 1.7 | | |
| | 광서 | 2 | 1.1 | | 유자차 | 3 | 1.7 | | |
| | 닝보 | 2 | 1.1 | | 커피 | 1 | 0.6 | | |
| | 닝보시 | 2 | 1.1 | | 모든 수산물 | 1 | 0.6 | | |
| | 질강 | 2 | 1.1 | | 모든 임산물 | 1 | 0.6 | | |
| | 샤먼 | 1 | 0.6 | | 미역 | 1 | 0.6 | | |
| | 선전 | 1 | 0.6 | | 아이스크림 | 1 | 0.6 | | |
| | 안휘 | 1 | 0.6 | | 전통주 | 1 | 0.6 | | |
| | 요녕 | 1 | 0.6 | | 모든 가공식품 | 47 | 26.6 | | |
| | 중경 | 1 | 0.6 | | 모든 기타 | 17 | 9.6 | | |
| | 품목 구분 | 일반 가공 | 168 | | 94.9 | 통관 거부 유형 | 성분 기준치 초과 | 80 | 45.2 |
| | | 신선 | 8 | | 4.5 | | 유통기한 초과 | 31 | 17.5 |
| 전통 가공 | | 1 | 0.6 | 성분 위반 | 20 | | 11.3 | | |
| 조치 사항 | 폐기 | 87 | 49.2 | 인증서 불합격 | 15 | | 8.5 | | |
| | 반품/반송 | 74 | 41.8 | 라벨 불합격 | 8 | | 4.5 | | |
| | 소각 | 16 | 9.0 | 기타 | 23 | | 13.0 | | |
| 총합계 | | 177 | 100.0 | 총합계 | | | 177 | 100.0 | |

주: 세부내용은 부록 1 참조.

자료: aT KATI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2.1~2014.7 기간의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를 재분석한 결과임.

- aT KATI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중국의 주요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를 수집하여 <표 2-11>에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지역적으로는 산둥 지역(58.2%)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광둥(9.6%), 심천(7.3%), 상해(6.2%) 순서로 나타남.
 - 품목 유형별로는 일반 가공식품(음료, 과자류, 유제품)의 비중이 94.9%로 대다수로 나타나 일반 가공식품의 통관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신선식품의 경우 통관 애로 사례가 4.5%로 비중이 높지 않음.
 - 품목별로는 음료(18.6%)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 과자류(11.3%), 유제품(10.7%)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통관 거부 유형별로는 성분 기준치 초과(45.2%), 유통기한 초과(17.5%), 성분 위반(11.3%), 인증서 불합격(8.5%), 라벨 불합격(4.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3.2. ASEAN

3.2.1. 베트남

가. 비관세조치 개관

-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관세할당, 내국세, 허가제 민감 품목의 수입금지, 국영무역, 기술 규제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조치는 기술규제임 <표 2-12>.
 - 식품과 관련하여 계란, 오리알, 기타 알, 담배 재료, 소금, 설탕 등 수입쿼터 품목도 존재함(김태윤 외, 2010a).
- 한국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직면한 비관세조치는 대부분 기술 규제(technical regulation)로 분류할 수 있음<표 2-13>.

-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유통을 위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식품별 검역기준 미흡, 검역 기준 운영 부적절성 등이 비관세조치로 파악됨.

표 2-12. 베트남의 NTM

| 구분 | NTM 분류 | 내용 | 빈도 | 주요 해당품목 |
|----|--------|------------------|----|--|
| 1 | 1400 | 저율 관세할당 | 3 | 조란,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담배 |
| 2 | 2300 | 내국세와 부과금 | 7 | 주류, 담배 |
| 3 | 5100 | 자동허가 | 6 | 산동물 |
| 4 | 6370 | 민감품목 금지 | 2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것으로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우뭇가사리와 기타 짐액과 농화제 |
| 5 | 7100 | 단일 수입채널 (국영무역기업) | 2 | 담배 |
| 6 | 8100 | 기술 규제 | 53 | 산동물, 산식물(뿌리포함),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과 풀·이끼 및 지의, 채두류, 채소, 과일, 견과류, 커피, 차류, 마태, 향신료, 베이커리제품,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오일케이크 및 고품의 유박,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사료용 조제품 |

주: “빈도”는 해당 NTM에 의해 영향을 받는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 기준)의 수를 말함.
 자료: ASEAN(<http://goo.gl/ccQEMS>).

표 2-13.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베트남의 NTM

| 구분 |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 NTM 분류 | NTM 내용 |
|----|--------------------------|--------|--------|
| 1 | 수입 유통을 위해 과도한 시간 소요 | 8100 | 기술 규제 |
| 2 | 식품별 검역기준 미흡 및 운영 부적절 | 8100 | 기술 규제 |
| 3 | 외국기업과 농민 간 농산물 직거래 전면 금지 | - | - |

주: 세부내용은 부록 1 참조.

가. 비관세조치 사례 13

(1) 일반사항

- 2010년 4월에 베트남은 폭 넓은 식품안전 우려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SPS 조치들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2006년 5월에 미국과 베트남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관한 미국의 식품안전과 검사체제를 베트남의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음. 베트남은 OIE와 같은 국제기구가 제시한 다른 식품안전 기준을 채택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음.
- 2012년 4월, 베트남은 종합적인 식품안전법(Food Safety Law)의 “시행령(Decree) 38”을 발표하였는데 이 시행령은 원예작물, 육류, 수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다루고 국내외 생산자들에게 적용되는데 투명성이 부족하고 부담스러운 준수(conformity) 평가절차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식품안전

-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 베트남의 양자협상에서 베트남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이후 양국은 생소와 쇠고기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건강 요건을 협상하고 있음. 2011년 7월에 양측은 생소의 베트남 수출요건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베트남이 쇠고기 시장도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2010년 5월에 베트남은 동물에서 유래한 수입식품의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을 담은 “회람(Circular) 25”를 발표함. 이 규정은 생산자로 하여금 경영정보를 포함하여 개별 시설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임. 미국은 이에 대해 수출업체의 등록 요건, 새로운 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

¹³ USITC(2011) 제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함.

하고 일관된 검사 및 승인과정 등 장기 관심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2011년 7월 베트남은 식물에서 유래된 수입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수출업체 등록 요건, 표본 검사율, 잔류허용기준(MRL) 범위 등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고, 이에 관해 양국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2010년 7월에 베트남은 모든 국가로부터 내장 수입을 임시로 금지하였음.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어서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자료를 WTO나 무역상대국에 제시하지 않고 있음. 2011년 4월에 베트남의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는 이른바 “붉은 내장(red offals)”으로 불리는 돼지와 가금육 심장, 간, 콩팥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소의 것도 수입금지를 해제하였음. 그러나 모든 다른 내장 이른바 “하얀 내장(white offals)”은 금지된 채로 남아있었으며, 2014년 2월에 MARD는 미국과 무역재개를 위한 필요한 요건에 합의하였음.

3.2.2. 인도네시아

가. 비관세조치 개관

-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조치는 품질 기준, 수입 허가제(import licensing), 표시제(labeling) 등으로 볼 수 있음<표 2-14>. 특히 인도네시아가 원예작물과 동물성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허가제는 미국과 뉴질랜드가 WTO 분쟁을 신청할 정도로 그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14, 15}

¹⁴ 해당 WTO 분쟁은 본격적으로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하는 협의(consultations) 단계에 있음. 미국이 제기한 사건은 DS478(2014년 5월), D465(2013

표 2-14. 인도네시아의 NTM 현황

| 구분 | NTM 분류 | 내용 | 빈도 | 주요 해당품목 |
|----|-----------|---|----|--|
| 1 | 2300 | 내국세-소비세 | 7 | 당류, 주류, 담배 |
| | | 내국세-사치세 | 61 | 병 혹은 캔으로 된 제품, 당류, 코코아제품, 곡물 산품, 채소, 과실로 만들어진 제품, 커피, 차, 농 축물, 병과류, 물 혹은 음료, 오일케이크 및 고형 의 유박, 사료용조제품, 담배 |
| 2 | 5100 | 자동 수입허가 | 13 | 옥수수, 쌀, 대두, 고체 상태의 자당, 물, 얼음, 눈,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물 혹은 음료, 맥 주, 포도주, 기타 발효주, 에틸 알코올,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
| 3 | 6100 | 수입허가 | 6 | 산 동물 |
| | | 수량 제한 수단-허가제 | 70 | 육류, 어류, 갑각류, 당류, 코코아 제품, 곡물을 이용해 얻은 조제식료품, 채소·과실·견과류, 채 소·과실·견과류를 이용해 얻은 조제 식료품, 커피, 차, 마태, 호모, 소스, 혼합 조미료 및 겨자, 주류, 오일 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사료용 조제품, 담배 |
| 4 | 6300 | 수량 제한 수단-금지 | 1 |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
| 5 | 6700 | 수입업체의 선택적 승인에 의한 허가(등록된 수입업체) | 33 | 물과 얼음 및 눈, 음료, 주류, 식초 및 식초 대용 물, 산식물(뿌리포함), 버섯의 종균, 식물의 잎· 가지 및 기타의 부분과 풀·이끼 및 지의 |
| 6 | 7110 | 독점 조치- 단일 수입 채널- 국영무역관리 | 6 | 쌀, 맥주, 포도주, 에틸알코올 |

년 8월), D455(2013년 4월) 등이고, 같은 사안에 대한 뉴질랜드의 제소는 DS477(2014년 5월)와 DS466(2013년 8월)임(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¹⁵ 표시제에 관해서는 할랄 제품의 적용 중심으로 뒤에서 살펴보고자 함.

(계속)

| 구분 | NTM 분류 | 내용 | 빈도 | 주요 해당품목 |
|----|-----------|--------------------------|-----|---|
| 7 | 8100 | 기술 규제 | 1 | 당류와 설탕 과자 |
| | | 기술 규제-CITES | 22 | 산동물, 식물의 잎, 가지, 뿌리 및 기타의 부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기타 식물성 생산품, 사료용 식물 |
| | | 기술 규제- 품질기준 | 203 | 육류, 밀크와 크림,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과 풀, 이끼 및 지의, 채소, 견과류, 과실,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을 이용한 식료품, 당류,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통해 얻은 조제식료품, 과실 및 채소 및 견과류를 이용해 얻은 조제 식료품, 커피와 차 또는 마테를 이용해 얻은 조제 식료품, 소스, 혼합조미료, 혼합조제식료품, 빙과류, 물과 얼음 및 눈, 음료, 주류, 식초, 박류, 오일 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사료용 조제품, 담배 |
| 8 | 8100 | 기술 규제- 보건부에 등록된 허가 | 56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조제식료품,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엑기스와 즙, 당류, 곡물산품을 통해 얻은 조제 식료품, 베이커리 제품, 저장 처리한 채소 및 과실 및 견과류와 이를 이용한 조제식료품, 커피·차 또는 마테의 엑기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소스, 빙과류, 물과 얼음 및 눈, 음료, 식초 및 식초 대용물, 주류, 박류, 오일 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사료용 조제품, 담배 |
| | | 기술 규제- 보건부에 등록 | 3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조제식료품,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엑기스와 즙, 당류, 곡물산품을 통해 얻은 조제식료품, 베이커리제품, 저장처리한 채소 및 과실 및 견과류와 이를 이용한 조제 식료품, 커피·차 또는 마테의 엑기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소스, 빙과류 |

(계속)

| 구분 | NTM 분류 | 내용 | 빈도 | 주요 해당품목 |
|----|-----------|--|-----|---|
| | | 기술 규제- SPS협정 | 55 | 산동물, 육류, 식물의 잎, 가지, 뿌리 및 기타의 부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지방성 물질,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또는 조제품,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을 이용해 얻은 조제 식료품 |
| 9 | 8130 | 기술 규제 - 표시제 | 195 | 밀크와 크림,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을 이용한 식료품, 당류, 코코아를 이용한 제품,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통해 얻은 조제식료품, 과실 및 채소 및 견과류를 이용해 얻은 조제 식료품, 커피와 차 또는 마테를 이용해 얻은 조제식료품, 소스, 혼합조미료, 혼합 조제식료품, 빙과류, 물과 얼음 및 눈, 음료, 주류, 식초, 박류,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사료용 조제품, 담배 |
| 10 | 8150 | 기술 규제 - 검사와 검역증명서 | 14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해초류와 기타 조류,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 곡물의 짚과 껍질, 사료용 식물 |
| | | 기술 규제 - 검증, 검사 및 검역조건 | 32 | 식물의 잎·가지 및 뿌리 및 기타의 부분과 폴·이끼 및 지의, 채소, 견과류, 과실 |
| 11 | 8900 | 기술 조치 (별도로 특별한 기제가 없을 경우) - 적절한 도축 | 10 | 육류 |

주: “빈도”는 해당 NTM에 의해 영향을 받는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 기준)의 수를 말함.
자료: ASEAN(<http://goo.gl/ccQEMS>).

-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직면한 비관세조치는 대부분 기술 규제(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함. 주요 사항으로 수입식품 등록제도, 수입 쿼터제, 수입 항구 제한 등이 있음<표 2-15>.
 - 모든 가공식품에 대하여 수입업체가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수입하려는 제품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함. 등록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며, 등록된 제품의 포장디자인, 표기 내용 등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등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사과·포도·귤·참외·장류(된장, 고추장, 춘장)·수산물(김·미역 등), 양파, 감자, 파, 마늘 등이 쿼터 품목으로 묶여 있어 수입업체는 반기별로 쿼터를 신청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2012년 6월, 과일, 채소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입통관 항구를 여덟 개에서 네 개로 축소하여 우리나라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Tanjung Priok 항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신고배’만 가능), CRA(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협정에 합의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한 상태임.
- 인도네시아는 농식품 중 자국기업의 이해관계가 큰 가공식품(141개)의 비관세장벽이 다수 존재하며 동물·제품은 23건, 식물·제품 21건임(김태운 외, 2010a).
-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입자 인증요건 강화,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 항구 축소 및 검역 강화,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제 강화, 광물자원 수출허가에 관한 요건 강화 등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음(김유미, 2012).

표 2-15.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인도네시아의 NTM

| 구분 |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 NTM 분류 | NTM 내용 |
|----|----------------------------|--------|-----------------------------|
| 1 | 수입식품 등록제도 | 6100 | 수량 제한 수단-허가제 |
| 2 | 농수산물 쿼터 제도 | 6200 | 수량 제한 수단-쿼터 |
| 3 | 신선농산물 수입항구 제한 | - | - |
| 4 | 통관 소요 시간 단축 및 과다한 요구 해결 필요 | 8150 | 기술 규제 - 검증, 검사 및 검역조건 |
| 5 | 원예작물 수입규제 부당 | 8100 | 기술 규제-품질기준 기술 규제-보건부에 등록 |
| 6 | 목재 수출 규제 | 8100 | 기술 규제 - CITES |

자료: 세부내용은 부록 1 참조.

표 2-16.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현황(2007년)

| 구분 | 분류 | 동물·제품 | 식물·제품 | 가공식품 등 | 합계 |
|----|-------------|-------|-------|--------|-----|
| 1 | 부가세/과징금 | | | | 18 |
| 2 | 물품세 | | | 13 | 7 |
| 3 | 비자동 수입 허가 | | 1 | 7 | 62 |
| 4 | 자동 허가 조치 | | 5 | 32 | 65 |
| 5 | 수입 할당 | | | 1 | 3 |
| 6 | 수입 금지 | 1 | | 1 | 35 |
| 7 | 선적전 검사 | | 1 | | 3 |
| 8 | 독점적 수입 채널 | | 1 | | 10 |
| 9 | TBT | 19 | 10 | 4 | 79 |
| 10 | 라벨링/상표/포장 등 | 1 | | 40 | 47 |
| 11 | 검사 | 2 | 3 | 43 | 6 |
| | 계 | 23 | 21 | 141 | 335 |

자료: 김태윤 외(2010a), 石川幸一(2008) p.14. 재인용.

가. 비관세조치 사례 16

(1) 식품안전

(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 인도네시아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검역체제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미국 수출업체들이 경영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요구함. 인도네시아는 문서 검토과정을 통해 제한된 업체만 승인해 왔으며 다수의 미국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업체는 3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나) 동물 관련 상품

- 2009년 10월에 인도네시아는 “법률(Law) 18/2009”를 통해 유제품과 달걀

¹⁶ USITC(2011) 중심으로 작성함.

등 동물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에 사전 등록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동물 관련 상품의 수출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개별적으로 감사하고 승인한 시설에서만 가능함. 2011년에 내놓은 이행법은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와 검사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아직까지 “법률 18/2009”는 WTO에 통보되지 않았음.

- 2011년 유제품에 적용하는 미국의 식품안전제도에 관한 감사결과, 인도네시아는 단순화한 설문지를 통해 검토와 승인을 위한 사전 등록과정을 밟기로 합의하였음.

(2) 할랄(Halal) 규범¹⁷

- 6년 이상 끌어왔던 “할랄제품 인증에 관한 법 No. 33(Halal Product Certification: 할랄법)”이 2014년 9월 25일에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 MORA)는 2년 안에 이행법을 준비할 것이고, 이에 따라 5년 안에 의무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즉,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로 인증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제품은 “non-halal”로 표기해야 함. 할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EU 2014; 외교부 2014).¹⁸

-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품, 생물제품, GMO 등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대상임(제1.1조; 제4조).
- 할랄제품은 이슬람 법(sharia)에 따라 할랄로 선언되어야 하며, 할랄제품의 과정(process of Halal Product 또는 Jaminan Produk Halal: JPH)은 할랄제품을 인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원료의 공급, 가공, 저장, 포장, 분배, 판매, 서빙을 포함함(제1.3조; 1.5조).
- 정부는 할랄제품안전청(Security Agency Halal Products 또는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을 만들어 인증을 발급함(제1.6항).

¹⁷ 할랄(Halal)은 아라비아어로 “허가된” 또는 “합법적인”이란 뜻임(Nakyinsige et al. 2012).

¹⁸ 법의 원문(인도네시아어와 영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수 있음(<http://goo.gl/yIUnXY>).

- 학자, 무슬림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우레마 위원회(Indonesian Ulema Council 또는 Majelis Ulama Indonesia: MUI)가 이슬람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 종교 관점의 유권해석(fatwa)에 따라 인증이 발급됨(제1.7조; 1.10조).
 - 할랄 검사기관(Auditor Institutions Halal 또는 Lembaga Pemeriksa Halal: LPH)이 할랄제품의 검사 또는 검증을 담당함(제1.8조).
 - 모든 수입제품도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외국의 할랄인증은 국내 인증기관인 BPJPH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제47조).
 - 할랄인증은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료, 제조과정, 생산 장소와 시설, 포장, 저장 및 유통, 할랄제품의 서빙 등까지 추적되어야 함(제1.3조; 제17~22조; 제25조).
 - 할랄이 아닌 제품은 반드시 “non-halal”로 표시해야 함(제26조).
 - 할랄인증을 받은 업체가 할랄과정 유지에 실패할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20억 루피아(rupiah)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제56조).
 - 이행과정 JPH(할랄제품보증: Halal Product Guarantee) 공식에 대한 정보 기밀을 유지하지 않는 자에겐 징역 2년 또는 2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함(제57조).
 - 공포 후 2년 안에 이행법을 발표함(제65조).
 - 정부는 5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그동안 차츰 할랄 검증과 인증에 대한 의무화를 진행함(제67조).
- 무슬림 인구가 2억 1,00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할랄 인증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할랄법은 국제무역에 작지 않은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인구의 90% 가까이가 무슬림이란 사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할랄 식품 위주로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임.

- 할랄 식음료 시장은 2013년 1조 2,920억 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17.7%)에서 2019년 2조 5,370억 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21.2%)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The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 톰슨로이터).
 - 2012년 기준으로 세계의 육류 수입에서 할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종류에 따라 작게는 3%에서 최대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표 2-17>.
- WTO 규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할랄법은 국내외 모든 제품에 같은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무역조치라 보기 어려움.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할랄 인증취득, 검사, 화물 운송, 추가 처리시간 소요 등에서 수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국내업체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이런 인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는 더 큰 이행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임.

표 2-17. 2012년 할랄과 코셔 육류의 수입액

단위: 1,000달러

| 수입국 | 냉장쇠고기 | 냉동쇠고기 | 양고기 | 내장 | 가금육 |
|----------|------------|------------|-----------|-----------|------------|
| 인도네시아 | 11,499 | 127,715 | 8,083 | 16,792 | 1,209 |
| 마그레브 | 57,276 | 305,497 | 36,842 | 3,940 | 175,520 |
| 말레이시아 | 16,972 | 410,097 | 95,742 | 48,336 | 108,341 |
| 중동 | 598,504 | 2,942,249 | 897,159 | 278,916 | 4,078,447 |
| 사우디아라비아 | 75,043 | 362,267 | 225,707 | 36,540 | 1,513,312 |
| UAE | 160,105 | 19,540 | 223,470 | 12,516 | 644,587 |
| 이스라엘 | 264 | 418,421 | 9,033 | 10,854 | 10,605 |
| 세계 | 19,803,464 | 17,797,649 | 5,642,451 | 6,786,811 | 25,041,855 |
| 할랄 비중(%) | 3.46 | 21.27 | 18.39 | 5.13 | 17.42 |

주 1) 마그레브(Maghreb)는 알제지라, 리비아, 모리타니와, 튀니지아를 일컫음.

2) 중동에는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 예멘이 포함됨.

3) 이스라엘의 수입액은 유대교 방식을 따르는 코셔(Kosher)를 말함.

자료: Farouk et al.(2014)

(3) 수입 허가제

- 인도네시아가 농식품에 적용하는 수입허가제의 대상 품목은 쌀, 설탕, 동물제품, 원예작물 등임<표 2-18>. 수입 허가제의 목적은 식량안보, 국내 경제안정, 경제성장, 생산농가 보호, 산업 경쟁력 유지, 소비자의 관심사항 보호 등 다양하며, 특히 국내생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농식품 수입의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무역부(Ministry of Trade: MOT) 내 국제무역국(Directorate-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이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의 추천아래 수입허가를 시행하며 일부 원예작물과 설탕의 경우 선적할 때마다 수입허가가 필요함.
- 이러한 조치들은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하며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지적되어 왔음. 특히 미국과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의 원예작물과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허가제에 관한 WTO 분쟁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임. 미국이 제기한 사건은 DS478(2014년 5월), D465(2013년 8월), D455(2013년 4월) 등이고, 같은 사안에 대한 뉴질랜드의 제소는 DS477(2014년 5월)와 DS466(2013년 8월)이 있음.
- 2013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수입허가제의 일부 요건을 개정하였음.¹⁹ 첫째, 규제대상 원예작물의 수를 줄였는데 예를 들면, 2013년 상반기에 임시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15개 원예작물 중 배추(drum head: HS 0704.90.11.00; 기타 0704.90.19.00), 방울 다다기 양배추(Brussels sprouts, 0704.20.00.00), 꽃양배추(cauliflower, 0704.10.10.00), 브로콜리(0704.10.20.00)에 관한 규제를 해제하였음.
 - 나머지 작물과 과실, 감자(0710.10.00.00), 마늘(0703.20.90.00), 고추(chilli, 0709. 60. 10.00), 파인애플(0804.30.00.00), 바나나(0803.90.00.00), 망고(0804.50.20.00),

¹⁹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의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람(<http://goo.gl/H6Tlk5>).

표 2-18.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 현황

| 품목 | 부과 이유 | 절차 | 규정 |
|----------------|---|---|---------------------------------|
| 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안보 쌀 농가의 복지 보호 국가경제 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정미(HS 1006309000)와 같은 쌀은 MOT의 승인아래 국영무역업체(BULOG)가 수입 수확기가 아닌 때만 수입 BULOG가 직접 또는 등록된 민간 수입업체에 의뢰하여 수입 다른 형태의 쌀은 MOA의 추천과 MOT의 승인아래 등록된 특별 쌀 수입업체가 수입 | MOT 규정 No. 30/2012 |
| 원예작물 (신선 및 가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안보, 국내경제 안정 소비자의 관심사항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T가 인정하는 수입업체는 ① 생산과정의 원료나 부재료로만 수입품을 사용하는 생산 수입업체—IP 원예작물, ② 수입품을 도매상과 거래 또는 전달하는 수입업체—IT 원예작물 등 IT 원예작물의 경우 매 선적분마다 MOA의 추천과 MOT의 승인 필요 MOA가 국내생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허가 부여* 수입업체는 지원한 물량의 최소 80%를 목표기간에 수입 | MOT 규정 No. 30/2012 (개정 16/2013) |
| 동물제품 (유제품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안보와 주권 이행법(No.18/2009)에 의해 산 동물과 동물제품의 수입은 대중이 적절할 가격으로 소비하기에 국내생산이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만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가 신선 동물 및 동물제품의 연간 수입량을 배분 수입은 연간 2차례에 걸쳐 수입업체에 분배되고, 등록된 수입업체만 수입 날고기와 내장은 산업, 호텔, 식당, 출장요리 서비스 용도로만 수입 MOT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수입하되, 먼저 농업부(MOA) 또는 가공 동물제품의 경우 식약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Control)의 추천 필요 | MOT 규정 No. 24/2011 |
| 설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안보 경제성장 설탕산업의 경쟁력 및 설탕농가의 소득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탕의 수입 생산자(IP 설탕)은 MOI 추천아래 MOT에 신청하여 수입량, 설탕 형태, 수입항 지정 등 배분 획득 백설탕은 ① 정제 계절 이외, ② 가격이 kg 당 5,000 루피(Rp) 초과, ③ 수요 충족에 부족할 때만 수입 MOT가 지정한 수입업체 (IT 설탕)는 최소 75%의 원당을 지역의 생산자로부터 구입하고, MOT는 백설탕 선적분마다 분량과 항구를 지정 | MOT 규정 527/2004 |

주 1) MOA: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T: 무역부 (Ministry of Trade); MOI: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2) * 이 조항은 개정된 MOT 규정 16/2013에 의해 삭제됨.

자료: WTO(2013); Global Business Guide Indonesia(<http://goo.gl/cWdsno>)

- 파파야(0807.20.10.00; 0807.20.90.00), 멜론(0807.19.00.00), 두리안(durian, 0810.60.00.00), 채소 및 과일주스 등의 규제 완화도 공표된 상태임.²⁰
- 둘째, 수입 추천권(RIPH) 발행에 관한 변화임. 농업부(MOA)는 규제대상 품목에 대해 국내생산과 공급 및 소비를 감안하여 1년에 2차례(1~6월 수입분과 7~12월 수입분)에 걸쳐 수입 추천권을 발행함. 또한, RIPH 신청을 온라인(<http://inatrade.kemendag.go.id/>)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개정된 무역부(MOT)의 규정아래 설치된 무역서비스단(Trade Service Unit)을 통해 수입허가 신청과 허가 발행 기간을 단축시켰음. 농업부(MOA)도 RIPH 발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최소 10일에서 최대 7일로 단축시켰음.
- 그러나 제소국들은 이러한 개정안에 만족하지 못하여 2014년에 다시 제소하게 되었으며, 2015년 1월 말 현재는 패널(panel)이 설치되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하는 협의(consultations) 단계에 있음.²¹
- 인도네시아의 비자동 수입허가제는 원예작물의 경우 ① 무역부(MOT)가 생산 수입업체(Producer Importer: PI) 또는 등록 수입업체(Registered Importer: RI)를 지정하고, ② 농업부(MOA)가 수입 추천권(RIPH)을 발행하며, ③ 무역부(MOA)가 최종 수입을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 승인수입량과 원산지를 지정하고 있음.
- 동물과 동물제품의 경우 ① 수입업체에 관한 무역부(MOT)의 요건을 충족하고, ② 등록 수입업체(Registered Importer: RI)이어야 하며, ③ 농업부(MOA)로부터 수입 추천권(RIPH)을 받고, ④ 무역부(MOA)가 최종 수입을 승인하는 방식임. 수입 추천권에는 수입량, 형태, 원산지, 용도 등이 지정됨.

²⁰ 당근(0706.10.10.00)와 질갱이(plantain, 0803.10.00.00)의 임시 수입금지는 아직 해제되지 않고 있음.

²¹ WTO의 분쟁 관련 웹사이트 참조하기 바람(<http://goo.gl/a6ka02>).

- 제소국들은 이러한 수입 허가제가 다음처럼 무역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음(USTR, 2014).
 - ① 수입 추천권(RIPH)은 수확한지 6개월이 지난 신선 원예작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
 - ② 관련 규정의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 및 동물제품은 전혀 수입될 수 없음.
 - ③ 수입 승인은 특정 기간에만 발행되고, 이 승인은 품목, 수입량, 수출국, 조건 등을 정하고 있음.
 - ④ 수입업체는 수입 신청 시 3개월 또는 6개월 전망에 근거해야 함. 또한, 실제 수입량이 허가된 물량의 일정 부분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생산자 수입업체(PI) 또는 등록 수입업체(RI)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⑤ 특정 형태의 용도, 판매, 구매, 배포 목적의 수입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음.
 - ⑥ 국내 가격이 특정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됨. 기준가격은 원예작물 가격 관측팀(Price of Horticulture Product Team) 또는 소고기 가격 관측팀(Beef Price Monitoring Team)에 의해 설정됨.
 - ⑦ 수입된 원예작물의 판매가 도매상(distributor)으로만 한정됨. 수입 쇠고기의 경우 산업용 및 호텔, 식당, 출장 요리서비스 용도로만 판매될 수 있음. 국내 제품의 경우 이러한 판매 제한이 부과되지 않음.
 - ⑧ 선적하기 전에 사전 검사요건이 있음.
 - ⑨ 수입 허가제에 관한 정보를 WTO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음.

- 이러한 무역 분쟁의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1995~2014년에 수입 허가제가 분쟁 이슈에 포함된 제소 건수가 44건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농산물의 수입 허가제가 주된 분쟁사항이었던 사건은 많지 않음. 다만 2015년 1월에 아르헨티나의 수입 허가제에 관한 상소기구(Appellate Body: AB)의 판정에서 제소국(EU, 미국, 일본)이 승소한 점은 주목할 사항임(USTR 2015).²²

²² 관련 사건의 요약은 다음 WTO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http://goo.gl/rUU6dc>).

3.3. 국내산 수출 농식품의 비관세장벽 사례

3.3.1. 주요 사례 분석

-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농식품에 대한 외국의 비관세장벽 및 조치에 대해 최근 보고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 유형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²³
 - 2012년 11건, 2013년 14건, 2014년 28건 등으로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 증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표 2-19. 한국 농식품 수출 국가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분석

단위: 건

| 구분 | 검역 | 통관 | 제도 | 라벨링 | 기타 | 총합계 |
|-------|----|----|----|-----|----|-----|
| 중국 | 12 | 14 | 2 | 3 | 3 | 34 |
| 일본 | 3 | 5 | 3 | | 4 | 15 |
| 미국 | 5 | 2 | 2 | | 1 | 10 |
| 인도네시아 | 1 | 1 | 2 | | 2 | 6 |
| 싱가포르 | 4 | | 1 | | | 5 |
| 베트남 | 1 | | 2 | | | 3 |
| 브라질 | 1 | 1 | | | | 2 |
| 대만 | 1 | 1 | | | | 2 |
| 인도 | 2 | | | | | 2 |
| 말레이시아 | | | | | 1 | 1 |
| 뉴질랜드 | 1 | | | | | 1 |
| 홍콩 | | | 1 | | | 1 |
| 인도 | 1 | | | | | 1 |
| 멕시코 | 1 | | | | | 1 |
| 호주 | | 1 | | | | 1 |
| 총합계 | 33 | 25 | 13 | 3 | 11 | 85 |

주: 세부내용은 부록 1 참조.

²³ 참고문헌 및 aT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리함.

- 국가별로는 중국의 비중이 4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본(17.6%), 미국(11.8%), 인도네시아(7.1%) 순으로 분석됨.
 - 그 밖에 싱가포르, 베트남, 브라질,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홍콩, 인도, 멕시코, 호주 등에 대해서도 사례가 있음.
- 유형별로는 검역 및 통관 관련 비관세장벽이 70% 가까운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제도 및 라벨링에 대한 경우도 있음.
 - 품목 유형별로는 신선(47.1%), 일반가공(20.0%), 전통가공(16.5%) 등 전반적으로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경우도 16.5%로 높은 편임.

표 2-20. 국가 및 연도별/품목 유형별 분석

단위: 건

| 구분 | 연도별 | | | | | 품목 유형별 | | | | 총합계 |
|-------|------|------|------|------|----|--------|----|------|------|-----|
| | 2010 | 2012 | 2013 | 2014 | 기타 | 모든 식품 | 신선 | 일반가공 | 전통가공 | |
| 중국 | 4 | 11 | 3 | 12 | 4 | 7 | 7 | 7 | 13 | 34 |
| 일본 | | | 4 | 3 | 8 | 2 | 8 | 4 | 1 | 15 |
| 미국 | | | 4 | 2 | 4 | 2 | 6 | 2 | | 10 |
| 인도네시아 | | | | 4 | 2 | | 5 | 1 | | 6 |
| 싱가포르 | | | | 2 | 3 | 1 | 4 | | | 5 |
| 베트남 | | | | | 3 | 1 | 2 | | | 3 |
| 브라질 | | | 1 | | 1 | | 1 | 1 | | 2 |
| 대만 | | | | 2 | | | 2 | | | 2 |
| 인도 | | | | | 2 | 1 | 1 | | | 2 |
| 말레이시아 | | | | 1 | | | 1 | | | 1 |
| 뉴질랜드 | | | 1 | | | | 1 | | | 1 |
| 홍콩 | | | | 1 | | | 1 | | | 1 |
| 인도 | | | 1 | | | | 1 | | | 1 |
| 멕시코 | | | | 1 | | | | 1 | | 1 |
| 호주 | | | | | 1 | | | 1 | | 1 |
| 총합계 | 4 | 11 | 14 | 28 | 28 | 14 | 40 | 17 | 14 | 85 |

주: 세부내용은 부록 1 참조.

3.3.2. 비관세장벽 주요 사례²⁴

- 농식품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수출업체들이 수출에 제한을 겪은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유형 I 은 수출대상국별로 상품 및 성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통관이 제한되는 사례임.
 - 김치의 경우 동남아시아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김치라는 카테고리가 없고 김치를 모르는 경우도 많음. 인도와 프랑스로 김치 제품의 샘플을 보냈으나 샘플의 통관도 거부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단독 HS코드의 부재 및 김치의 인지도 부족 때문으로 판단됨.
 - 중국에서는 김치의 미생물 기준을 발효식품 기준이 아닌 중국의 파오차이(삶아서 절인 식품)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생기준을 맞추기 어려움.²⁵
 - 김 수출의 경우 국내 단계에서는 특정 성분에 대한 기준치가 없지만 수출대상국에서는 카드뮴 등 특정성분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통조림의 경우 상대국이 허용하는 잡균 숫자가 우리나라와 상이함.
- 유형 II는 수출대상국 검역·통관 해결을 위한 구비 서류가 너무 많음.
 - 인도네시아처럼 현지 식약청에 등록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통관기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출상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함.

²⁴ 농식품 수출업체의 FGI 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임.

²⁵ 연합뉴스(2015.2.26)에 의하면 2015년 김치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의 위생기준 당국인 중국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5.2.11.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의 절임 채소인 장엔차이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147900017.HTML?input=1195m>).

- 중국에서 6년근 이상은 보건식품 기준이 적용되어 효능을 증명해야 하는데 홍삼 비중이 낮은 사탕 등의 제품을 약처럼 효능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 인삼 활용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성분 등록, 효능 입증 필요함.
 - HACCP은 매년 갱신하는데 최초 인증 시점에서만 인증서에 표기되고 갱신일이 들어가지 않음. 해외에서 HACCP 유효기간을 및 갱신일을 따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함.
 - 유럽으로 당면을 수출할 때 중국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므로 중금속 안전성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여 세계적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증서를 요청하여 수출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였음.
 -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나 라벨 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유형 III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내 관련기관의 효율적인 대응 부족으로 인한 것임.
- 식육가공·육가공품은 인증서발급기관이 식약처로 통합되어 편리한데 그 외 품목은 발급기관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모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발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출할 때 ML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정부 간 협상으로 등록소요기간이 단축되었으면 함.
 - 미국 FDA에서 국내 생산업체를 순회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개념조차 없는 기준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PA(Product Authority: 공정 권한자)가 없어서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
 - PA는 사내 또는 외부의 저명한 교수나 학자 가운데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생산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제품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조언을 받는 역할임. 미국에서는 제품 가공업체끼리 모여서 그 분야의 전문 교수나 연구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거나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음.

3.3.3. 비관세장벽의 수출 영향 사례 분석

- 국내 농식품을 수출할 때 비관세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 분석을 감귤(미국), 사과(대만), 육류(말레이시아), 건멸치(미국) 사례에 대해 계측함. 이들 분석대상 사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T에서 작성한 통관 애로사항 및 비관세장벽 관련 문헌,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서 공동 발간한 ‘2013 무역장벽 보고서’와 aT KATI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관 보류 및 억류 등을 정리한 85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설정함.²⁶ 이 분석대상 사례들 중에서 품목의 분류가 HS-code로 명시되어 품목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비관세장벽 조치 이전과 이후의 수출액 변화에 대해 안정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며, 해당 비관세장벽 발생으로 인해 수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품목 및 비관세조치 사례를 대표적으로 선별하여 분석함.
-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조치 및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수출제한액, 즉 수출피해액을 계측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우선 비관세장벽이 발생하기 이전 5개년도 수출액의 평균증감율을 산출함. 만일 비관세장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전 5개년도 수출액의 평균증감율과 같은 추세로 지속적 수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가정함. 즉, 비관세장벽이라는 변수 이외에 수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정함. 비관세장벽이 발생한 이후(해당연도 포함)부터 비관세장벽 조치가 해제된 연도까지의 수출 예상액은 평균증감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수출 예상액에서 실제 수출액을 차감함으로써 해당 품목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피해액을 계측함.²⁷

²⁶ 이들 사례 등의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 1에 제시함.

²⁷ 수출증가율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난 품목의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피해액이 작게 계측될 수 있음. 만약 피해액 분석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평균 수출증감율이 아닌 최근 5년간 품목부류별 평균 수출증감율(사과의 경우: 과일류 수출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면, 피해액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첫 번째 사례는 감귤의 미국 수출 제한임. 지난 2002년 미국에 수출된 제주 산 감귤 1,600톤 가운데 감귤 궤양병이 발견된 1,000여톤이 통관되지 못함. 다음의 <표 2-21>은 한국산 감귤 제품의 미국 수출액 추이를 나타냄. 조사 결과 감귤 수출액은 1997년 약 126만 달러 수준에서 2001년 10만 달러 수준 까지 연평균 4.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발생한 감귤 궤양병으로 인한 대미 수출제한은 2010년 11월 미 동식물검역소가 한국산 감귤류에 대한 수입고시를 완료함에 따라 수출제한 이후 약 9년 만인 2011년부터 미국으로의 감귤 수출이 재개됨.²⁸ 2002년도에 비관세장벽이 발생하여 2011년도부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제한이 해소되었으므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기간은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9년 간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21. 한국산 감귤 제품의 미국 수출액 추이(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개년)
단위: 천 달러 %

| 구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평균증감율 |
|-----|-------|-------|-------|-------|-------|-------|
| 수출액 | 1,260 | 29 | 298 | 198 | 98 | -4.8 |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만일 궤양병 발병으로 인한 통관제한이라는 비관세장벽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국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이전 5개년도와 동일한 추세로 수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미 감귤수출은 <표 2-22>의 예상 수출액처럼 이루어졌을 것임. 실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감귤 수출액을 감안한다면,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피해액은 약 452만 달러로 추정됨.²⁹

²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및 식약청 식품기준과의 “미국이 우리나라의 ‘감귤, 삼계탕’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한 이유 및 이후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 경과(2011)”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2-22.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산 감귤 제품의 미국 수출 감소액 추정
단위: 천 달러

| 구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수출감소액 |
|--------|-------|-------|-------|-------|-------|-------|-------|-------|-------|-------|
| 실제 수출액 | 1,519 | 9 | 8 | 8 | 11 | 13 | 38 | 13 | 13 | 4,519 |
| 예상 수출액 | 940 | 895 | 852 | 811 | 772 | 735 | 700 | 666 | 634 | |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두 번째 사례는 사과와 대만 수출과 관련된 부분임. 대만 검역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식품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PLS(Positive List System)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농산물에서 대만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2011년 2월,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수출한 사과에서 잔류농약 검사 중 대만 미등록 농약 8건이 검출되었다며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산 수입사과에 대한 잔류농약 전수검사 조치를 실시함. 이에 따라 한국산 사과의 대만수출이 전면 중단됨.³⁰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만 정부 간 협의로 농약 등록을 완료하고 2012년 3월,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완화함. 다음의 <표 2-23>은 한국산 사과 제품의 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개년도 대만 수출액 추이를 나타냄. 조사 결과 사과 수출액은 2006년 약 207만 달러 수준에서 2010년 1,500만 달러까지 연평균 49.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3. 한국산 사과 제품의 대만 수출액 추이(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개년)
단위: 천 달러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평균증감율 |
|-----|-------|-------|-------|-------|--------|-------|
| 수출액 | 2,073 | 2,966 | 8,143 | 1,795 | 15,208 | 49.0 |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²⁹ 물론 이 수치는 한국산 감귤 제품의 미국 수출에 있어서 궤양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제한이라는 비관세장벽 이외에는 수출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비관세장벽이 2002년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577만 달러라는 예상수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출되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³⁰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2월 25일자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33>).

표 2-24.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산 사과 제품의 대만 수출 감소액 추정
단위: 천 달러

| 구분 | 2011년 | 수출 감소액 |
|--------|--------|--------|
| 실제 수출액 | 149 | 22,510 |
| 예상 수출액 | 22,660 | |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만일 잔류농약 검사로 인한 수출제한이라는 비관세장벽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국산 사과의 대만 수출이 이전 5개년도와 동일한 추세로 수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2011년의 수출액은 <표 2-24>와 같을 것임. 즉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수출액 증감율인 49.0% 만큼 2010년대비 2011년의 수출이 증가했다면, 예상되는 2011년도 수출액은 2,200만 달러 이상임. 실제 수출액이 불과 15만 달러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피해액은 약 2,250만 달러로 추정됨.
- 세 번째 사례는 한국산 육류 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임. 2011년 발표된 ‘Trade Description(Definition of Halal) Order 2011’에 의거하여 말레이시아에서는 육류에 대한 할랄 인증 제도를 마련함. 말레이시아는 타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할랄 인증 제도를 시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수출 중단 사실은 없으나 이 제도로 인해 상당부분 한국산 육류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정체됨. 아래의 <표 2-25>는 2011년 비관세장벽이 발생하기 이전 5개년도의 수출액 추이를 나타냄. 2006년 약 19만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산 육류의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2010년 약 43만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평균 수출액 증감율은 17.8%로 나타남.
- 만일, 할랄 인증이라는 비관세장벽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국산 육류 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이전 5개년도와 동일한 추세로 수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출액은 <표 2-26>과 같을 것임. 즉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수출액 증감율인 17.8% 만큼씩 매년 동일한 추세

로 수출이 되었다면, 예상되는 수출액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합계는 약 263만 달러임. 실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한국산 육류 제품의 수출액 합계가 151만 달러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4년간의 수출 감소액은 112만 달러로 추정할 수 있음.

표 2-25. 한국산 육류 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액 추이(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 개년
단위: 천 달러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평균증감율 |
|-----|-------|-------|-------|-------|-------|-------|
| 수출액 | 189 | 10 | 245 | 60 | 430 | 17.8 |

주: 수출액은 쇠고기와 닭고기 기준임.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표 2-26.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산 육류 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 감소액 추정
단위: 천 달러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수출 감소액 |
|--------|-------|-------|-------|-------|-------|--------|
| 실제 수출액 | 265 | 106 | 493 | 654 | 1,510 | 1,123 |
| 예상 수출액 | 506 | 596 | 703 | 828 | 2,633 | |

주 1: 수출액은 쇠고기와 닭고기 기준임.

2: 예상 수출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액이 이전 5년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증감율(17.8%) 만큼씩 증가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네 번째는 미국으로의 건멸치 수출 사례임. 지난 2011년, 한국산 건멸치는 FDA의 ‘보툴리움(부패한 고기에서 생성되는 독소)’ 규정에 저촉되어 수출이 제한됨. FDA는 ‘남해안 멸치가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데다 수분 함량이 많아 독소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적색 리스트’에 올림으로써 남해안 멸치 수출이 제한되었음. FDA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마른멸치에 대해 어획 직후부터 선적 시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계획(Plan)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계획(Plan)의 적절성 또한 확인·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미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기 전

FDA에 HACCP Plan을 제출하여 Green List에 등록될 경우, 정상적인 통관이 가능함. 아래의 <표 2-27>은 FDA의 위생기준이라는 비관세장벽이 발생하기 이전 5년간의 우리나라 건멸치 미국 수출액 추이를 나타냄. 한국산 건멸치는 2007년 약 530만 달러에서 2011년 약 67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5년간 평균증감율은 4.7%로 나타남.

- 만일 FDA의 위생기준이라는 비관세장벽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국산 건멸치의 미국 수출이 이전 5개년도와 동일한 추세로 수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출액은 <표 2-28>과 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즉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수출액 증감율인 4.7% 만큼씩 매년 동일한 추세로 수출이 되었다면, 예상되는 수출액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합계는 약 2,200만 달러임. 실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건멸치의 수출액 합계가 1,835만 달러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3년간의 수출감소액은 약 112만 달러로 추정됨.

표 2-27. 한국산 건멸치의 미국 수출액 추이(비관세장벽 발생 이전 5개년)
단위: 천 달러 %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평균증감율 |
|-----|-------|-------|-------|-------|-------|-------|
| 수출액 | 5,310 | 5,058 | 4,438 | 5,886 | 6,667 | 4.7 |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표 2-28.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산 건멸치의 미국 수출 감소액 추정
단위: 천 달러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수출감소액 |
|--------|-------|-------|-------|--------|-------|
| 실제 수출액 | 5,146 | 6,679 | 6,522 | 18,347 | 1,124 |
| 예상 수출액 | 6,980 | 7,308 | 7,652 | 21,941 | |

주: 예상 수출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액이 이전 5년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증감율(4.7%) 만큼씩 증가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최근 농식품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 유형별로는 신선, 일반가공, 전통가공 등 전반적으로 존재함. 우리나라 입장에서 농식품 수출 관련 비관세조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 비관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주요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분석 결과 지역적으로는 산둥 지역과 일반 가공식품(음료, 과자류, 유제품) 중심으로 통관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통관 거부 유형별로는 성분 기준치 초과, 유통기한 초과, 성분 위반, 인증서 불합격, 라벨 불합격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SPS 관련 조치가 매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TBT 조치로 분석됨. WIT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하는 비관세조치는 모두 SPS 관련 육류 제품으로 나타남.
 - 2012년의 경우, 수입 조치 가운데 전염병에 관한 우려로 인한 조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SPS와 관련하여 수입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조치, 농약이나 중금속 물질과 같은 잔류량의 수준에 따른 규제 비중이 높음.
 - 품목별로는 가금류(HS 0207) 비중이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산동물(HS 0106), 인삼 등 향료용·의료용 식물(HS 1211), 조제·보존 처리 어류(HS 1604) 비중이 높음.
- 중국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국내 기업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높음.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기업이 직면한 비관세조치는 대부분 기술 규제(technical regulation)로 분류할 수 있음.
 - 베트남은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유통을 위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식품별 검역기준 미흡 및 운영 부적절 등이 비관세조치로 파악됨.
 -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기업이 직면한 비관세조치는 대부분 기술 규제(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함. 주요 사항으로 수입식품 등록제도, 수입 쿼터제, 수입 항구 제한, 수입허가제 등이 있음.

- 감귤(미국), 사과(대만), 육류(말레이시아) 사례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피해액을 계측함. 분석 결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의 경우 패양병 발병으로 인한 2002~2010년까지 수출 제한액은 452만 달러로 추정됨.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의 경우 대만 검역당국의 허용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잔류농약 검출의 타격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2,250만 달러 정도 수출이 제한된 것으로 계측됨. 2천만 달러의 수출피해가 계측되었고,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육류제품은 2011년도에 마련된 할랄인증제도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약 112만 달러의 수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비관세장벽은 우리나라 농식품의 해외시장 수출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주며, 수출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국내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조치에 의한 수출제한액은 품목별, 국가별, 비관세조치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본 분석에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를 수출감소액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수출상품화와 물류비 등 수출을 위한 관련 제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임. 이는 수출업체의 경영실적 수출의욕을 감소시킬 것임.
 -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농식품 수출 비관세장벽 및 조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즉, 비관세장벽 관련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출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 필요함.

제 3 장

농식품 비관세조치 경제효과 사례분석

- 농식품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 사례분석은 중국시장 김치류 수출에 대해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음.
- 첫째로, 중국이 김치류 수입시장에서 수입김치류의 위생기준을 “자국산 절임채소류(파오차이)”를 적용하여 분류하는 비관세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김치류 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계량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둘째로, 현재 비관세조치로 인해 한국산 김치가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데 비관세조치가 해소되고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수출증대 시나리오별 국내 산업 및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함.

1. 중국의 김치류 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³¹

1.1. 분석 필요성 및 목적

- 관세(Tariff)는 거래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수입국의 정부 재정수입과 생산자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후생과 교역량의 감소를 야기함. FTA 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관세수준은 낮아졌고 이는 교역량을 증가시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에 따르면, 농업부문에 있어 관세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36% 감소하였고, 개발도상국 또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²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 재정수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입수요를 감소시키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듦으로써 수입량을 감소시킴(Deardorff and Stern, 1998). 또한 기업들의 거래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교역을 위축시켜 수입국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함. 일례로 미국 무역대표부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60여 개국의 47개 소비자 제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관세장벽은 과채류 44%, 육류 54%, 가공품 41%, 의류 50%의 가격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Dean et al., 2009).
- 하지만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와는 달리 실제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관세 이외의 무역정책들이 도입되기도 함. 예컨대 농산물의 경우,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동식물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 공산품의 경우도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통하여 자국의 표준에 부합한 제품을 수입함

³¹ 서울대학교 김태운 교수에게 원고 위탁한 결과를 재정리함.

³²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3_e.htm

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와 같이 수입 이전에 수출국에서 검사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기능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함. 이러한 무역정책들은 실제 필요에 의하여 도입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ments)로 불림.

- UN의 기준에 의하면 비관세조치는 크게 수입과 수출부문으로 구분하고 수입부문에서는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로 다시 세분화 함(UN, 2013). 즉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비관세조치가 보다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임. 유럽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주도하에 설계된 ‘실시간 무역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중국은 약 185개의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³³ 한국도 83개, 일본은 103개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 농식품 부문에서 동식물검역(SPS)은 자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무역조치 중 하나임. 한국산 포장 김치는 현재로서는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운데, 이는 중국이 자국산 절임채소(파오차이)와 동일한 위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임. 즉, 중국의 절임채소 위생기준은 100g당 대장균균을 30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바, 한국산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중국의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임.
 - 한국의 수출업체 입장에서 이러한 중국의 기준은 김치를 절임채소류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수입식품을 유사한 자국의 식품으로 분류하여 위생기준을 적용하기

³³ www.globaltradealert.org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동식물검역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김치류 제품³⁴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비관세조치가 어느 정도의 무역장벽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국 김치류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고, 만약 중국에서 김치류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었을 경우 중국의 김치류 수입량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를 추정하고자 함.
 - 중국 김치류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중국 김치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1.2. 중국의 김치류 수입과 한국의 김치 교역 현황

1.2.1. 중국의 김치류 수입 현황

- <표 3-1>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의 김치류 제품 수입 현황을 나타냄.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2007년 약 120만 달러(약 1,000톤)의 김치류를 수입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수입이 급증하여 2010년 기준 수입액은 660만 달러에 육박함.³⁵ 하지만 2010년 이후 수입량은 정체되었고, 2013년에는 오히려 수입액이 420만 달러까지 감소함.

³⁴ 김치류 제품은 한국의 김치, 중국의 파오차이 등 모든 절임류 제품(HS코드 6자리 200599 기준)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이하 “김치류”로 명시함.

³⁵ 김치의 HS코드는 2005991000으로 모두 10자리이지만, 세계은행의 무역자료는 HS 6단위로 집계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HS 200599를 이용하고 이를 김치류로 표현함.

표 3-1. 중국의 김치류 제품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톤

| 연도 | 금 액 | 중 량 |
|------|-------|-------|
| 2007 | 1,173 | 997 |
| 2008 | 1,678 | 1,208 |
| 2009 | 3,188 | 2,988 |
| 2010 | 6,629 | 5,560 |
| 2011 | 6,348 | 5,552 |
| 2012 | 6,474 | 5,755 |
| 2013 | 4,218 | 3,024 |

주: HS코드 200599.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worldbank.org).

표 3-2. 중국의 김치류 수입시장의 상위 5대 수출국

단위: 천 달러, 톤

| 2012년 | | | | 2013년 | | | |
|-------|------|-------|-------|-------|------|-------|-------|
| 순위 | 국가명 | 금액 | 중량 | 순위 | 국가명 | 금액 | 중량 |
| | 전체 | 6,474 | 5,755 | | 전체 | 4,218 | 3,024 |
| 1 | 태국 | 4,357 | 4,479 | 1 | 태국 | 1,731 | 1,849 |
| 2 | 한국 | 503 | 235 | 2 | 한국 | 647 | 235 |
| 3 | 이탈리아 | 233 | 231 | 3 | 이탈리아 | 232 | 126 |
| 4 | 미국 | 173 | 62 | 4 | 프랑스 | 170 | 56 |
| 5 | 일본 | 137 | 89 | 5 | 베트남 | 132 | 22 |

주: HS코드 200599.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worldbank.org).

-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김치류 수입이 급증하자 수입산 절임 채소류에 대한 자국의 위생기준을 보다 강화함. 이로 인해 2011년부터 수입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2013년에는 오히려 감소함. 2013년 기준, 중국 김치류 수입시장의 상위 5대 수출국은 태국,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베트남 순임<표 3-2참조>. 태국³⁶은 2012년에 비하여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

³⁶ 태국도 한국의 김치와 유사한 절임채소(Thai pickled vegetables)를 소비하고 수출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 김치류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2012년도에 비하여 수출물량은 비슷하지만 수출금액은 소폭 증가함.

1.2.2. 한국의 김치교역 현황

- 한국은 2012년 기준 약 2만 8천 톤의 김치를 수출하였고, 약 21만 9천 톤의 김치를 수입함. kg당 수출가격은 3.9 달러로 수입가격 0.5 달러보다 약 8배 정도 높은 수준임.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과 미국, 홍콩, 대만, 호주 등이 있고, 수입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음<표 3-3 참조>.

표 3-3. 한국의 김치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 연도 | 수출 | | | 수입 | | |
|------|---------|--------|------|---------|---------|------|
| | 금액 | 중량 | 평균단가 | 금액 | 중량 | 평균단가 |
| 2007 | 75,309 | 26,470 | 2.8 | 110,166 | 218,910 | 0.5 |
| 2008 | 85,295 | 26,897 | 3.2 | 112,715 | 222,370 | 0.5 |
| 2009 | 89,386 | 28,505 | 3.1 | 66,335 | 148,124 | 0.4 |
| 2010 | 98,360 | 29,672 | 3.3 | 102,019 | 192,936 | 0.5 |
| 2011 | 104,577 | 27,429 | 3.8 | 120,874 | 233,078 | 0.5 |
| 2012 | 106,604 | 27,664 | 3.9 | 110,842 | 218,844 | 0.5 |
| 2013 | 89,277 | 25,631 | 3.5 | 117,431 | 220,218 | 0.5 |
| 2014 | 84,033 | 24,742 | 3.4 | 104,396 | 212,938 | 0.5 |

주: HS코드 2005.90.1000(~2006), 2005.99.1000(2007~) 기준임.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함. (<http://www.bangkokpost.com/learning/learning-from-news/368368/thai-kimchi-thailand-has-pickled-vegetables-too>)

표 3-4. 한국의 대중 김치 수출 현황³⁷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 연도 | 수출 | | |
|------|-------|-------|------|
| | 금액 | 중량 | 평균단가 |
| 2007 | 10.6 | 6.3 | 1.7 |
| 2008 | 125.2 | 45.8 | 2.7 |
| 2009 | 244.8 | 94.3 | 2.6 |
| 2010 | 378.0 | 116.6 | 3.2 |
| 2011 | 234.8 | 60.5 | 3.9 |
| 2012 | 15.4 | 3.5 | 4.4 |
| 2013 | 0.1 | 0.0 | 3.9 |
| 2014 | 16.4 | 2.6 | 6.3 |

주: HS코드 2005.90.1000(~2006), 2005.99.1000(2007~) 기준임.

자료: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중국정부는 한국산 김치에 대해 자국의 가열 처리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 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김치 100g당 30마리 이상의 대장균균 검출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여 왔음. 하지만 2009~2011년도에 한국산 김치 수출량이 조금 늘어나는 듯 했으나 중국의 위생기준으로 인하여 김치 수출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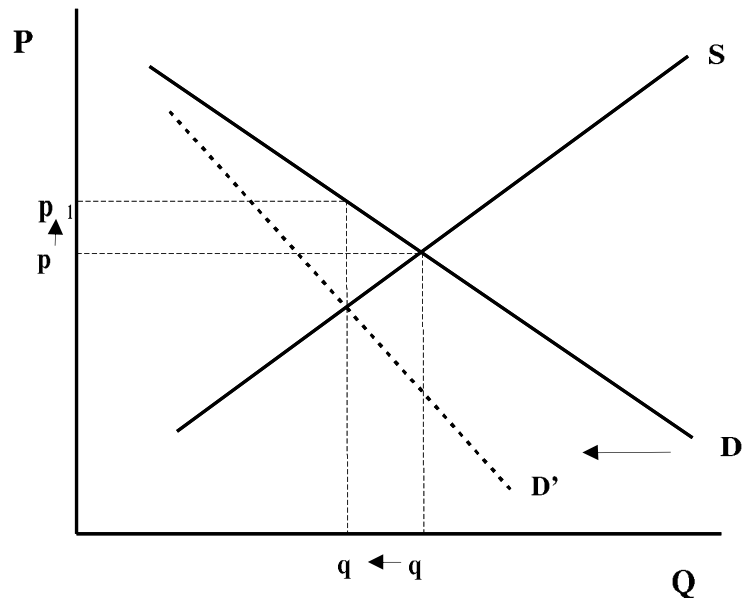
³⁷ <표 3-2>에 제시된 중국의 한국산 김치 수입과 수치가 다른 것은, HS코드의 차이에서 기인함. Worldbank의 무역자료는 김치류(HS 200599)를 적용하여 중국의 한국산 김치 수입을 나타낸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료는 김치(HS 2005991000)를 적용하여 계산했기 때문임.

1.3. 중국의 수입김치류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³⁸

1.3.1. 비관세조치와 수입수요 함수

- 일반적으로 거래농식품의 비관세조치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수요를 감소($D \rightarrow D'$)시켜 수입물량이 줄어드는 것($q_0 \rightarrow q_1$)과 동시에 수입국에서의 가격을 인상($p_0 \rightarrow p_1$)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다만 수입국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생산자 후생이 증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수입수요를 보다 비탄력적으로 만듦으로써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감소시키는 특징을 가짐.

그림 3-1. 농식품 교역 품목의 비관세조치와 수입수요 및 공급



자료: Deardorff and Stern(1998)을 이용하여 제작성.

³⁸ “수입김치류”는 한국의 김치, 중국의 파오차이, 태국의 절임류제품 등 절임류 제품(HS 200599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1.3.2.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가. 분석 모형

- 분석모형은 Kee et al.(2009)이 적용한 수입수요 함수를 활용함. 이는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기존에 추정된 품목별 가격탄성치를 이용하고,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함으로써 비관세조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임.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수입수요함수를 통하여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를 계산할 수 있음.
 - 다만 세부 관세코드인 HS 6단위 기준으로 전 세계 5,000여개 상품을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치류(HS 200599) 단일품목에 대한 전 세계 수입수요 함수를 추정하고자 함. 김태윤 외(2010b)는 단일품목인 철강부문의 수입수요 함수를 추정하고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단일품목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할 것임. 이는 김치류에 대한 전세계 수입량을 파악하여 국가별로 비관세조치의 존재 여부를 포함하여 중력모형에서의 설명변수들이 수입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단일품목의 수입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음.

$$\ln m_c = \alpha_0 + \sum_{k=1}^K \alpha_k C_c^k + \beta_c^{NTM} NTM_c + \epsilon_c \ln(1 + TAR_c) + \mu_c \quad (1)$$

- 여기서, m_c 은 c 수입국에서 김치류 수입량, C_c^k 는 c 수입국의 k 의 설명변수(농업용 토지, 인구, GDP 규모, 섬 지역의 더미 변수 등), NTM_c 는 김치류 수입의 비관세조치 더미 변수, TAR_c 는 관세율, ϵ_c 는 김치류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 μ_c 는 일반적인 오차항을 나타냄. 만약 수입수요가격탄성치가 이미 추정되었다면 (1)식은 다음 (2)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ln m_c - \hat{\epsilon}_c \ln(1 + TAR_c) = \alpha_0 + \sum_{k=1}^K \alpha_k C_c^k + \beta_c^{NTM} NTM_c + \mu_c \quad (2)$$

$$\mu_c \sim i.i.d. N(0, \sigma_c^2), \sigma_c^2 = \sigma^2 \exp(Z_c \gamma)$$

- 이러한 치환과정에서 추정된 가격탄성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차항의 분산이 국별요인에 영향을 받음을 가정함.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 AVE)는 비관세조치의 존재 유무에 따른 해당국 상품가격의 % 변화율을 의미³⁹하며 (3)식과 같이 정리 가능함.

$$AVE = \frac{\partial \ln p^d}{\partial NTM} = \frac{\partial \ln p^d}{\partial \ln m_c} \frac{\partial \ln m_c}{\partial NTM} = \frac{1}{\epsilon_c} \frac{\partial \ln m_c}{\partial NTM} = \frac{1}{\epsilon_c} \frac{m_{c,NTM=1} - m_{c,NTM=0}}{m_{c,NTM=0}} \quad (3)$$

- 첫 번째 등호는 비관세조치의 정의에 따른 항등식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등식은 (2)식(수입수요 함수)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격탄성치의 개념을 포함하여 수식을 일부 조정한 것임. 마지막 등식에서 $\frac{\partial \ln m_c}{\partial NTM}$ 는 비관세조치 유무에 따른 수입량의 % 변화율을 의미함.
- 비관세조치가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이기 때문에 (2) 추정식을 편미분한 값(β_c^{NTM})으로 되지 않고 (3)식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현실에서는 $m_{c,NTM=1}$ 와 $m_{c,NTM=0}$ 를 동시에 관찰하기가 불가능한데, 일례로 중국과 같이 비관세장벽이 있는 국가의 경우 $m_{c,NTM=1}$ 만 알 수 있음. 따라서 (2)식을 추정하게 되면 β_c^{NTM} 값을 알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함.

$$\beta_c^{NTM} = \ln m_{c,NTM=1} - \ln m_{c,NTM=0} = \ln \left(\frac{m_{c,NTM=1} - m_{c,NTM=0}}{m_{c,NTM=0}} + 1 \right) \quad (4)$$

- (4)식의 양변에 지수함수를 취하고 정리하면 다음의 관계를 가지게 됨.

$$\frac{m_{c,NTM=1} - m_{c,NTM=0}}{m_{c,NTM=0}} = \exp(\beta_c^{NTM}) - 1 \quad (5)$$

³⁹ 예를 들어 중국에서 김치가 가격이 100이었는데, 비관세조치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김치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내가격이 120으로 상승했다면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120-100)/100으로 계산되어 0.2 또는 20%가 됨.

- 즉,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는 (2)식을 추정한 후 (3)식에 (5) 추정 값을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가능함.

$$AVE \equiv \frac{\partial \ln p^d}{\partial NTM} = \frac{\exp(\beta_c^{NTM}) - 1}{\epsilon_c} \quad (6)$$

- 한편 (2)식에서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나타내는 추정치(β_c^{NTM})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 변수의 수가 국가 개수만큼 증가하게 됨. 이는 추정해야 하는 변수가 자료보다 많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관세조치의 영향력을 국별로 구분하지 않고 김치류 산업의 특성에 따른 부분(β)과 국별 부존자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β_k^{NTM})으로 구분함. 또한 비관세조치의 영향력이 수입량과 음(-)의 관계를 가지도록 아래와 같은 음의 지수함수를 가정함.

$$\beta_c^{NTM} = -\exp\left(\beta + \sum_{k=1}^K \beta_k^{NTM} C_c^k\right) \quad (7)$$

- 이는 비관세조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가 수입량과 지수관계를 가정하기 때문에 선형방정식이 아닌 비선형(nonlinear) 방정식에 대한 추정을 이용함.⁴⁰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국의 비관세조치가 없었더라면 얼마만큼의 수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수 있음. 실제 중국 김치류의 경우 비관세조치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입량($m_{c,NTM=1}$) 자료는 파악할 수 있지만, 비관세조치가 없는 경우의 수입량($m_{c,NTM=0}$)은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는 값임. 이는 앞의 (5)식을 이용하면 계산 가능함. 즉, 비관세조치가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추정치와 실제 수입량자료를 이용할 경우 비관세조치가 없었을 경우의 수입량을 추정할 수 있음.

$$m_{c,NTM=0} = \frac{m_{c,NTM=1}}{\exp(\beta_c^{NTM})} \quad (8)$$

⁴⁰ 통계프로그램인 SAS의 Proc Nlmixed는 비선형 함수의 추정을 가능케 함.

나. 분석 자료

- 김치류 수입량과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의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인 WITS의 자료를 이용함. 국가별 GDP와 인구 자료는 IMF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국별 농경지면적은 FAO의 통계 자료를 이용함. 또한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는 Kee et al.(2008)에서 계산한 가격탄성치를 적용함. 이러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 43개국⁴¹ 김치류(HS 200599) 수입량 자료와 수출량, 비관세조치 여부, 최혜국 관세율, 수입수요 가격탄성치, GDP 등을 정리한 결과는 <표 3-5>와 같음.

표 3-5. 비관세상당치 추정을 위한 분석자료 요약

| 자료명 | 단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수입량 | 톤 | 18,720 | 53,601 | 11 | 232,783 |
| 수출량 | 톤 | 23,109 | 97,825 | 0 | 646,411 |
| 전기 수입량 증감 | 톤 | 544 | 3,367 | -10,105 | 12,568 |
| 비관세조치 유무 | - | 0.55 | 0.50 | 0 | 1 |
| GDP 가중평균 인근 3개 국가의 비관세조치 유무 | - | 0.64 | 0.38 | 0 | 1 |
| 관세율(MFN) | % | 17.6 | 11.8 | 0 | 60.0 |
| 수입수요 가격탄성치 | - | -1.75 | 1.56 | -6.52 | -0.5 |
| GDP | 10억 달러 | 1,101 | 2,801 | 0.5 | 16,163 |
| 인구 | 백만 명 | 108 | 270 | 0.1 | 1,354 |
| 농경지면적 | 천 ha | 72,260 | 121,026 | 26 | 515,361 |
| 섬 더미 | - | 0.20 | 0.41 | 0 | 1 |

주: 2012년 기준이며, 관측치는 43개임.

⁴¹ 김치류(HS 200599)에 대하여 전 세계 43개국의 제한된 자료를 이용함. 이는 WITS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비관세조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EU의 경우 개별 국가가 아닌 EU 차원에서의 비관세조치로 되어 있어, 이를 국가별로 구분하기 어려움.

1.3.3. 분석결과

- 우선 비관세조치의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 변수인 수출량, 수입량 변화량, GDP로 가중 평균한 인근 3개 국가의 비관세조치를 이용하여 핵만의 1단계를 추정함<표 3-6 참조>.42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GDP로 가중 평균한 인근 3개 국가의 비관세조치는 종속변수인 해당 국가의 비관세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6. 핵만의 1단계 추정 결과(probit 모형): 비관세조치 더미(종속변수)

| 변수(Variables) | 2011년 | | 2012년 | |
|-----------------|----------|--------|-----------|--------|
| | 추정치 | 표준편차 | 추정치 | 표준편차 |
| 상수항 | -0.6523 | 0.4393 | -0.8857** | 0.4424 |
| 수출량/100000 | 0.0004 | 0.0004 | 0.0003 | 0.0003 |
| 수입량 변화량/100000 | -0.0032 | 0.0031 | 0.0049 | 0.0060 |
| GDP 가중 평균 비관세조치 | 1.2613** | 0.5661 | 1.4560** | 0.5742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2: 추정치의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나와 수출량과 수입량 변화량은 100,0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함.

- 이를 이용하여 핵만의 밀(Mill)의 역비율(IMR)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제 변수로 (2)식에 포함함.43 비관세조치와 수입량은 음(-)의 관계를 가정하고 그 효과를 김치류 전반에 대한 부분과 국별 특성에 따른 부분으로 구분함. 이러한 비선형함수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음.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을 기준으로 분석했지만, 이전 연도인 2011년의 경우도 함께 추정하여 검토함. 추정한 결과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로그우도값(-2 log likelihood)과 AIC 및 BIC도 표시함.44

42 도구변수로 활용하기에 수출량과 수입량 변화량은 한계가 있지만, GDP로 가중 평균한 인근 국가의 비관세조치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비관세조치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도구변수로서 보다 적절함(Kee et al., 2009).

43 IMR은 표준정규분포(pdf)와 누적분포(cdf)와의 비율임.

표 3-7. 김치류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결과(2011년, 2012년)

| 추정식 | 변수(Variables) | 2011년 | | 2012년 | |
|--------------------------------------|---------------|------------|---------|------------|---------|
| | | 추정치 | 표준편차 | 추정치 | 표준편차 |
| 평균식 (Mean Equation) | 상수항 | 11.1193*** | 1.0351 | 11.6150*** | 1.3747 |
| | 섬지역 더미 | -0.5004 | 0.4333 | -0.5001 | 0.5132 |
| | ln 인구 | -0.6759*** | 0.1921 | -0.8559*** | 0.2007 |
| | ln 경지면적 | -0.0979 | 0.1282 | -0.2162* | 0.1282 |
| | ln GDP | 1.2386*** | 0.2035 | 1.5868*** | 0.2267 |
| | IMR | 0.5988 | 0.4955 | -0.1822 | 0.6105 |
| | NTM | 상수항 | -0.7389 | 1.0027 | -0.8429 |
| ln GDP | | 0.0604 | 0.1495 | 0.0519 | 0.1552 |
| 분산식 (Variance Equation) | 상수항 | -0.4293 | 1.0474 | 1.4970 | 1.2337 |
| | ln GDP | 0.1084 | 0.1952 | -0.2163 | 0.2314 |
| -2 Log Likelihood | | 128.0 | | 137.6 | |
| AIC(Alkaike's Information Criterion) | | 148.0 | | 157.6 | |
|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 | 165.6 | | 175.2 |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2) n=43

- 우선 김치류 수입량은 국가의 규모(GDP)에 비례함을 알 수 있음. 이는 중력 모형의 특성상 규모가 클수록 교역량이 많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김치류 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인구의 경우 김치류 수입량과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일본, 한국 등의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2012년의 경우 농경지면적과 수입량과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경지면적이 넓을수록 채소류 재배여력이 높아서 김치류에 대한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⁴⁴ 참고로, 로그우도값의 절대치가 클수록 확률적으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보다 극대화한 추정치를 계산한 것임. AIC와 BIC를 통해서 추정된 모델의 상대적인 강건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 이용하는 자료가 동일하다면 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치류 수입에 있어 섬 지역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섬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입과는 반비례를 보이지만, 김치류의 경우 전체 43개 국가 중 섬 지역 국가가 9개이고 이들의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3-8. 중국의 최혜국관세율(MFN)과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비교

단위: %

| 2011년 | | 2012년 | |
|--------|-------------|--------|-------------|
| 최혜국관세율 |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 최혜국관세율 |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
| 25.0 | 13.1 | 25.0 | 11.6 |

- 비관세조치의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전 세계 김치류 수입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별 규모와 인구 등의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국가별 김치류에 대한 가격탄성치에 대한 추정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는 계산이 가능함. 만약 (7)식에서 추정치를 모두 0으로 가정하더라도 음의 지수함수는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를 (6)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양(+)의 관세상당치가 계산됨.⁴⁵ 이는 비관세조치가 수입량과 음의 관계에 있다는 가정과 함께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임.

- 실제 Kee et al.(2008)에서 추정한 중국 김치류의 가격탄성치는 - 4.3 정도로 매우 탄력적인 상황임. 상대적으로 국가의 품목별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가 탄력적일수록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다소 낮게 도출됨. 이를 이용하여 중국의 김치류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계산하면 2011년 약 13.1%, 2012년 약 11.6%의 값이 도출됨<표 3-8 참조>. 최혜국관세율 25%와 탄력적인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를 고려하면 이는 낮지 않은 수치임.⁴⁶

⁴⁵ 관세상당치는 (6)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SAS를 통하여 계산함.

⁴⁶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경우 김치의 관세율은 기존 20%에서 한·중 FTA의 양허안에 따르면 19.8%로 다소 낮아짐.

- (8)식을 통하여 비관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중국의 전 세계로부터의 김치류 수입량을 예측하면 2012년 기준 약 11,452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9> 참조).⁴⁷ 2012년의 실제 김치류 전체 수입량이 약 5,755톤임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은 개별상품에 대하여 비관세조치 존재 유무가 수입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비관세조치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함. 또한 수입국의 해당 비관세조치가 모든 수출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을 둬으로써 일부 수출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비관세 조치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Kee et al.(2009)의 기본 모형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격 자료가 아닌 수입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며(Dean et al, 2009), 수입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상품과 동질적이라는 가정과 추정된 수입수요 탄성치를 이용한 점으로 인해 국별 수입수요의 특성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표 3-9. 비관세조치가 없을 경우 중국의 전 세계 김치류 수입량 추정

단위: 톤

| 2011년 | | 2012년 | |
|-------|-------------------|-------|-------------------|
| 실제수입량 | 비관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수입량 | 실제수입량 | 비관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수입량 |
| 5,552 | 12,660 | 5,755 | 11,452 |

1.4. 시사점

- 중국은 수입되는 김치류에 대한 위생기준을 “자국산 절임채소류”로 적용하

⁴⁷ SAS 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8)식을 계산할 수 있음.

여 분류함으로써 자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함. 동시에 2011년부터는 급증하는 김치류 수입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게 되었고, 2013년에는 오히려 김치류 수입이 감소함.

- 이는 상대적으로 자국의 김치류 생산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중국의 김치류에 대한 위생기준 적용 강화는 “2012년 약 11.6%의 관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만약 이러한 비관세 조치가 없었다면 2012년 전 세계로부터 중국시장으로의 수입량은 약 5,755톤에서 11,452톤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는 국제 협상에서 무역장벽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상대국에게 설명하고 협상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한편, 2012년 기준 중국 김치류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약 4%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중국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김치 시장은 국내 김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한국산 김치가 수출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높음.
-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정부 간 협력은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함. 우선 한국 김치는 국제식품기준(CODEX)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받아들여 한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면 이는 당연히 중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있을 것임. 하지만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혜택보다 중국의 김치 생산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자국의 식품기준을 새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 최근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정부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양자간 비관세장벽에 대해 지속가능한 협력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농식품 부문에서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중국시장 김치 수출증대 파급효과 분석

2.1. 분석 필요성 및 목적

- 농식품 부문의 비관세장벽 해소 및 완화로 인해 농식품 부문의 국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파급효과 계측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 추진을 위한 대응 및 기관 간 협력의 정당성을 보다 확보하여 합리적인 추진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본 분석은 김치 수출증대의 파급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김치 등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 및 완화 추진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김치 수출 확대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를 계측하여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2.2. 분석방법 및 자료

- 김치 수출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공개된 2010년 실측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음. 2010년 실측 산업연관표는 분류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대분류 30부문, 중분류 82부문, 소분류 161부문, 기본부문 384부문에 구성됨.
- 김치는 산업연관표에서 세세분류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기본부문 중 ‘과실 및 채소가공품’ 부문을 사용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는 소분류 중 ‘기타식료품’ 부문을 사용하였음.

표 3-10. 산업연관표의 가공식품 부문분류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본부문 | 주요품목 |
|------|-----|-------------------|-----------------|----------------------------|
| 음식료품 | 식료품 | 육류 및 낙농품 | 도축육 | 쇠고기, 돼지고기, 기타 부산물 등 |
| | | | 가금육 | 닭고기, 기타 가금육 등 |
| | | | 육가공품 | 햄, 베이컨, 소시지 등 |
| | | | 우유 | 우유 |
| | | | 낙농품 | 요구르트, 연유, 분유 등 |
| | | 수산 가공품 | 수산물 가공품 | 김, 어묵, 참치통조림 등 |
| | | | 수산동물 저장품 | 냉동참치, 젓갈류 등 |
| | | 정곡 및 제분 | 정곡 | 쌀, 보리쌀 등 |
| | | | 제분 | 밀가루, 소맥피 등 |
| | | 제당 및 전분 | 원당 | 원당 |
| | | | 정제당 | 정제당 |
| | | | 전분 및 당류 | 옥수수전분, 물엿 등 |
| | | 떡, 과자 및 면류 | 떡, 빵 및 과자류 | 떡, 빵, 초콜릿, 스낵류 등 |
| | | | 면류 | 국수, 당면, 라면 등 |
| | | 조미료 및 유지 |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 고춧가루, 식초, 마요네즈, 장류 등 |
| | | | 유지 | 대두박, 동물성유지, 식물성 유지, 참기름 등 |
| | | 기타 식료품 | 과실 및 채소 가공품 | 김치, 단무지, 과실즙, 채소즙, 주스, 잼 등 |
| | | | 커피 및 차류 | 커피믹스, 원두커피, 녹차, 홍차, 유자차 등 |
| | | |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 홍삼·백삼·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
| | | | 기타 식료품 | 씨리얼, 두부, 냉동만두, 기타 냉동조리식품 등 |
| | 사료 | 사료 | 배합사료, 애완동물 사료 등 | |
| | 음료품 | 주류 | 주정 | 주정 |
| | | | 소주 | 소주 |
| | | | 맥주 | 맥주, 맥아 |
| | | | 기타 주류 | 탁주, 위스키, 약주 등 |
| | | 비알콜 음료 및 얼음 | 비알콜음료 및 얼음 | 콜라, 두유, 과실음료 등 |
| | 담배 | 담배 | 담배 | 담배 |

자료: 2010년 산업연관표(2014), 한국은행.

- 분석하고자 하는 효과는 수입이 국내 생산활동에 따라 유발되는 것으로 내생화하고 산업 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입구조를 반영하고자 경쟁수입형 수입내생모형인 $[I - (I - \hat{m})A]^{-1}$ 모형으로 분석함.
 - 수입계수행렬(\hat{m})을 도출한 뒤 이를 제외한 국내 자급률($I - \hat{m}$)을 각 부문에 곱하기 때문에 $(I - A)^{-1}$ 형에 대응하는 국내산 제품으로만 이루어짐.
- 특정시점에서 외생변수가 변화하였을 때 파급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경상가격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음.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수입이 국내 생산활동에 따라 유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경쟁수입형 수입내생모형으로 사용하였음.
- 본 연구는 중국의 김치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해소로 인해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 가정하였음. 현재까지 중국으로 김치 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그나마 수출이 가장 많았던 2010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김치는 117톤 정도로 정상적으로 수출이 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수출량이 미미함. 과거 중국으로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향후 대중국 수출량을 추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홍콩, 대만으로의 김치 수출량 및 중국의 김치 소비량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함.
- 시나리오 1은 중국으로 김치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단기적으로 홍콩 및 대만으로 수출되는 수준으로 대중국 김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이 5% 확대되는 것으로 설정함.
 - 2014년 우리나라는 대만으로 3백 만 달러(전체 김치 수출액의 3.6%), 1,114톤(전체 김치 수출량의 4.5%)의 김치를 수출하였으며, 홍콩으로는 470만 달러(전체 김치 수출액의 5.6%), 1,229톤(전체 김치 수출량의 5.0%)의 김치를 수출하여 대만과 홍콩의 비중은 전체 김치 수출의 5% 수준임. 단기적으로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대만이나 홍콩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전체 김치 수출의 5% 수준으로 설정함.

- 중국의 4억 가구 중 2%가 연평균 3kg의 김치를 소비할 경우 2.4만 톤이며, 그 중 5%인 1,200톤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김치로 소비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5%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⁴⁸
- 시나리오 2와 3은 중국 내 김치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수입 김치 수출이 25%, 50% 확대되는 것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느끼한 중국 음식과 김치의 조합으로 중국 김치 시장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최근 한-중 FTA가 체결되고 중국 내 한식당과 방한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내 김치 소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에서 한국 김치와 유사 제품이 생산되기도 하고, 한국 김치 제조 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 배추 특유의 육질과 한국에서 생산된 김치를 선호하는 계층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가정함.⁴⁹
 - 중국의 4억 가구 중 5%가 연평균 3kg의 김치를 소비할 경우 6만 톤이며, 그 중 10%인 6,000톤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김치로 소비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25%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의 4억 가구 중 10%가 연평균 3kg의 김치를 소비할 경우 12만 톤이며, 그 중 10%인 1.2만 톤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김치로 소비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50%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⁴⁸ aT(2014)의 ‘중국 내 김치 생산, 유통 및 소비동향’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연간 김치(한국산 김치와 유사한 제품으로 중국의 파오차이와 같은 절임류와 상이) 생산량은 약 30만 톤 수준이며, 중국 내수용은 5~10% 내외로 추정되어 1.5~3만 톤 정도로 추정됨.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1,200여 톤의 김치가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 전체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계산됨.

⁴⁹ aT(2014)에 따르면 중국내 한국계 주요 김치 제조업체로 북경대상식품, 경북궁식품, 송덕식품 등이 있음. 연간 생산량은 북경대상식품은 2,500톤, 경북궁식품은 2,000톤, 송덕식품은 4,000톤이며, 북경대상식품과 경북궁식품은 중국 내수 위주이며, 송덕식품은 20%만 내수 판매하고, 80%는 한국으로 수출함.

- 2010년 기준으로 김치 수출액이 과일 및 채소가공품의 28.4% 정도를 차지하므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할 경우 과일 및 채소가공품 부문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과일 및 채소가공품 부문의 수출은 $1.4\%(0.284 \times 0.05 = 0.014)$, $7.1\% (0.284 \times 0.25 = 0.071)$, $14.2\%(0.284 \times 0.5 = 0.142)$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2010년 기준 과일 및 채소가공품의 수출액(4,006억 원: 2010년 실측치 산업연관표 기준) 대비 김치 수출액(9,836만 달러 \times 1,156.26원/달러=1,137.3억 원: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비중을 계산하면 28.4%로 산출됨.
 -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할 경우 수출액은 56.9억 원, 284.4억 원, 568.9억 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2010년 기준으로 과일 및 채소가공품 수출액은 기타 식료품 수출액의 38.3%를 차지하므로 취업유발효과는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할 경우 기타 식료품 부문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기타 식료품의 수출은 $0.5\%(0.284 \times 0.383 \times 0.05 = 0.005)$, $2.7\%(0.284 \times 0.383 \times 0.25 = 0.027)$, $5.4\%(0.284 \times 0.383 \times 0.5 = 0.05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임.

2.3. 분석 결과

- 과일 및 채소 가공품 산업의 생산이 1단위 발생할 때, 연관 산업의 생산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전체 산업 기준으로 1.12, 농림축산업 기준으로는 0.41, 도소매서비스업에는 0.16인 것으로 분석됨.
 - 과일 및 채소 가공품 산업의 생산이 1원 증가하면 농림축산업 생산이 0.41원 증가, 도소매서비스업은 0.16원 증가하며, 전체 산업에 1.12원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김치의 수출증대가 전체 산업 및 농림축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하였을 때 국내 전체 산업 생산유발액은 각각 122억 원, 610억 원, 1,220억 원(122~1,202억 원), 농림축산업에는 24억 원, 119억 원, 238억 원(24~238억 원)일 것으로 예상됨.⁵⁰
-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할 경우 국내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2억 원, 211억 원, 422억 원(42~422억 원), 농림축산업에는 13억 원, 64억 원, 129억 원(13~129억 원)으로 예상됨.
 - 과일 및 채소 가공품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6.2% 수준으로 타 부문 대비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⁵¹
-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할 경우 국내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6명, 682명, 1,365명(136~1,365명)으로 예측되며, 농림축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54명, 271명, 543명(54~543명)으로 산출됨.

표 3-11. 중국 김치 수출증대 시나리오별 국내산업 파급효과 분석

단위: 십억 원, 명

| 구분 | 시나리오 1 : 전체 수출 5% 증가 | | 시나리오 2 : 전체 수출 25% 증가 | | 시나리오 3 : 전체 수출 50% 증가 | |
|----------|-------------------------|-------|--------------------------|-------|--------------------------|-------|
| | 전 산업 | 농림축산업 | 전 산업 | 농림축산업 | 전 산업 | 농림축산업 |
| 생산유발효과 | 12.2 | 2.4 | 61.0 | 11.9 | 122.0 | 23.8 |
| 부가가치유발효과 | 4.2 | 1.3 | 21.1 | 6.4 | 42.2 | 12.9 |
| 취업유발효과 | 136 | 54 | 682 | 271 | 1,365 | 543 |

주: 2010년 기준 김치는 과일 및 채소가공품 수출액의 28% 수준, 기타 식료품 수출액의 10.9% 수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관분석 결과(2014.12).

⁵⁰ 농림축산업은 대분류인 농림수산업에서 수산물을 제외한 것으로 중분류의 작물, 축산물, 임산물, 농림어업서비스를 포함하며 가공식품은 포함되지 않음.

⁵¹ 2010 산업연관표 기준 전 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37.6%, 농림어업 53.3%, 광업 56.2%, 제조업 23.6% 등으로 나타남(한국은행, 2014b).

2.4. 시사점

- 중국의 김치 비관세장벽이 해소 및 완화되어 국내산 김치 수출이 증대될 경우 국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분석 결과 중국 시장 김치 수출 초기 단계에는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인들의 한국 김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경우에는 국내 산업 및 농림축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중국의 김치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해소(또는 완화)됨으로써 사회문화 전파 효과 등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중국에서 김치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중국에서 김치뿐만 아니라 한식에 대한 수요의 저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식에 필요한 식재료 수출 증대 등으로 더욱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음.
- 최근 한국과 중국의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양국 정상에 의견을 모았으므로 중국 시장으로 김치 수출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중국 시장에 대한 김치 수출뿐만 아니라 최근 FTA 체결이 확대되는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이러한 품목들의 비관세조치 요인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내 산업 및 농축산업 부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제 4 장

비관세장벽 관련기관별 역할 개선방안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무역자유화 진전으로 인해 농식품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검역·통관 등 비관세장벽(조치)이 강화되는 추세는 농식품 수출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각 국가들은 검역·위생 및 식품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 수출국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WTO의 회원국의 비관세장벽 통보건수('13년)는 3,986건(식품안전 867, 동물보호 249, 식물보호 234, 질병·해충으로부터 동·식물·영토보호 1,010, 기술무역장벽 1,626)이며, 한국 농식품 관련은 총 961건임(<http://maps.or.kr>).
- 농식품 수출업체는 비관세장벽(조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실제 관련 정보는 관련 기관 운영 사이트 등에 다수 존재하지만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거나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관련된 정보들의 내용이나 용어가 난해하여 제공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출업체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개별기업 또는

대표 수출조직이 기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 관련기관의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aT나 KOTRA 등)가 수요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비관세장벽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성별로 통관 규정이 달라서 특정 품목의 경우 특정 항구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는 WTO에 통보되고 있으나 업체들은 그런 정보를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 대만 수출시장으로 사과를 수출할 때 검역 단계에서 특정 농약사용이 문제가 되어 통관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관련 업계에 관련 정보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러한 사례처럼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애로사항은 수출 시 통관 및 검역과 관련되는 문제임.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처럼 현지 식약청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과도하게 많거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 이로 인해 제품이 적시에 통관을 못하게 되는 경우 상품성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음.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비관세장벽에 대해 관련기관별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진 중인 SPS 협상이 무엇인지, 협상은 몇 단계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SPS, 한·EU SPS 관련 협의 일정을 알려줌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각 국가의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협업·역할 분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수산물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시장으로 식물방역법상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외국의 검역해제조치 진행단계는 몇 단계인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병해충위험평가(PRA) 진행단계에서 총 8단계 중 현재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만으로도 업계에서 대응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본 장은 비관세장벽 대응 관련기관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별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관련기관 간 업무내용 수집,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협력방안을 제시함.

2. 관련기관별 비관세장벽 업무 현황 및 실태

2.1. 농림축산식품부

2.1.1. 비관세장벽 정보 수집⁵²

- 현재 국내의 농식품 수출관련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수집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수출진흥과 등에서 WTO 통보사항,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조사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하는 체계임.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는 농식품 관련 WTO SPS/TBT 변경 통보문을 번역

⁵² 각 기관별 비관세장벽 관련 업무는 각 관련기관 제출 자료, 업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하여 메일 및 ‘농식품 SPS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있음.

- SPS 지원 서비스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관계기관에 WTO 통보문(원본·번역본)을 게시·전파하기 위해 홈페이지(관계기관만 열람 가능)를 운영하는 것임.
-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WTO의 SPS, TBT 위원회 통보문을 참고하여 국제기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며, 한국산 식품 부적합 통보가 오면 국내 기준 적합도 및 국제 기준 적합도 여부를 확인하고 비관세장벽 여부를 판단함.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는 다양한 수출관련 기관·조직·업체를 통해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시로 수집하고 있음.
 - aT, 품목별 수출개척팀(딸기, 인삼 등 6개), 수출선도조직(배, 화훼 등 15개), 수출농협(대동농협, 가야농협 등 연 300만불 이상 수출농협 18개) 등임.

2.1.2. 비관세장벽 해소 체계

-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관련 수출애로사항은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전달되고,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협의체(수출개척협의회, 수출개척T/F) 안건으로 상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구조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범부처 차원의 「민·관 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있음.
 - “농수산물 수출개척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지자체, KREI, aT·KOTRA, 대한상의, 농림단체장, 생산·수출업체, 물류·통관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됨.

- 하위 조직으로 관계부처 “농수산식품 수출개척 TF”를 두어 협의회 의결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함.
- 수출개척협의회 안전 상정 여부, 기존 안전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2014년 2월부터 관계부처 TF인 “농수산식품 수출개척 TF”를 운영 중에 있음. 농수산식품 수출개척 TF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안전별 주관부처에서 추진계획·이행실적을 TF 회의에 보고하고, 문제점 검토 및 추가안전을 발굴함.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팀장을 수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이 반장, 관계부처 과장급을 팀원으로 하여 안전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안전별 사항을 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도출되는 과제를 점검하여 ‘수출개척협의회 안전’ 상정 여부를 검토함.
-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는 미국과 EU의 경우 FTA로 인한 SPS, TBT 위원회를 활용하고, 연례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음. 그 밖에 중국의 경우 기관별로 운영 중인 국장급 협의체를 이용하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함.

2.1.3. 온라인시스템 운영

- 국가별·품목별 농수산식품 수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aT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음.
 - 게시내용은 주요 검역·통관제도 관련 동향, 수출입·생산·유통·가격·소비 동향 등임.
 - 국가별·품목별 식물 검역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사례는 KATI에 게시하여 수출농가·업체에 전파하고 있음.
 - 수출에 필요한 농약·식품첨가물 사용 지침 등 검역·통관·안전성 정보를 제공함.

- 해외시장 정보조사 결과는 업데이트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통관·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도 게시함. 하지만 현재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

- 정부부처·유관기관 등 정부위원(당연직)과 농어업인단체장·학계 등 민간위원(위촉직) 등 총 24명으로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위원장직 수행
 -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수출업체나 농가, 민간전문가 등을 수시로 위촉

○ 수출개척협의회 위원 구성(24명)

- 정부(9)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관세청(청장), 지자체(전남고흥 군수), KREI(원장), aT·KOTRA(사장)
- 민간(15) : 농림축수산인 단체장(4), 대한상공회의소(1), 생산·수출 업체 등(6), 물류·통관 전문가(3), 학계(1)
- 4차 협의회(12.12)시 정부위원 추가 위촉 계획 : 기재부(차관), 외교부(차관), 농촌진흥청·중기청(청장), 중진공(이사장), 무역협회(부회장) 등 7명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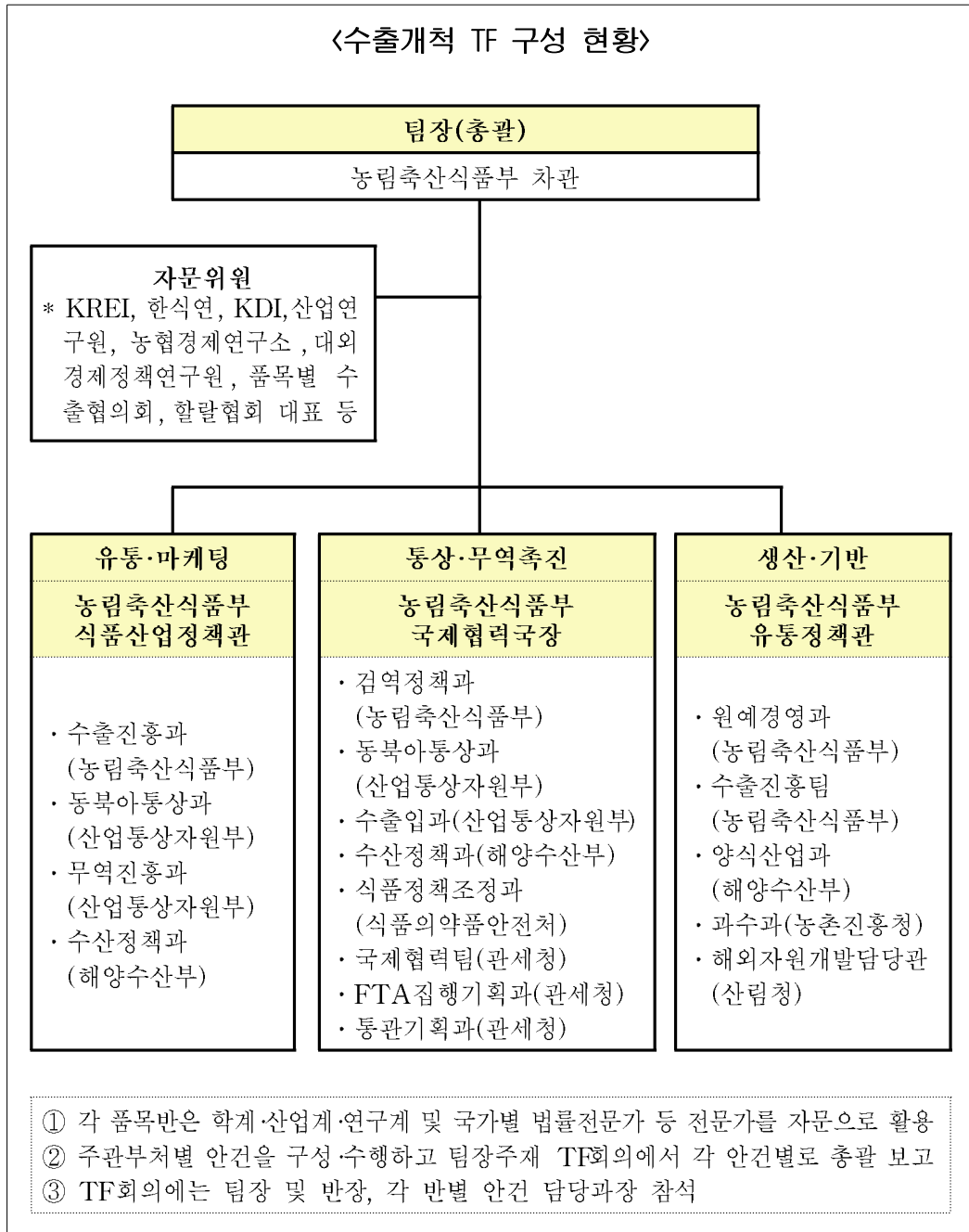
- 1차 협의회(2014.1월) 15개 과제 발굴, 분기별 회의 개최로 과제 이행상황 점검 (2014.7월/9월, 3개 완료·12개 정상추진 중)
- 협의회 하위 조직으로 관계부처 ‘수출개척 TF’를 두어 협의회 의결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2014.12.12)

〈 농수산물식품 수출개척 TF 구성 및 운영 〉

- (구성)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이행을 위해 ‘수출개척 TF’ 구성(2014.2월)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팀장을 수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이 반장, 관계부처 과장급을 팀원으로 하여 안전별 이행 추진
 - * 수출개척 TF 분과반 구성(안) : ① 유통·마케팅, ② 무역통상, ③ 생산기반
 - 분기별 개최 원칙, 안전 진행상황은 수출개척협의회에 보고

- (운영) 안전별로 주관부처에서 추진계획·이행실적을 TF 회의에 보고하고, 문제점 검토 및 추가안건 발굴
 - 안전별 완료 시점을 확실히 하고 관계기관·업계·학계·전문가 집단 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
 - 이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도출되는 과제를 점검하여 수출개척협의회 안전으로 검토
 - 수출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는 전담창구 개설(aT 수출애로상담실)
 -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과제는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 홍보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2014.12.12)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홈페이지 >



http://webzine.kati.net/8088/

자료: www.kati.net.

2.2. 해양수산부

2.2.1. 추진 현황

- 해양수산부는 주로 국가별 검역·검사·통관 위주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
 - 주요 대응 주체는 수출협의회(김·굴·넙치·해삼)와 수출선도조직(김·굴·전복·넙치)임.
 - 주요 지원내용은 품목별 성분분석 및 수출 안전성 조사연구를 통한 위생·안전관리 제고, 중금속, 세균 등 유해성분 분석 및 제조공장 용수 검사비 지원, 생산 및 제조단계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연구를 통해 품목별 안전성 입증 등임.
 - 품목별 국제인증 취득 지원 및 FTA 원산지 증명관리로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인증(Halal, GOST, USDA Organic 등) 취득을 지원하고, 진단·분석·컨설팅·담당자교육 및 원산지관리프로그램 관리를 대행함.
 - 국가별 맞춤형(중국) 수출 수산식품 통관지원 사업 추진: 중국 관련법규(규정)에 부합하는 통관업무 지원을 위해 중문라벨 제작·등록, 수출자 등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기관(수산무역협회, aT)과 품목별 회원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요청함.

2.1.2. 향후 추진방향

-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기조에 부응하여 수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발굴에서부터 해소 단계까지 적극적·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기존에 구축된 각종 통상 관련 민관 협의 채널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비관세장벽 신고 확대를 도모함.

-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13.9)의 일환으로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축한 각종 협의회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
- 민간·통상·국외채널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굴·해소된 사례를 DB화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지원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음.

2.3.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식품위생·안전성 관련 현장어로 사항을 수집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산업계·협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위생기준국제조화사업단, 수출식품안전성인증사업단)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수출식품 지원 정보방’ 게시판),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수출국별 수입식품 기준·규격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WTO의 SPS, TBT 위원회 통보문을 참고하여 국제 기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며, 한국산 식품 부적합 통보가 오면 국내 기준 적합도 및 국제 기준 적합도 여부를 확인하고 비관세장벽 여부를 판단함.
-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는 미국과 EU의 경우 FTA로 인한 SPS, TBT 위원회를 활용하고, 연례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음. 그 밖에 중국의 경우 기관별로 운영 중인 국장급 협의회를 이용하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함.

2.4. 관세청

- 관세청은 전화, email, 웹사이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민간 수출업체 등은 비관세장벽(조치) 관련 사항들을 「해외통관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음.
 - 민간 수출업체는 통관 애로사항 등을 해외주재 관세관(7개국 10명)에게 직접 전화, email 또는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해외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현지 통관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관세관 파견지역: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상해·홍콩), EU(브뤼셀),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 민간 수출업체는 통관 애로사항 등을 전국 6개 본부세관의 「YES FTA 센터」로 전화, email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주로 FTA 활용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서 품목분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세관당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해소·지원하고 있음.
 -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음.
- 관세청은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내 해외통관지원단을 통해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하고, 통관해소 사례는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함.
 - 해외통관지원단: 관세청 차장(단장), 관세청 국장급(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함.
 - 국제협력팀장이 주관하고 해외통관 애로 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해외통관지원단실무협의회」에서 추진내역을 점검하고 정보를 교환함.

- 중요 교역국이나 신흥국에 대한 통관 애로사항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요 해외통관애로에 대하여는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함.
 - 미국·중국·일본·홍콩·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EU 등 해외주재 관세관의 협력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외국 관세청과 직접 접촉하거나 주한외국공관 주재관, 세계 주요 30개국과 체결된 세관상호지원협정 활용하는 등 대외 관세협력창구를 활용함.
 - 주요 교역상대국과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 AEO MRA 현황('14. 7월) : 미국·싱가포르·캐나다·일본·뉴질랜드·중국·홍콩·멕시코·터키 등 9개국
 - 해외통관애로와 관련하여 부처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함.
-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해소율은 90%를 상회하고, 기업비용 절감액은 연간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는 2,145억 원 수준임.
- 관세청으로 접수되는 통관 애로사항 중 농식품 관련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으로 농식품 부문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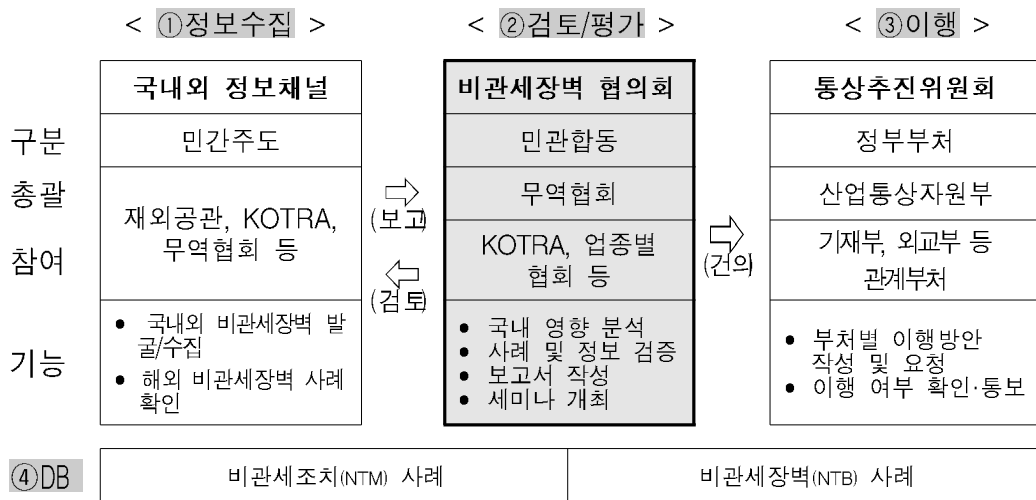
표 4-1. 해외통관애로 해소 활동 현황

| 구 분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10월 |
|----------|-------|-------|-------|-------|--------|----------|
| 통관 애로 | 접수건수 | 363 | 376 | 388 | 395 | 332 |
| | 해소건수 | 323 | 339 | 353 | 356 | 308 |
| | 해 소 율 | 89% | 90.1% | 90.9% | 90.1% | 92.8% |
| 기업비용 절감액 | | 342억 | 892억 | 936억 | 2,145억 | 400억 |

2.5.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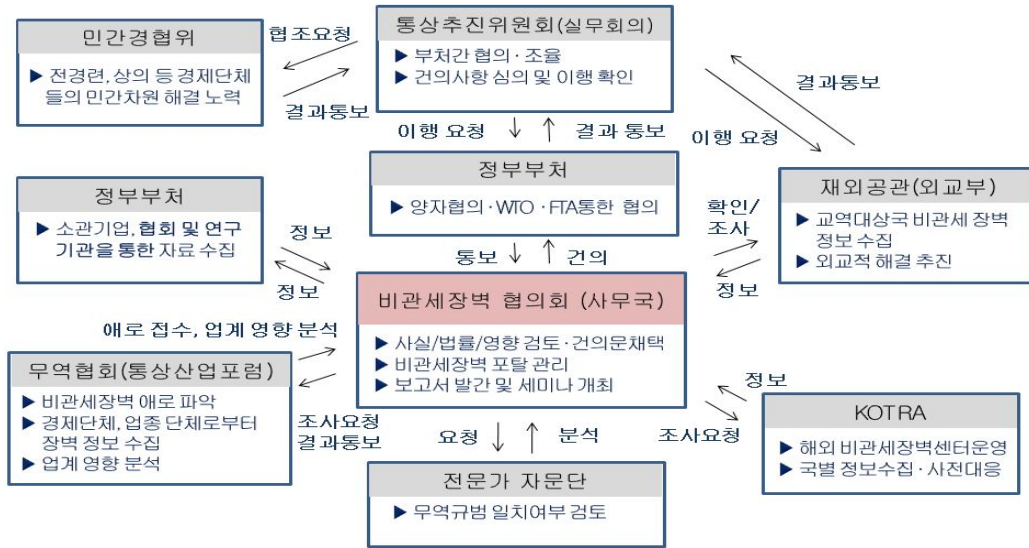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등 국내외 채널을 통하여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발굴 및 수집하고 있음.
 - 비관세장벽으로 확인된 사례는 무역협회가 주관하고 KOTRA와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는 비관세장벽 협의회에 보고하여 국내 영향 분석, 사례 및 정보 검증, 세미나 개최 등을 거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기재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해결을 위한 이행방안을 요청, 확인함.

그림 4-1.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업무 수행 절차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2014.12.12).

그림 4-2.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관세장벽 사례 처리절차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2014.12.12).

3.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개선방안

3.1. 현황 및 추진 경과⁵³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비관세장벽협의회는 국가적인 수출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며, 농식품 수출부문의 실제 기능은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농식품 검역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음.
 -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 애로도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중요한 안전일 경우에는 협의회 안전에 올려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함.

⁵³ 농식품부 내부자료(2014.12.12)를 참고하여 작성함.

- 제3차 농수산물식품 수출개척협의회에 ‘농수산물식품 SPS 변동에 대응한 수출 추진체계 구축안(안)’을 보고(2014.9.23)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자 회의(2014.12.2) 및 기관별 의견 수렴(2014.12.2~12.10)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음.
 - SPS 조치·수출현장 애로 등은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하에 해소하고, SPS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DB화시키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관련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촌진흥청, aT, KOTRA, 무역협회, KREI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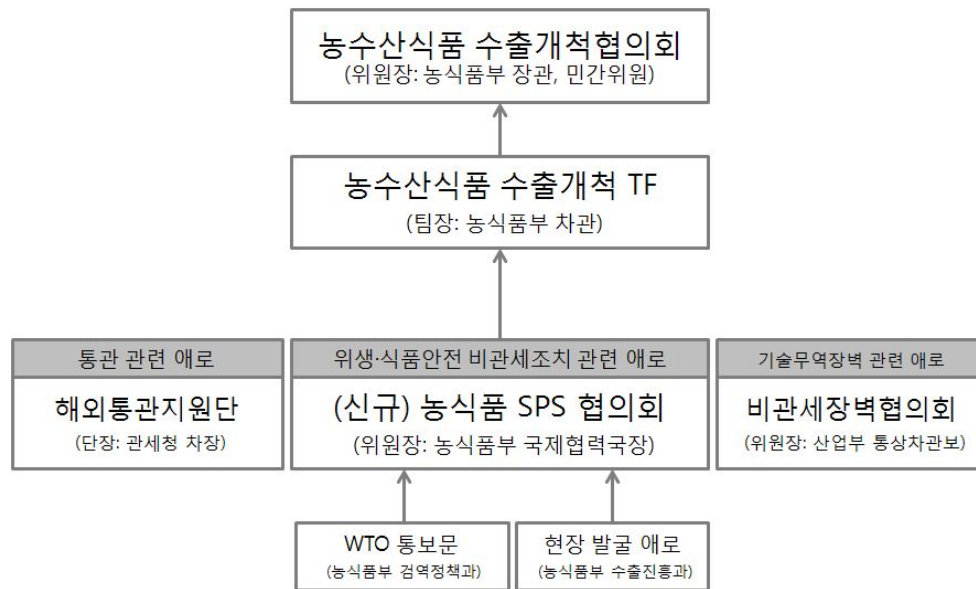
3.2. 개선 방안⁵⁴

3.2.1. 농식품 비관세장벽 해소 체계 구축

-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은 분야별 관련기관이 운영 중인 협의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SPS 및 통관 관련 애로는 비관세장벽(NTB)에 해당되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별도 협의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식품 분야 기술무역장벽 관련 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비관세장벽협의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에 상정 요청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통관과 관련되는 애로 사항은 관세청 주관 ‘해외통관지원단(단장: 관세청 차장)’에 전달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함.

⁵⁴ 본 개선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와 협의하여 관련기관 전문가회의 개최 등의 결과 및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4-3. 농식품 비관세장벽 해소체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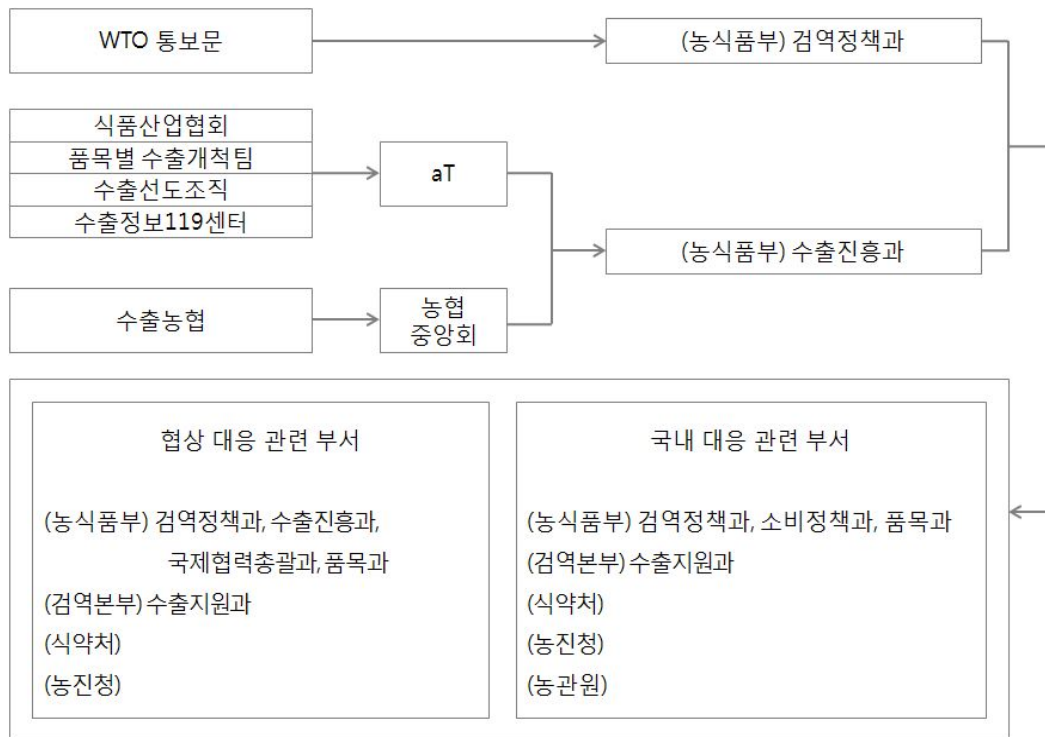
- 위생·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조치 관련 수출 애로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SPS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SPS 문제에 대응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함<그림 4-3 참조>.
 - 관계기관에 전달된 SPS 문제에 대한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 단일기관에서 대응이 어려운 문제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도모함.
 - 농식품 SPS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과 및 관련기관 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함.
- 각 협의체의 농수산물 비관세장벽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범부처 수출개척 TF에서 정보를 공유함.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민관합동 ‘농수산물 수출개척협의회(정부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협의하고, 그 밖에 ‘국가간 관세청장회의(관세청)’, ‘기관간 협의체(식품의약품안전처)’, ‘FTA·WTO 협상(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양자·다자회의(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의제로 우선 반영할 수 있어야 함.

3.2.2. 농식품 관련기관 역할 재정립

가. 수출국 비관세장벽 대응 협상 추진 체계

- 농수산물식품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은 관계기관 고유 업무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역, 식품 위생기준, 농약 안전기준 등 분야별로 분담하여 추진함.
 - 동·축산물 검역 협상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식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에서 총괄함.
 - 식품 위생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상 총괄을 맡되, 삼계탕·생우유 등 도축·집유과정이 포함된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가 총괄함.
 - 농약 안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협상 총괄을 담당하며 컨텐츠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함.

그림 4-4. 농식품 비관세장벽 관련 관계기관별 역할 체계



주: 각 기관은 발굴된 비관세장벽에 대한 추진상황 처리계획을 온라인 시스템에 이력관리카드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관세장벽 협상 지원 업무는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내 대응, 협상 진행, 품목 담당 등 관계 기관별로 분담함.
 - 국내 대응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관련 과 및 관련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지원함.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서 협상 일정 등을 총괄하여 협상을 진행함.
 - 품목별로는 담당 부서 농가·업계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 관련 의견을 제시함.

나. 비관세장벽 현황 조사 및 전달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서 농수산물 관련 WTO SPS/TBT 변경 통보문 등을 번역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대상 품목·대응 필요성 등을 분석, ‘농식품 SPS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전달함.
 - SPS 관련 통보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모니터링하여 해외식품기준과 가급적 일치시켜야 함. 외국에서 새로운 식품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기준 제정에도 참고하여 정부 및 업계로 관련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WTO SPS/TBT 변경 통보문이나 관련 결과 보고서는 KATI(농수산물 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수출현장 애로 사항은 수출진흥과에서 분석(일반분석)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 주관 협의체를 지정함.
 - aT에서 관련 협회·품목별 수출개척팀·수출 선도조직·수출농협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밖에 통합무역정보서비스(산업통상자원부), 비관세장벽포털(무역협회), 글로벌윈도우(코트라) 등 유관기관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 파악함.

다.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각 국의 SPS·TBT 등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동향 정보를 DB화하여 KATI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농가·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도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함.
 - ‘농식품 SPS 지원 서비스’를 KATI와 연계하고, 각 사업 담당자가 KATI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ID)을 부여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례 >

- 국가간 공식채널로 신청
- 위험분석자료 첨부
- 상대국 제공자료 조사 확인
- 병해충 목록 작성
- 추가검토 대상종 선별
- 우려병해충 선별
- 유입정확확산 가능성/경제적 영향 평가
- 관리방안 요구 대상종 선별
- 관리방안 검토
- 소독처리방법 등
- 20일간(필요시 연장)
- 인터넷 등 이용
- 농림수산물품부에 고시 의뢰
- 관보게재

1단계 접수(Filing)

- 접수 결과
- 자료보완 요구(필요시)

2단계 착수(Initiation)

- 착수 결과
- 추가자료 요구(필요시)

3단계 병해충예비위험평가 (Pest Categorization)

- 평가 결과
- 추가자료 요구(필요시)

4단계 개별병해충위험평가 (Pest Risk Assessment)

- 평가 결과
- 관리방안 요구(필요시)

5단계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 (Pest Risk Management)

- 관리방안 협의
- 추가자료 요구(필요시)

6단계 수입허용요건초안작성 (Drafting)

- 요건안 협의

7단계 고시 의뢰 및 입안예고 (Public Notice)

8단계 고시 및 수입허용 (Notification & Enforcement)

수입금지식품 병해충 위험분석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 농림수산물검역본부의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세요.
 ※ 검색하고자 하는 국가명(대륙별로 해당 국가 선택)을 선택하거나 식물명(학명, 한글명, 영문명) 또는 품목명(한글명)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 각 항목별 검색버튼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가 및 지역선택: 중국

식물명 선택: 한양

품목 선택:

검색결과 10 국가별 오름차순

| 국가 | 품목 | 식물명(학명) | 식물영명 | 세부진행상황 |
|----|-------|---------------------------------|-------------------------|--------|
| 중국 | 여지 | Litchi chinensis Sonn. | litchee, litch, litchee | 관리방안평가 |
| 중국 | 사과 | Malus domestica Borkh. | apple | 접수 |
| 중국 | 물간 | Euphoria longana Lam. | longan | 접수 |
| 중국 | 소나무각재 | Pinus sp. | pine | 접수 |
| 중국 | 배 | Pyrus pyrifolia (Burm f.) Nakai | | 접수 |
| 중국 | 호박 | Cucurbita maxima Duch. | giant pumpkin | 작성 |

자료: www.qia.or.kr

- KATI를 중심으로 통합무역정보서비스(산업통상자원부), 비관세장벽포털(무역협회), 글로벌윈도우(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정보제공 온라인 서비스와 비관세장벽 DB도 연동시켜, 수출농가·업체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시킴.
- 온라인시스템은 비관세조치 사례,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의 해결 사례, 식물검역 해제 협상 관련 절차 및 추진 단계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제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관련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대응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라. 농가·수출업체 대상 교육·홍보

- 기관 고유 업무와 전문성, 현장과의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 식품위생기준, 농약 안전기준 등 분담하여 개정된 기준 등에 대해 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
 - 동식물 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에서 총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품목 담당부서는 수출농가·업체 등 대상 수출국별 변경된 검역 규정 교육 등을 담당함.
 - 식품 위생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하되, 축산물 위생기준(농장 HACCP)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함.
 - 농약 안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에서 총괄하고, 농촌진흥청은 수출 농산물에 대한 농약사용지침 제정 및 농가·수출업체 대상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촌진흥청의 농약사용지침에 따라 농산물 수출농가 안전관리 현장 지도 등 컨설팅을 지원함.⁵⁵

⁵⁵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은 분청, 본원의 예산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내수용인 일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교육예산은 지원되지만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수출농산물의 경우 예산을 확보되어야 함.

4. 시사점

-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에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식품 SPS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수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비관세장벽 협의회’에 상정 요청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비관세장벽 실태와 관련 정보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식품 SPS 및 비관세장벽 현황과 관계기관 대응상황을 수출농가 및 업체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수출농가·업체들은 동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심 품목·국가의 비관세장벽 현황·대응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효과적인 수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농식품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내용 및 외국의 개정된 기준 등에 대해 농가 및 수출업체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제 5 장

비관세장벽 대응 및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 우리나라는 11개의 FTA(50개 국가)가 발효(2015.1.1. 기준)된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해 관세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비관세조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어 FTA 추진과 함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식품 수출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비관세장벽 트렌드 대응 강화전략, 비관세장벽 대응 부처별·기관별 연계강화, 국제협상 과정의 비관세 조치 항목 구체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최근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권역별 또는 국가별 비관세장벽이 상이하므로 수출시장별 대응 전략이 필요함. 중국 수출에서 한국 기업이 직면한 비관세조치는 대부분 SPS와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수출에서는 대부분 기술 규제(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품목 유형별로는 신선, 일반가공식품, 전통가공식품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사례가 존재함.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관련 비관세조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 비관세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 국가들의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증대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관계기관 간 협업·역할 분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장벽 대응 관련기관별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 효과적으로 기관별 협력이 필요함.
-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WTO에 제소하거나 국제 협상을 통해 대응하는 정도가 가능함. 그 외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비관세조치는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비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FTA 협상 시 비관세조치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비관세장벽 트렌드 대응 강화

2.1. 국내 대응 방향

- 비관세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를 점검하고 검토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수출 관련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 지원해주거나 민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별, 품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함.
 - 예를 들어, 식품 성분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명확히 구분지어 식품인지, 첨가물인지 구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지 등 애매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음.
-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들은 WTO SPS/TBT 변경 통보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농수산 식품과 관련된 WTO 통보문을 번역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정보를 재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각 국의 SPS·TBT 등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동향 정보를 DB화하여 KATI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농가·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도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고유 업무와 전문성, 현장과의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 식품 위생기준, 농약 안전기준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개정된 기준 등에 대해 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 WTO 통보문 외에도 주요 수출국 및 신흥 수출국 관련 정보 및 수출 애로사항,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재 aT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김의 경우 산패를 감소시키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기술, 한국산 김치 상품화 기술 및 할랄 식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고추장 등 장류의 자연 발생 알코올 성분 및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⁵⁶

2.2. 수출시장 권역별·국가별 대응 차별화

- 중국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국내 기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 이러한 법규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비관세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⁵⁶ 산패란 유지를 공기 중에 방치하여 두면, 공기 중의 산소, 빛, 열, 세균, 수분 등의 작용에 의하여 서서히 악화하여 색깔이 변하고, 불쾌한 냄새가 생기며, 맛이 나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함(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14746&cid=50314&categoryId=50314>).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정부는 통관 거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통관 거부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기업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중국은 위생 및 검역제도(SPS), 무역상 기술장벽(TBT), 통관절차 관련 비관세장벽이 많아 개선이 필요함. 특히, 김치, 축산가공식품 수입 제한 해제, 과도한 증명서 및 검역 기준 요구 완화, 일관성있는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함.
 - 과도한 위생증명서 발급 및 검역 기준을 요구하거나, 열처리된 축산가공식품 수입을 규제함. 지역별로 통관 및 라벨링 규정이 상이하거나 담당자의 재량이 남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나 최근 한국과 중국의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양국 정상에 의견을 모았으므로 중국 시장으로 김치 수출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중국은 조류독감을 이유로 가금육 및 관련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데 조류 독감균은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살균시킬 경우 파괴되어 삼계탕 제품에는 조류 독감균이 생존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도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는 등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주요 통관 보류 및 역류 사례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산동 지역과 일반 가공식품(음료, 과자류, 유제품) 중심으로 통관 장애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 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성분 기준치 초과, 서류 불합격 등의 사유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기업 측에서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할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 및 생산-가공-포장-저장-유통 등 전 과정의 할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할랄 파크 조성, 할랄 관련 푸드쇼 홍보 및 지원, 할랄 인증에 대한 관리, 할랄 시장 관련 전문가 양성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는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등록 및 등록번호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상 등록기간이 2개월 소요되나 실제로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인도네시아와 협상 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는 사과·포도·귤·참외·장류·김·미역·양파, 감자, 파, 마늘 등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과 미역 등은 인도네시아에 생산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품목으로 향후 한국·인도네시아 협상 시 장류, 김, 미역 등은 쿼터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Tanjung Priok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함.

3. 비관세장벽 대응 부처별·기관별 연계 강화

-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으로 농식품 비관세장벽 해소 체계 구축, 농식품 관련기관 역할을 재정립하였음. 특히 수출국 비관세장벽 대응 협상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함.
-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체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위생·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조치 관련 수출 애로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SPS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SPS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민관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정부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협의하고, 그 밖에 ‘국가간 관세청장회의(관세청)’, ‘기관간 협의체(식품의약품안전처)’, ‘FTA·WTO 협상(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양자·다자회의(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의제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농식품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은 관계기관 고유 업무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역, 식품 위생기준, 농약 안전기준 등 분야별로 분담하여 추진함. 비관세장벽 협상 지원 업무는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내 대응, 협상 진행, 품목 담당 등 관계 기관별로 분담함.
 - 국내 대응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관련 과 및 관련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지원함.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서 협상 일정 등을 총괄하여 협상을 진행함.
 - 품목별로는 담당 부서 농가·업계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 관련 의견을 제시함.

4. 국제협상의 비관세조치 항목 구체화

- 기 타결된 FTA는 관세하락에 집중하여 관세 외에 연구 및 논의가 부족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현재 추진 중인 FTA는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기 타결된 FTA의 경우에도 운영되는 위원회 및 작업반을 통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⁵⁷
 - FTA 추진 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 및 조사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세부적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관세조치에 대한 영향 분석 모형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비관세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 모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로 모형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모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합의되지 않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문 및 ASEAN 개별 국가들과의 FTA 후속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다른 나라의 비관세조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입장에서 비관세장벽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줘야 하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음.
-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정부 간 협력은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함. 정부 간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교적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공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전략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임.

⁵⁷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되어(2014.11.27) 통관 간소화가 기대되는 등 무역장벽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비관세장벽 실태 및 개선방안

- 최근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권역별 또는 국가별 비관세장벽이 상이하므로 수출 시장별로 대응을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짐. 국가적으로 비관세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농식품과 관련된 WTO 통보문에 대한 정보 및 주요 수출국 및 신흥 수출국 관련 정보 및 수출 애로사항,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해야 함.
 - 정부는 통관 거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관련 업체 간에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통관 거부 유형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기업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비관세조치 및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서 핫라인을 개설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 입장에서 농식품 관련 비관세조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한국 기업이 중국 수출에서 직면한 비관세조치는 대부분 SPS와 관련된 사항임. 중국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국내 기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 이러한 법규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으로의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품목은 생우유, 삼계탕이 대표적임.
 - 품목 유형별로는 신선, 일반가공식품, 전통가공식품 등 전반적으로 비관세장벽 사례가 존재함.
-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시장 수출의 비관세장벽 사례는 대부분 기술 규제(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비관세조치의 주요 품목 유형은 자국기업의 이해 관계가 가공식품임.
 -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관세할당, 내국세, 허가제 민감 품목의 수입금지, 국영무역, 기술 규제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조치는 기술규제임.
-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조치는 품질 기준, 수입 허가제(import licensing), 수입 쿼터제, 표시제(labeling) 등으로 볼 수 있음.
 -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등록 및 등록번호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인도네시아와 협상 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김과 미역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품목으로 향후 한국·인도네시아 협상 시 장류, 김, 미역 등은 쿼터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할랄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 및 생산-가공-포장-저장-유통 등 전 과정의 할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할랄과정은 ‘생산-가격책정-유통-광고-소비’ 등 모든 과정에 샤리아에 부합해야 하며, 가공된 제품·식품은 모두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 및 생산-가공-포장-저장-유통 등 전 과정의 할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할랄 단지 조성을 통해 할랄 제품 생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식품 클러스터 단지에 할랄단지 조성을 고려하고, 국내 할랄 식품 및 식당을 파악할 수 있는 할랄 앱 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할랄 관련 푸드쇼 홍보 및 지원, 할랄 인증에 대한 관리, 할랄 시장 관련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2. 농식품 비관세조치 경제효과 분석

- 농식품 비관세조치의 경제효과 분석은 Kee et al.(2009)이 적용한 수입수요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김치류(HS 200599) 단일품목의 전 세계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를 계산함.
- 분석에 활용된 김치류 수입량과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의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인 WITS의 자료를 이용함. 국가별 GDP와 인구 자료는 IMF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국별 농경지면적은 FAO의 통계 자료를 이용함. 또한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는 Kee et al.(2008)에서 계산한 가격탄성치를 적용함. 이러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 43개국 김치류(HS 200599) 수입량 자료와 수출량, 비관세조치 여부, 최혜국 관세율, 수입수요 가격탄성치, GDP 등을 정리함.

- 분석결과 비관세조치의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전 세계 김치류 수입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별 규모와 인구 등의 변수가 비관세장벽 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국가별 김치류에 대한 가격탄성치에 대한 추정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는 계산이 가능함. 중국의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는 2011년 13.1%, 2012년에는 11.6%로 추정됨. 2011년과 2012년의 중국의 최혜국관세(MFN)가 25.0%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본 분석에서 추정된 13.1%와 11.6%라는 관세상당치는 낮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추정된 관세상당치를 바탕으로 비관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중국의 전 세계로 부터의 김치류 수입량을 예측할 수 있음. 분석결과 2012년에 만약 비관세조치가 없었다면, 중국은 11,452톤의 김치를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됨. 2012년의 실제 수입량이 5,755톤임을 감안하면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아직까지 중국 김치류 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지만, 중국 소비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중국의 김치시장은 국내 김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수도 있음.
 -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국제 협상에서 무역장벽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상대국에게 설명하고 협상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양자간 비관세장벽에 대해 지속가능한 협력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 함으로써 농식품 부문에서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이 제한된 품목의 수출제한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김치 수출 확대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를 경쟁수입형 수입내생모형인 $[I - (I - \hat{m})A]^{-1}$ 모형을 활용하여 계측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이를 위해 김치 수출

이 5%, 25%, 50% 증가할 경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추정함.

- 분석결과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하였을 때 국내 전체 산업 생산유발액은 각각 122억 원, 610억 원, 1,220억 원(122~1,220억 원), 농림축산업에는 24억 원, 119억 원, 238억 원(24~238억 원)일 것으로 예상됨. 부가가치유발액의 경우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할 경우 국내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2억 원, 211억 원, 422억 원(42~422억 원), 농림축산업에는 13억 원, 64억 원, 129억 원(13~129억 원)으로 예상됨. 김치 수출이 5%, 25%, 50% 증가할 경우 국내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6명, 682명, 1,365명(136~1,365명)으로 계측되며, 농림축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54명, 271명, 543명(54~543명)으로 산출됨.
- 중국의 김치 비관세장벽이 해소 및 완화되어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국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 시장 김치 수출 초기 단계에는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인들의 한국 김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경우는 국내 산업 및 농림축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최근 한국과 중국의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양국 정상이 합의하는 등 대중국 김치 수출이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중국 시장으로 김치 수출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3. 비관세장벽 관련기관별 역할 개선방안

- 각 국가들의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증대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관계기관 간 협업·역할 분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장벽 대응 관련 기관별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관별 협력 방안을 제시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범부처 차원의 민·관 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있음. 또한 수출개척협회 안전 상정 여부, 기존 안전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2014년 2월부터 관계부처 TF인 “농수산식품 수출개척 TF”를 운영 중에 있음.
- 해양수산부는 주로 국가별 검역·검사·통관 위주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음. 수출협의회(김·굴·넙치·해삼), 수출선도조직(김·굴·전복·넙치)으로 구성된 주요 수출 품목별 회원사별로 지원 및 대응하고 있음. 향후 민간·통상·국외채널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굴·해소된 사례를 DB화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식품위생·안전성 관련 현장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있음. 특히 산업계·협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TF(위생기준국제조화사업단, 수출식품안전성인증사업단)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수출식품 지원 정보방’ 게시판),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수출국별 수입식품 기준·규격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관세청의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수집은 전화, email, 웹사이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해소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기업비용 절감액은 연간 300억 원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2013년에는 2,145억 원 수준임. 하지만 관세청으로 접수되는 통관 애로사항에서 농식품 관련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으로 농식품 부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등 국내외 채널을 통하여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발굴 및 수집하고 있음. 국내외 정보채널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비관세장벽 협의회에 의해 검토 및 평가되고,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이행방안을 요청,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비관세장벽 트렌드 대응 강화전략, 비관세장벽 대응 부처별·기관별 연계 강화, 국제협상 과정의 비관세조치 항목 구체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특히 수출국 비관세장벽 대응 협상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부처와 기관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체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위생·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조치 관련 수출 애로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SPS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SPS 문제에 대응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함.
- 각 협의체의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범부처 수출개척 TF에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민관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정부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협의

하고, 그 밖에 ‘국가간 관세청장회의(관세청)’, ‘기관간 협의체(식품의약품안전처)’, ‘FTA·WTO 협상(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양자·다자회의(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의제를 우선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은 관계기관 고유 업무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역, 식품 위생기준, 농약 안전기준 등 분야별로 분담하여 추진함. 비관세장벽 협상 지원 업무는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내 대응, 협상 진행, 품목 담당 등 관계 기관별로 분담함.
 - 국내 대응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관련 과 및 관련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지원함.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서 협상 일정 등을 총괄하여 협상을 진행함. 품목별로는 담당 부서 농가·업계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 관련 의견을 제시함.
- 비관세장벽 현황 조사 및 전달 체계 개선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서 농식품 관련 WTO SPS/TBT 변경 통보문 등을 번역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상 품목·대응 필요성 등을 분석, ‘농식품 SPS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전달함.
- 각 국의 SPS·TBT 등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동향 정보를 DB화하여 KATI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농가·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도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기관 고유 업무와 전문성, 현장과의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 식품 위생기준, 농약 안전기준 등 분담하여 개정된 기준 등에 대해 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비관세장벽 및 비관세조치 사례가 WTO 규정 및 FTA 협정문에서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추진되기를 기대함.

부 록

부록 1.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⁵⁸

| 구분 | 유형 | 예로사항 | 국가 | 품목 | 품목 유형 | 년도 |
|----|-----|--|----|-------|-------|------|
| 1 | 검역 | 중국 측은 한국 김치에 중국의 절임채소 위생기준 적용 | 중국 | 김치 | 전통가공 | 2014 |
| 2 | 라벨링 | 지역별로 라벨링 규정 상이 | 중국 | 막걸리 | 전통가공 | 2014 |
| 3 | 검역 | 열처리 된 축산가공품에 대한 수입규제 해소 필요 | 중국 | 삼계탕 | 전통가공 | 2014 |
| 4 | 검역 | 생우유의 멸균제품 분류 움직임으로 검사 소요기간 장기화 (월 이상) 우려 | 중국 | 생우유 | 전통가공 | 2014 |
| 5 | 통관 | 사전 등록 등을 통한 통관 소요시간 과다(1~2개월 소요) | 중국 | 식품전반 | 모든 식품 | 2014 |
| 6 | 기타 | 모방제품 범람으로 판매 차질 | 중국 | 식품전반 | 모든 식품 | 2014 |
| 7 | 기타 | 쌀 수출을 위한 중국정부 사전 비준획득 필요 | 중국 | 쌀 | 신선 | 2014 |
| 8 | 라벨링 | 작은 라벨링 변경 및 중국 정부 부처 간 규정 상이 | 중국 | 인삼 | 신선 | 2014 |
| 9 | 통관 | 5년근 이하 신자원식품 관련 지역별 담당자별 상이한 규정해석 | 중국 | 인삼주 | 전통가공 | 2014 |
| 10 | 통관 | 지역별 통관규정 상이 | 중국 | 주류 | 일반가공 | 2014 |
| 11 | 라벨링 | 지역별 라벨링 규정 상이 | 중국 | 주류 | 일반가공 | 2014 |
| 12 | 기타 | 과도한 표기사항 단속 | 중국 | 주류 | 일반가공 | 2014 |
| 13 | 검역 | 현지 영양성분 검사비용 과다 | 중국 | 모든 식품 | 모든 식품 | 2013 |
| 14 | 통관 | 각 항구별 중문 포장 라벨링 규정 해석 상이 | 중국 | 모든 식품 | 모든 식품 | 2013 |
| 15 | 통관 | 중문 라벨 표기 포장 인쇄 요구 | 중국 | 모든 식품 | 모든 식품 | 2013 |

⁵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T에서 작성한 통관 예로사항, 비관세장벽 관련 문헌,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서 공동 발간한 ‘2013 무역장벽 보고서’ 및 aT KATI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 농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정리하였음.

(계속)

| 구분 | 유형 | 에로사항 | 국가 | 품목 | 품목 유형 | 년도 |
|----|----|--|----|--------------------------|-------|------|
| 16 | 통관 | 축산물 성분이 포함된 가공제품 수입 불가 | 중국 | 냉동만두, 냉면육수, 소시지 등 | 일반가공 | 2012 |
| 17 | 통관 | 중문 포장 인쇄 | 중국 | 모든 식품 | 모든 식품 | 2012 |
| 18 | 검역 | 생막걸리, 김치 등 발효식품 위생기준 설정 | 중국 | 생막걸리, 김치 등 | 전통가공 | 2012 |
| 19 | 통관 | 담당자의 재량 남발 | 중국 | 소주 | 일반가공 | 2012 |
| 20 | 통관 | 검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 통관 요망 | 중국 | 신선 버섯, 선어 등 | 신선 | 2012 |
| 21 | 통관 | 심비디움 수출시 CITES 발급 의무화 및 통관검역 에로 | 중국 | 심비디움 | 신선 | 2012 |
| 22 | 검역 | 인삼 성분 함유제품의 과도한 수입 규제 | 중국 | 인삼캔디, 인삼젤리, 인삼음료, 인삼과자 등 | 전통가공 | 2012 |
| 23 | 통관 | 한국 브랜드 위변조 사례 | 중국 | 정관장등한국유명식품 | 전통가공 | 2012 |
| 24 | 검역 | 조미김 미생물 및 중금속 관련 위생기준 완화 필요 | 중국 | 조미김 | 전통가공 | 2012 |
| 25 | 통관 | 관세 신고가격 지정 | 중국 | 케찹 | 일반가공 | 2012 |
| 26 | 통관 | 제품함량 성 분지침상의 순서대로 신고 | 중국 | 해당 품목 | 일반가공 | 2012 |
| 27 | 검역 | 막걸리는 상이한 위생기준으로 생주의 유산균을 일반균과 동일 취급 | 중국 | 막걸리 | 전통가공 | 2010 |
| 28 | 검역 | 인삼의 첨가물 인정(약품일 경우 검역통관이 안 됨)으로 수출이 안됨 | 중국 | 삼계탕 | 전통가공 | 2010 |
| 29 | 통관 | 유자차를 비롯한 상당수 가공식품은 명확한 HS코드가 없어 기타식품으로 분류, 지역마다 관세율 상이 | 중국 | 유자차 등 가공식품 | 전통가공 | 2010 |
| 30 | 검역 | 홍삼, 백삼 등 뿌리삼을 “수입의약품등록제도”로 분류, 수입 제한 | 중국 | 인삼류 | 신선 | 2010 |
| 31 | 검역 | 식품 수입통관 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 | 중국 | 식품 전반 | 모든 식품 | |
| 32 | 검역 | 특정 식품에 대한 과도한 검역기준 요구 | 중국 | 농산물 | 신선 | |
| 33 | 제도 | 수입약재등록제도, 보건식품등록제도(시간, 비용 과다) | 중국 | 인삼(홍삼) | 신선 | |
| 34 | 제도 | 삼계탕 내용물인 인삼이 약품으로 분류, 등록 및 사전허가 필요 | 중국 | 삼계탕 | 전통가공 | |
| 35 | 제도 | 오미자 의약품 리스트에서 제외 필요 | 일본 | 오미자 | 신선 | 2014 |
| 36 | 통관 | 사전검사제도관련한국내지정검사기관활용방안 | 일본 | 가공식품 | 일반가공 | 2014 |
| 37 | 검역 | 제주산 가금육 일본 수입 금지 | 일본 | 닭고기 | 신선 | 2014 |

(계속)

| 구분 | 유형 | 에로사항 | 국가 | 품목 | 품목 유형 | 년도 |
|----|----|---|-------|-----------|-------|------|
| 38 | 제도 | 식품성분검사의 간소화 | 일본 | 생수, 모든 식품 | 일반가공 | 2013 |
| 39 | 제도 | 막걸리의 수입시 관세와 주세의 모순 | 일본 | 막걸리 | 전통가공 | 2013 |
| 40 | 통관 | 통관 절차 소요 시간 단축 필요 | 일본 | 모든 식품 | 모든 식품 | 2013 |
| 41 | 통관 | 검역소 담당자에 따른 비일관성 | 일본 | 모든 식품 | 모든 식품 | 2013 |
| 42 | 검역 | 식품첨가물 과도한 안전증명서 요구 | 일본 | 식품 전반 | 일반가공 | |
| 43 | 검역 | 공통분포 해충 검역 문제 | 일본 | 식품 전반 | 신선 | |
| 44 | 통관 | 금연초를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의약부외품 지정 불이행 하여 수입 규제) | 일본 | 농산물 | 신선 | |
| 45 | 통관 |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심사 강화 | 일본 | 축산물 | 신선 | |
| 46 | 기타 |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설정 운용 | 일본 | 수산물 | 신선 | |
| 47 | 기타 | 돈육 차액 관세 운용 | 일본 | 축산물 | 신선 | |
| 48 | 기타 | 한국산 소주에 대한 증류주 분류 | 일본 | 주류 | 일반가공 | |
| 49 | 기타 | 한국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운행 불가(서비스, 교통 물류) | 일본 | 수산물 | 신선 | |
| 50 | 제도 | 수입식품 등록제도(Makanan Luar: ML) | 인도네시아 | 가공식품 | 일반가공 | 2014 |
| 51 | 제도 | 농수산물식품 쿼터제도 | 인도네시아 | 농수산물 | 신선 | 2014 |
| 52 | 통관 | 신선농산물 수입항구 제한 | 인도네시아 | 신선농산물 | 신선 | 2014 |
| 53 | 검역 | 통관 소요 시간 단축 및 과도한 요구 해결 필요 | 인도네시아 | 포도 | 신선 | 2014 |
| 54 | 기타 | 원예작물 수입규제 부당 | 인도네시아 | 농산물 | 신선 | |
| 55 | 제도 | 목재 수출 규제 | 인도네시아 | 임산물 | 신선 | |
| 56 | 검역 | 수입 유통을 위해 과도한 시간 소요 | 베트남 | 식품 전반 | 모든 식품 | |
| 57 | 제도 | 식품별 검역기준 미흡 및 운영 부적절 | 베트남 | 농산물 | 신선 | |
| 58 | 제도 | 외국기업과 농민 간 농산물 직거래 전면 금지 | 베트남 | 농산물 | 신선 | |
| 59 | 검역 | 육류 및 계란류에 대한 생산업체 사전인증제도 | 싱가포르 | 육류/계란류 | 신선 | 2014 |
| 60 | 검역 | 생굴에 대한 인허가 제도 | 싱가포르 | 생굴 | 신선 | 2014 |
| 61 | 제도 | 식품수의청(AVA) 식품규정 변경(영양정보표시 개선) | 싱가포르 | 식품 전반 | 모든 식품 | |

(계속)

| 구분 | 유형 | 에로사항 | 국가 | 품목 | 품목 유형 | 년도 |
|----|----|--|-------|--------|-------|------|
| 62 | 검역 | 육류 및 계란류에 대한 생산업체 사전인증제도 | 싱가포르 | 육류/계란류 | 신선 | |
| 63 | 검역 | 생굴에 대한 인허가 제도 | 싱가포르 | 생굴 | 신선 | |
| 64 | 통관 | 수출농산물 컨테이너 번호 기재 면제 요청 | 대만 | 농산물 | 신선 | 2014 |
| 65 | 검역 | 한국에서 사용되는 농약 등록 추진 필요 | 대만 | 사과 | 신선 | 2014 |
| 66 | 기타 | 육류에 대한 할랄인증 제도 | 말레이시아 | 육류 | 신선 | 2014 |
| 67 | 제도 | 쌀 의무보관량 완화 | 홍콩 | 쌀 | 신선 | 2014 |
| 68 | 검역 | 식품안전성 확보 | 미국 | 식품전반 | 모든 식품 | 2014 |
| 69 | 기타 | 중국산 신고배 포장 모방 | 미국 | 배 | 신선 | 2014 |
| 70 | 검역 | 수출분재 통관시 간이검사요청 | 미국 | 분재 | 신선 | 2013 |
| 71 | 검역 | 건멸치 통관시 내장제거문제 | 미국 | 건멸치 | 신선 | 2013 |
| 72 | 검역 | 농수산 통관시 선도 유지 어려움 | 미국 | 농산품 | 신선 | 2013 |
| 73 | 통관 | 배 포장 박스에 '현지검역품' 표시 대신 스티커 대체 | 미국 | 배 | 신선 | 2013 |
| 74 | 검역 |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 시행으로 식품안전성 관련 규제 강화 | 미국 | 식품 전반 | 모든 식품 | |
| 75 | 제도 | 감귤 및 토마토 수입금지 해제 지연 | 미국 | 농산물 | 신선 | |
| 76 | 제도 | 소량 육류, 가금류, 계란 함유제품 미국 USDA FSIS수입허가 절차 강화 | 미국 | 축산물 | 일반가공 | |
| 77 | 통관 | 육류, 계란 소량 함유식품 수입검사 강화 | 미국 | 축산물 | 일반가공 | |
| 78 | 검역 | 수입 허용 검토 요청 | 인도 | 배 | 신선 | 2013 |
| 79 | 검역 | 식품의 유효기간 및 통관 에로 | 인도 | 식품 전반 | 모든 식품 | |
| 80 | 검역 | 식물류의 수입요건 충족에 장시간 소요 | 인도 | 농산물 | 신선 | |
| 81 | 검역 | 수입 허용 검토 요청 | 브라질 | 배 | 신선 | 2013 |
| 82 | 통관 | 알로에음료 의약품 분류 자국기관 검사 요청 | 브라질 | 음료 | 일반가공 | |
| 83 | 통관 | 건강식품을 수출하려면 ARTG에 등록 | 호주 | 건강식품 | 일반가공 | |
| 84 | 검역 | 머섯류 수입위험분석 대기상태 | 뉴질랜드 | 머섯류 | 신선 | 2013 |
| 85 | 검역 | 한국산 유제품 수입금지 | 멕시코 | 유제품 | 일반가공 | 2014 |

부록 2. 중국의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⁵⁹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1 | 심천 | 모든 가공식품 | 돼지고기만두 | 201201 | 190220000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30 |
| 2 | 심천 | 모든 가공식품 | 돼지고기만두 | 201201 | 190220000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25,200 |
| 3 | 심천 | 라면 | 라면 | 201201 | 1902303000 | 수분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22,260 |
| 4 | 심천 | 라면 | 라면 | 201201 | 1902303000 | 수분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17,600 |
| 5 | 심천 | 모든 김 | 조미김 | 201201 | 200899310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1 |
| 6 | 심천 | 모든 김 | 조미김 | 201201 | 200899310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1 |
| 7 | 심천 | 모든 김 | 조미김 | 201201 | 200899310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0 |
| 8 | 산둥 | 유제품 | 우유 | 201202 | 401200000 | 유통기한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0 |
| 9 | 산둥 | 과자류 | 과자 | 201202 | 190531000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0 |
| 10 | 상해 | 모든 가공식품 | 즉석식품 | 201202 | 2104200000 | 검역준입 미획득 | 기타 | 폐기 | 450 |
| 11 | 상해 | 모든 가공식품 | 즉석식품 | 201202 | 2104200000 | 검역준입 미획득 | 기타 | 폐기 | 5,274 |
| 12 | 상해 | 모든 가공식품 | 즉석식품 | 201202 | 2104200000 | 검역준입 미획득 | 기타 | 폐기 | 2,727 |
| 13 | 상해 | 모든 가공식품 | 즉석식품 | 201202 | 2104200000 | 검역준입 미획득 | 기타 | 폐기 | 17 |
| 14 | 상해 | 모든 가공식품 | 즉석식품 | 201202 | 2104200000 | 검역준입 미획득 | 기타 | 폐기 | 140 |
| 15 | 광둥 | 모든 가공식품 | 무설탕 타블렛 | 201203 | 1704900000 | 서류미비 | 기타 | 폐기 | 2,002 |
| 16 | 중경 | 음료 | 고체음료 | 201203 | 180690000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20 |
| 17 | 광둥 | 모든 기타 | 견과스낵 | 201203 | 200819999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6 |
| 18 | 광둥 | 모든 가공식품 | 현미녹차 | 201203 | 210690909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000 |
| 19 | 광둥 | 모든 가공식품 | 오미자차 | 201203 | 2106909090 | 서류미비 | 기타 | 반품 | 1,000 |
| 20 | 광둥 | 모든 가공식품 | 옥수수 수염차 | 201203 | 2106909090 | 세관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000 |

⁵⁹ aT의 KATI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중국의 주요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를 수집하여 유형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계속)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21 | 상해 | 기타 수산물 | 어유 | 201204 | 1504200000 | EPA, DHA 함량 불합격 | 성분 위반 | 반품 | 2,020 |
| 22 | 상해 | 기타 수산물 | 어유 추출물 | 201204 | 1504200000 | EPA, DHA 함량 불합격 | 성분 위반 | 반품 | 50 |
| 23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떡볶이 | 201204 | 19019000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1,000 |
| 24 | 심천 | 모든 가공식품 | 케익 | 201204 | 1905900000 | 화학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75 |
| 25 | 산동 | 모든 기타 | 광천수 | 201204 | 22011010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576 |
| 26 | 주해 | 모든 기타 | 설탕 | 201205 | 170199101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600 |
| 27 | 북경 | 모든 가공식품 | 쌀국수 | 201205 | 19023030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3,060 |
| 28 | 북경 | 모든 가공식품 | 떡국 | 201205 | 19023090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576 |
| 29 | 주해 | 음료 | 토마토음료 | 201205 | 2202900099 | 서류미비 | 기타 | 반품 | 10 |
| 30 | 산동 | 유제품 | 목장우유 | 201206 | 0401400000 | 유통기한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24 |
| 31 | 요녕 | 모든 가공식품 | 롯데파이 | 201206 | 19005900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0 |
| 32 | 산동 | 라면 | 라면 | 201206 | 1902303000 | 원료 검역준입 미획득 | 기타 | 폐기 | 96 |
| 33 | 광서 | 음료 | 인삼엑기스 | 201206 | 2106909090 | 서류미비 | 기타 | 반품 | 54 |
| 34 | 광서 | 음료 | 인삼엑기스 | 201206 | 2106909090 | 서류미비 | 기타 | 반품 | 54 |
| 35 | 북경 | 전통주 | 막걸리 | 201207 | 220600100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54 |
| 36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오징어젓 | 201207 | 160554000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540 |
| 37 | 절강 | 음료 | 과일맛 사이다 | 201207 | 2202100090 | 적양배추 화학물질 색소 사용 규정 위반 | 성분 위반 | 소각 | 6 |
| 38 | 산동 | 김 | 김자반 | 201207 | 200899310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146 |
| 39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낙지젓 | 201207 | 160559009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454 |

(계속)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40 | 산동 | 미역 | 다시마튀각 | 201207 | 2008993900 |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732 |
| 41 | 광둥 | 모든 가공식품 | 오미자차 | 201207 | 2106909090 | 필수 서류 미비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48 |
| 42 | 광둥 | 모든 가공식품 | 옥수수 수염차 | 201207 | 2106909090 | 대장균 군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104 |
| 43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창란젓 | 201207 | 160420999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259 |
| 44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캐비아 | 201207 | 160430000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360 |
| 45 | 광둥 | 모든 가공식품 | 현미녹차 | 201207 | 2106909090 | 대장균 군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500 |
| 46 | 닝보시 | 모든 가공식품 | 포도 시리얼 | 201208 | 1904100000 | 미생물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30 |
| 47 | 북경 | 유자차 | 꿀 유자차 | 201212 | 20083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21 |
| 48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비피더스 사과 요 구르트 | 201212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소각 | 36 |
| 49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바삭한 새우두부 | 201212 | 201690900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18 |
| 50 | 북경 | 모든 가공식품 | 쌀국수 | 201212 | 190230300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12,936 |
| 51 | 심천 | 모든 기타 | 야채맛 땅콩 | 201212 | 2008119000 | 과산화수소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5 |
| 52 | 상하이 | 모든 김 | 조미김 | 201212 | 2008993100 | 라벨링 불합격 | 라벨 불합격 | 소각 | 10 |
| 53 | 심천 | 과자류 | 땅콩스낵 새우맛 | 201301 | 2008112000 | 과산화수소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300 |
| 54 | 심천 | 과자류 | 땅콩스낵 김맛 | 201301 | 2008112000 | 과산화수소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259 |
| 55 | 광둥 | 모든 김 | 조미김 | 201301 | 2008999000 | 대장간균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45 |
| 56 | 상해 | 모든 기타 | 간장 | 201301 | 2103100000 | 라벨 불합격 | 라벨 불합격 | 폐기 | 2,483 |
| 57 | 산동 | 유자차 | 모과차 | 201301 | 2106909090 | 라벨 불합격 | 라벨 불합격 | 반송 | 9,615 |

(계속)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58 | 산동 | 모든 기타 | 생강차 | 201301 | 2106909090 | 라벨 불합격 | 라벨 불합격 | 반송 | 70 |
| 59 | 산동 | 유자차 | 유자차 | 201301 | 2106909090 | 라벨 불합격 | 라벨 불합격 | 반송 | 60 |
| 60 | 산동 | 음료 | 대추차 | 201301 | 2106909090 | 라벨 불합격 | 라벨 불합격 | 반송 | 70 |
| 61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해산물 치즈 소시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70 |
| 62 | 산동 | 모든 기타 | 영양두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50 |
| 63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두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560 |
| 64 | 산동 | 모든 기타 | 순두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119 |
| 65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전, 튀김용 두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479 |
| 66 | 산동 | 모든 기타 | 영양두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7 |
| 67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두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34 |
| 68 | 산동 | 모든 기타 | 순두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6,600 |
| 69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전, 튀김용 두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309 |
| 70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해산물 치즈 소시지 | 201301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2,160 |
| 71 | 광둥 | 음료 | 음료 | 201301 | 2106909090 | 맥문동 사용 | 성분 위반 | 폐기 | 46 |
| 72 | 산동 | 모든 어류 | 냉동삼치 | 201302 | 0303740000 | 감관검사 불합격 | 기타 | 반송 | 2,980 |
| 73 | 산동 | 모든 어류 | 냉동삼치 | 201302 | 0303740000 | 감관검사 불합격 | 기타 | 반송 | 6,700 |
| 74 | 산동 | 유제품 | 정일품우유 | 201302 | 04012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122 |
| 75 | 산동 | 음료 | 요구르트 | 201302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24,000 |
| 76 | 산동 | 음료 | 요구르트 | 201302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24,000 |
| 77 | 산동 | 음료 | 요구르트 | 201302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24,000 |
| 78 | 상해 | 유제품 | 인조버터 | 201302 | 1517100000 | 라벨 불합격 | 라벨 불합격 | 폐기 | 11,520 |
| 79 | 산동 | 유제품 | 매일우유 | 201303 | 04012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22,848 |
| 80 | 산동 | 유제품 | 매일우유 | 201303 | 04012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4 |

(계속)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81 | 산동 | 유제품 | 서울우유 | 201303 | 040221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4 |
| 82 | 산동 | 유제품 | 분유 | 201303 | 0402210000 | 셀레늄함량 불합격 | 성분 위반 | 반송 | 20 |
| 83 | 산동 | 유제품 | 분유 | 201303 | 0402210000 | 셀레늄함량 | 성분 위반 | 반송 | 20 |
| 84 | 산동 | 유제품 | 분유 | 201303 | 0402210000 | 셀레늄함량 | 성분 위반 | 반송 | 90 |
| 85 | 산동 | 유제품 | 우유 | 201303 | 0404900000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246 |
| 86 | 산동 | 기타 수산물 | 조미오징어 | 201304 | 0307490000 | 서류미비 | 기타 | 반송 | 17 |
| 87 | 산동 | 기타 수산물 | 조미대구 | 201304 | 0511911990 | 서류미비 | 기타 | 반송 | 17 |
| 88 | 산동 | 기타 수산물 | 조미오징어 | 201304 | 1605909090 | 서류미비 | 기타 | 반송 | 18 |
| 89 | 상해 | 유제품 | 파스퇴르분유 (750g) | 201304 | 1901100000 | 비타민B6, B12, 콜린 표준불합격 | 성분 위반 | 반송 | 36 |
| 90 | 상해 | 유제품 | 파스퇴르분유(14g) | 201304 | 1901100000 | 비타민B6 표준불합격 | 성분 위반 | 반송 | 168 |
| 91 | 산동 | 라면 | 김치면 | 201304 | 1902303000 | 대장간균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000 |
| 92 | 산동 | 음료 | 사탕수수액 | 201304 | 210690909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115,200 |
| 93 | 산동 | 모든 기타 | 삼다수 | 201304 | 2201101000 | 세균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414 |
| 94 | 산동 | 모든 기타 | 삼다수 | 201304 | 2201101000 | 세균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13 |
| 95 | 산동 | 모든 기타 | 삼다수 | 201304 | 2201101000 | 세균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2,428 |
| 96 | 산동 | 모든 기타 | 천연수 | 201304 | 2201101000 | 세균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216 |
| 97 | 산동 | 모든 기타 | 삼다수 | 201304 | 2201101000 | 세균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2,400 |
| 98 | 광둥 | 모든 김 | 조미김 | 201305 | 20089931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2,400 |
| 99 | 주해 | 음료 | 봉밀대추음료 | 201305 | 2106909090 | 이산화유황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34 |
| 100 | 산동 | 모든 기타 | 제주삼다수 | 201305 | 22011010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6,600 |
| 101 | 산동 | 모든 기타 | 제주삼다수 | 201305 | 22011010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7 |
| 102 | 산동 | 모든 어류 | 냉동고등어 | 201306 | 0303799090 | 감관검사 불합격 | 기타 | 반송 | 240 |

(계속)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103 | 산동 | 유제품 | 서울초원우유 | 201306 | 0401200000 | 클로람페니콜 검출 | 성분 위반 | 폐기 | 360 |
| 104 | 산동 | 유제품 | 강원목장우유 | 201306 | 04012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115 |
| 105 | 산동 | 음료 | 포도요구르트 | 201306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9,900 |
| 106 | 산동 | 유제품 | 딸기우유 | 201306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216 |
| 107 | 산동 | 음료 | 요구르트 | 201306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300 |
| 108 | 산동 | 음료 | 블루베리요구르트 | 201306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9,250 |
| 109 | 산동 | 음료 | 황금사과요구르트 | 201306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9 |
| 110 | 산동 | 음료 | 사과요구르트 | 201306 | 0403100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264 |
| 111 | 산동 | 기타 수산물 | 조미오징어 | 201306 | 1605909090 | 증서미비 | 기타 | 반송 | 971 |
| 112 | 하문 | 과자류 | 계란과자 | 201306 | 1905900000 | 타우린 위반사용 | 성분 위반 | 반송 | 120 |
| 113 | 산동 | 음료 | 과육주스 | 201306 | 200990100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400 |
| 114 | 광둥 | 음료 | 녹차라떼 | 201306 | 2101200000 | 대장간균, 곰팡이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3,105 |
| 115 | 광둥 | 음료 | 견과곡물음료 | 201306 | 2106909090 | 대장간균, 곰팡이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200 |
| 116 | 심천 | 음료 | 봉밀대추음료 | 201306 | 2106909090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송 | 645 |
| 117 | 산동 | 음료 | 딸기요구르트 | 201306 | 2202900099 | 세균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600 |
| 118 | 산동 | 음료 | 유산균 딸기음료 | 201306 | 2202900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384 |
| 119 | 광둥 | 음료 | 울무차 | 201306 | 2106909090 | 대장균군 과다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200 |
| 120 | 산동 | 음료 | 생과일 키위주스 | 201306 | 200990100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8,035 |
| 121 | 심천 | 음료 | 꿀 대추차 | 201306 | 210690909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2,515 |
| 122 | 닝보 | 과자류 | 초콜릿 샌드위치 쿠키 | 201308 | 19053100 | 감각 테스트 불합격 | 기타 | 폐기 | 8,554 |

(계속)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123 | 산동 | 음료 | 저지방 우유 | 201308 | 04012000 | 산성도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 |
| 124 | 샤먼 | 모든 가공식품 | 조미김 | 201308 | 20089931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1 |
| 125 | 닝보 | 과자류 | 초콜릿 막대과자 | 201308 | 19053100 | 대장균 군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800 |
| 126 | 산동 | 유제품 | 멜론맛 우유음료 | 201308 | 220290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8 |
| 127 | 상하이 | 음료 | 스포츠 음료 | 201308 | 220290 | 라벨링 부적합 | 라벨 불합격 | 반품 | 1,540 |
| 128 | 광둥 | 모든 가공식품 | 치즈 라면 | 201309 | 19023030 | 필요한 인증서 미제공 | 인증서 불합격 | 폐기 | 153 |
| 129 | 산동 | 유제품 | 분유 | 201310 | 1907100000 |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함량 표시 | 기타 | 반품 | 150 |
| 130 | 산동 | 모든 김 | 조미김 | 201310 | 2008993100 | 기준 콜로니 수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250 |
| 131 | 산동 | 유제품 | 염소 분유 | 201310 | 1907100000 |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함량 표시 | 기타 | 반품 | 7,980 |
| 132 | 광둥 | 기타 수산물 | 튀긴 다시마 | 201310 | 2008993100 | 대장균 군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7 |
| 133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치즈 크래커 | 201310 | 1905310000 | 제품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음 | 기타 | 폐기 | 9 |
| 134 | 산동 | 과자류 | 초콜릿 바 | 201401 | 1806320000 | 구리 성분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7 |
| 135 | 산동 | 모든 소스류 | 매운 양념 소금 | 201401 | 2103909000 | 대장균 수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7 |
| 136 | 상하이 |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 | 201401 | 2105000000 | 장기 보관, 화물 물류 회사 폐기 신고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13 |
| 137 | 광둥 | 김 | 김 | 201401 | 20089931 | 미생물(콜로니) 기준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5 |
| 138 | 산동 | 모든 소스류 | 매운 맛 소스 | 201401 | 2103909000 | 대장균 수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 |
| 139 | 산동 | 모든 소스류 | 해초 가루 | 201401 | 2103909000 | 대장균 수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 |

(계속)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140 | 상하이 | 모든 어류 | 병어 | 201401 | 0302693000 | 장기 보관, 화물 물류 회사 폐기 신고 | 유통기한 초과 | 폐기 | 8 |
| 141 | 산둥 | 모든 가공식품 | 과일 및 야채 분말 | 201403 | 2104200000 | 곰팡이 검출 | 기타 | 반품 | 9 |
| 142 | 장쑤성 | 음료 | 해초 고체 음료 | 201402 | 20089939 | 필수 인증서 미제출 | 인증서 불합격 | 폐기 | 5 |
| 143 | 산둥 | 음료 | 검은콩, 검은깨 두유 | 201402 | 22029000 | VA, VB1, VD3과 같은 불법 화학물질을 함유 | 성분 위반 | 반품 | 24 |
| 144 | 산둥 | 모든 수산물 | 소금에 절인 냉동 명태알 | 201402 | 03052000 | 카드뮴 초과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3 |
| 145 | 산둥 | 음료 | 검은콩 두유 | 201402 | 22029000 | L-카르니틴(L-Carnitine), VA, VB1, VD3의 불법 사용 | 성분 위반 | 폐기 | 3 |
| 146 | 장쑤성 | 음료 | 석류 주스 | 201402 | 22029000 | 엔다이브(치커리) 성분 사용 위반 | 성분 위반 | 폐기 | 3 |
| 147 | 장쑤성 | 음료 | 헛개 음료수 | 201402 | 22029000 | 쌀 배아즙 사용 위반 | 성분 위반 | 폐기 | 24 |
| 148 | 산둥 | 과자류 | 구운 감자칩 | 201403 | 200410 | 필수 인증서 미제출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24 |
| 149 | 산둥 | 과자류 | 땅콩 크래커 | 201403 | 190590 | 대장균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25 |
| 150 | 산둥 | 모든 가공식품 | 스카치 캔디 | 201403 | 170490 | 대장균 검출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980 |
| 151 | 산둥 | 과자류 | 치즈맛 구워 감자칩 | 201403 | 200410 | 필수 인증서 미제출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618 |
| 152 | 산둥 | 모든 가공식품 | 카레 | 201403 | 0910 | 필수 인증서 미제출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29 |
| 153 | 산둥 | 과자류 | 튀긴 떡볶이 과자 | 201403 | 1704 | 필수 인증서 미제출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7 |
| 154 | 산둥 | 과자류 | 계란과자 | 201403 | 19053100 | 인증서 불합격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7 |
| 155 | 산둥 | 과자류 | 롤 비스킷 | 201403 | 19053100 | 인증서 불합격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29 |
| 156 | 산둥 | 과자류 | 밀 초콜릿칩 쿠키 | 201403 | 19053100 | 인증서 불합격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29 |
| 157 | 산둥 | 과자류 | D브랜드 비스킷 | 201403 | 19053100 | 인증서 불합격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29 |

(계속)

| 구분 | 검역소 | 품목명 | 제품명 | 일자 | HS 코드 | 통관 거부 사유 | 통관 거부 유형 | 조치 | 물량(kg) |
|-----|-----|---------|-------------|--------|------------|----------------|-----------|----|--------|
| 158 | 산동 | 과자류 | I브랜드 비스킷 | 201403 | 19053100 | 인증서 불합격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146 |
| 159 | 산동 | 과자류 | 초콜릿 막대과자 | 201403 | 19053100 | 필수 인증서 미제출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36 |
| 160 | 산동 | 커피 | 커피 | 201403 | 19012100 | 인증서 불합격 | 인증서 불합격 | 반품 | 25 |
| 161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네가지 맛 과일 사탕 | 201404 | 17049000 | 색소 화학물질 첨가 | 성분 위반 | 폐기 | 4 |
| 162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롤사탕 | 201404 | 17049000 | 색소 화학물질 첨가 | 성분 위반 | 폐기 | 400 |
| 163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막대사탕 | 201404 | 17049000 | 색소 화학물질 첨가 | 성분 위반 | 폐기 | 18 |
| 164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작은 막대사탕 | 201404 | 17049000 | 색소 화학물질 첨가 | 성분 위반 | 폐기 | 83 |
| 165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과일 사탕 | 201404 | 17049000 | 색소 화학물질 첨가 | 성분 위반 | 폐기 | 160 |
| 166 | 산동 | 모든 소스류 | 토마토 소스 | 201404 | 20132000 | 염화칼슘 함량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140 |
| 167 | 산동 | 과자류 | 감자맛 과자 | 201404 | 20041000 | 비소함량 기준치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28 |
| 168 | 산동 | 모든 가공식품 | 둥굴레차 | 201404 | 09023090 | 콜로니 수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폐기 | 290 |
| 169 | 상하이 | 모든 가공식품 | 쇠고기 분말 조미료 | 201404 | 21039010 | 인증서 불합격 | 인증서 불합격 | 폐기 | 200 |
| 170 | 하문 | 과자류 | 파인애플 비스킷 | 201407 | 1905310000 | 대장균 기준치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140 |
| 171 | 닝보시 | 모든 어류 | 냉동정어리 | 201405 | 0303710000 | 비소함량 기준치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1 |
| 172 | 산동 | 과자류 | 딸기파이 | 201407 | 1905310000 | 아미란스 함량 기준치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90 |
| 173 | 선전 | 김 | 양념 김 | 201407 | 2008993100 |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90 |
| 174 | 절강 | 기타 수산물 | 어유 | 201407 | 1504300090 | 과산화물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소각 | 1,000 |
| 175 | 하문 | 라면 | 쇠고기맛라면 | 201405 | 1902303000 |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54 |
| 176 | 안휘 | 모든 임산물 | 홍차 | 201401 | 0902409000 | 아세페이트 기준치 초과 | 성분 기준치 초과 | 반품 | 40 |
| 177 | 하문 | 모든 가공식품 | 우유맛푸딩 | 2014 | 2007999000 | 유통기한 초과 | 유통기한 초과 | 소각 | 380 |

부록 3. 중국의 품목별 NTM 적용 현황

| 구분 | HS코드 | 품목 수 | 적용 NTM 형태 |
|----|------|-------|---|
| 1 | 0101 | 172 | A11, A12, A14, A19, A21, A50, A83, A84, A85, A86, P62 |
| 2 | 0102 | 121 | A11, A12, A14, A19, A21, A50, A82, A83, A84, A85, A86, P62 |
| 3 | 0103 | 262 | A11, A12, A14, A19, A21, A50, A83, A84, A85, A86, P62 |
| 4 | 0104 | 308 | A11, A12, A14, A19, A21, A50, A83, A84, A85, A86, P62 |
| 5 | 0105 | 559 | A11, A12, A14, A19, A21, A83, A84, A85, A86, P62 |
| 6 | 0106 | 1,262 | A11, A12, A14, A19, A21, A64, A82, A83, A84, A85, A86, B85, P62 |
| 7 | 0201 | 183 | A11, A12, A14, A19, A21, A31, A64,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8 | 0202 | 171 | A11, A12, A14, A19, A21, A31, A64,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9 | 0203 | 452 | A11, A12, A14, A19, A21, A31, A64,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0 | 0204 | 684 | A11, A12, A14, A19, A21, A31, A64,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1 | 0205 | 52 | A11, A12, A14, A19, A21, A31, A64,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2 | 0206 | 506 | A11, A12, A14, A19, A21, A31, A64,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3 | 0207 | 3,165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51, A64, A82, A83, A84, A85, B81, B82, D22, E10, E30, P62 |
| 14 | 0208 | 410 | A11, A12, A14, A19, A21, A31, A64,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5 | 0209 | 56 | A11, A12, A14, A19, A21, A3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6 | 0210 | 475 | A11, A12, A14, A19, A21, A22, A31,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7 | 0401 | 156 | A11, A14, A21, A22, A31, A41, A42,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18 | 0402 | 254 | A11, A14, A21, A22, A31, A41, A42, A82, A83, A84, A85, B81, B82, D32, P62 |
| 19 | 0403 | 100 | A11, A14, A21, A22, A31, A41, A42,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계속)

| 구분 | HS코드 | 품목 수 | 적용 NTM 형태 |
|----|------|------|---|
| 20 | 0404 | 100 | A11, A14, A21, A22, A31, A41, A42,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21 | 0405 | 152 | A11, A14, A21, A22, A31, A41, A42, A82, A83, A84, A85, B81, B82, D32, P62 |
| 22 | 0406 | 253 | A11, A14, A21, A22, A31, A41, A42, A82, A83, A84, A85, B81, B82, D32, P62 |
| 23 | 0407 | 373 | A11, A12, A14, A21, A22, A31, A53,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24 | 0408 | 180 | A11, A14, A21, A22, A31,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25 | 0409 | 46 | A11, A14, A21, A31, A41,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26 | 0410 | 259 | A11, A14, A21, A31, A82, A83, A84, A85, B81, B82, E30, P62 |
| 27 | 0501 | 39 | A11, A12, A14, A83, A85, B11, B42, E32, P62 |
| 28 | 0502 | 305 | A11, A12, A14, A83, A85, B11, B42, E32, P62 |
| 29 | 0504 | 362 | A11, A12, A14, A21, A31, A82, A83, A85, A86, B11, B42, B81, B82, D22, P62 |
| 30 | 0505 | 110 | A11, A12, A14, A83, A85, B11, B42, P62 |
| 31 | 0506 | 165 | A11, A12, A14, A83, A85, B11, B42, E30, P62 |
| 32 | 0507 | 149 | A11, A12, A14, A83, A85, B11, B42, E30, P62 |
| 33 | 0508 | 74 | A11, A12, A14, A83, A85, E30, P62 |
| 34 | 0510 | 180 | A11, A12, A14, A83, A85, P62 |
| 35 | 0511 | 366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82, A83, A84, A85, B11, B42, B81, B82, E32, P62 |
| 36 | 0601 | 120 | A12, A14, A15, A19, A33, A42, A83, A85, A86, P62 |
| 37 | 0602 | 308 | A12, A14, A15, A19, A33, A42, A83, A85, A86, P62 |
| 38 | 0603 | 140 | A12, A14, A15, A19, A33, A42, A83, A85, A86, P62 |
| 39 | 0604 | 60 | A12, A14, A15, A19, A33, A42, A83, A85, A86, P62 |
| 40 | 0701 | 36 | A12,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41 | 0702 | 25 | A11, A12,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42 | 0703 | 174 | A11, A12,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43 | 0704 | 105 | A12,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계속)

| 구분 | HS코드 | 품목 수 | 적용 NTM 형태 |
|----|------|------|--|
| 44 | 0705 | 76 | A12,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45 | 0706 | 42 | A12,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46 | 0707 | 23 | A12,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47 | 0708 | 64 |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48 | 0709 | 293 |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49 | 0710 | 236 |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0 | 0711 | 161 | A11, A12, A14, A15, A19, A21, A22,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51 | 0712 | 354 | A12, A14, A15, A19, A21, A22,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2 | 0713 | 356 |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3 | 0714 | 240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4 | 0801 | 163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5 | 0802 | 345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6 | 0803 | 26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7 | 0804 | 163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53,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8 | 0805 | 176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59 | 0806 | 52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60 | 0807 | 125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61 | 0808 | 139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

(계속)

| 구분 | HS코드 | 품목 수 | 적용 NTM 형태 |
|----|------|------|---|
| | | | A84, A85, A86, B81, B82, P62 |
| 62 | 0809 | 96 | A11,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63 | 0810 | 360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53, A64,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64 | 0811 | 92 | A11, A12, A14,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65 | 0812 | 32 | A11, A12, A14,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66 | 0813 | 208 | A11, A12,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67 | 0814 | 23 | A11,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68 | 0901 | 96 | A15, A19, A21, A22, A31, A33,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69 | 0902 | 200 | A15, A19, A21, A22, A31, A33,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0 | 0903 | 16 | A15, A19, A21, A22, A31, A33,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1 | 0904 | 72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2 | 0905 | 18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3 | 0906 | 54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4 | 0907 | 18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5 | 0908 | 54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6 | 0909 | 108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7 | 0910 | 90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P62 |
| 78 | 1001 | 72 | A11,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5, A86, E21, H10, P62 |

(계속)

| 구분 | HS코드 | 품목 수 | 적용 NTM 형태 |
|-----|------|------|--|
| 79 | 1002 | 30 |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80 | 1003 | 30 | A11,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81 | 1004 | 28 |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82 | 1005 | 43 | A11,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5, A86, B81, B82, E21, H10, P62 |
| 83 | 1006 | 254 | A11,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E21, H10, P62 |
| 84 | 1007 | 30 |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85 | 1008 | 75 | A11,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86 | 1101 | 20 | A11, A15, A19, A21, A22, A31,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H10 |
| 87 | 1102 | 93 |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E21, H10 |
| 88 | 1103 | 147 |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E21, H10 |
| 89 | 1104 | 146 |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E21, H10 |
| 90 | 1105 | 34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
| 91 | 1106 | 48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
| 92 | 1107 | 33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
| 93 | 1108 | 103 | A15, A19, A21, A22,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D22 |
| 94 | 1109 | 16 |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6, B81, B82 |
| 95 | 1201 | 125 |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96 | 1202 | 72 |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97 | 1203 | 12 |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P62 |
| 98 | 1204 | 15 |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P62 |
| 99 | 1205 | 60 |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P62 |
| 100 | 1206 | 44 |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

(계속)

| 구분 | HS코드 | 품목 수 | 적용 NTM 형태 |
|-----|------|------|---|
| | | | A86, B81, B82, P62 |
| 101 | 1207 | 294 |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02 | 1208 | 42 |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03 | 1209 | 197 | A12, A14, A15, A19, A33, A41, A59, A82, A83, A84, A85, A86, P62 |
| 104 | 1210 | 24 | A12, A15, A19,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105 | 1211 | 655 |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06 | 1212 | 456 | A12, A15, A19, A21, A33, A41, A82, A83, A84, A85, A86, B81, B82, P62 |
| 107 | 1213 | 24 | A12, A15, A19, A33, A41, A82, A83, A85, A86, P62 |
| 108 | 1214 | 24 | A12, A15, A19, A33, A41, A82, A83, A86, P62 |
| 109 | 1301 | 59 | A15, A19, A21, A33, A83, A86, E12, P62 |
| 110 | 1302 | 266 |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5, A86, B81, B82, E12, P62 |
| 111 | 1401 | 70 | A12, A15, A19, A33, A83, A85, A86, P62 |
| 112 | 1404 | 40 | A12, A15, A19, A21, A31, A33, A41, A82, A83, A85, B81, B82, P62 |
| 113 | 1501 | 43 | A11, A14, A21, A31, A41,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114 | 1502 | 84 | A11, A14, A21, A31, A41,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115 | 1503 | 41 | A14, A21, A31, A41,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116 | 1504 | 123 | A14, A21, A31, A41, A82, A83, A84, A85, B81, B82, P62 |
| 117 | 1505 | 21 | A21, A41, A82, P62 |
| 118 | 1506 | 38 | A14, A21, A31, A41, A82, A84, B81, B82, P62 |
| 119 | 1507 | 32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E10, E21, H10 |
| 120 | 1508 | 26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E10 |
| 121 | 1509 | 24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
| 122 | 1510 | 12 | A21, A31, A41, A82, A84, B81, B82 |
| 123 | 1511 | 64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E10, E21, H10 |
| 124 | 1512 | 51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E10 |
| 125 | 1513 | 48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
| 126 | 1514 | 80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E10, E21, H10 |

(계속)

| 구분 | HS코드 | 품목 수 | 적용 NTM 형태 |
|-----|------|------|---|
| 127 | 1515 | 122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E10 |
| 128 | 1516 | 30 | A14, A21, A22, A31, A41, A82, A84 |
| 129 | 1517 | 39 | A21, A22, A31, A41, A82, A83, A84,A85, B81, B82 |
| 130 | 1518 | 10 | A21, A22, A31, A41, A82, A84, B81, B82 |
| 131 | 1520 | 2 | A41, A82 |
| 132 | 1521 | 6 | A41, A82 |
| 133 | 1522 | 4 | A41, A82, B11, B42 |
| 134 | 1601 | 114 | A12, A21, A22, A31, A41, A82, A83, A84, A85, B31, B81, B82, P62 |
| 135 | 1602 | 731 | A11, A12, A21, A22, A31, A82, A83, A84, A85, B31, B81, B82, P62 |
| 136 | 1603 | 36 | A12, A21, A22, A31, A82, A83, A84, A85, B31, B81, B82, P62 |
| 137 | 1604 | 629 | A12, A21, A22, A31, A82, A83, A84, A85, B31, B81, B82, P62 |
| 138 | 1605 | 324 | A12, A21, A22, A32, A82, A83, A84, A85, B31, B81, B82, P62 |
| 139 | 1701 | 41 | A11, A82, E10, E21, H10, H11 |
| 140 | 1702 | 33 | A11, A21, A31, A41, A82, A83, E21, P60 |
| 141 | 1703 | 32 | A11, A82, A83, B14, B33, B42, B81, B83, B84, E12, E30, E32, P60 |
| 142 | 1704 | 14 | A22, A82, A85, B31 |
| 143 | 1806 | 30 | A21, A22, A85, B31 |
| 144 | 1901 | 34 | A21, A22, A31, A41,A42, A82, A84, A85, B81, B82 |
| 145 | 1902 | 120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
| 146 | 1903 | 14 | A21,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
| 147 | 1904 | 60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
| 148 | 1905 | 94 | A21, A22, A31, A41, A82, A83, A84, A85, B31, B81, B82, P60 |
| 149 | 2001 | 54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 150 | 2002 | 90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 151 | 2003 | 108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 152 | 2004 | 36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 153 | 2005 | 396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 154 | 2006 | 54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 155 | 2007 | 72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 156 | 2008 | 540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계속)

| 구분 | HS코드 | 품목 수 | 적용 NTM 형태 |
|-----|------|--------|---|
| 157 | 2009 | 416 | A11,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P62 |
| 158 | 2102 | 36 | A21, A31, A82, A84, A85, B31, B81, B82 |
| 159 | 2102 | 52 | A21, A22, A31, A82, A84, A85, B31, B81, B82 |
| 160 | 2103 | 91 | A21, A22, A31, A41, A82, A84, A85, B31, B81, B82 |
| 161 | 2104 | 26 | A21, A22, A31, A82, A84, A85, B31, B81, B82, E30 |
| 162 | 2105 | 13 | A21, A22, A31, A82, A84, A85, B31, B81, B82 |
| 163 | 2106 | 83 | A11, A21, A22, A31, A82, A84, A85, B31, B81, B82 |
| 164 | 2201 | 54 | A21, A22, A31, A82, A84, A85, B15, B31, B81, B82, P60 |
| 165 | 2202 | 26 | A21, A22, A31, A82, A84, A85, B31, B81, B82 |
| 166 | 2203 | 17 | A21, A22, A31, A82, A84, A85, B15, B31, B81, B82, B85 |
| 167 | 2204 | 70 | A21, A22, A31, A82, A84, A85, B15, B31, B81, B82, B85 |
| 168 | 2205 | 34 | A21, A22, A31, A82, A84, A85, B15, B31, B81, B82, B85, P60 |
| 169 | 2206 | 34 | A21, A22, A31, A82, A84, A85, B15, B31, B81, B82, B85 |
| 170 | 2207 | 36 | A11, A21, A22, A31, A41, A81, A85, B15, B31, B82, B85, E12, E30 |
| 171 | 2208 | 156 | A11, A12, A21, A3, A81, A84, A85, B15, B31, B82, B85 |
| 172 | 2209 | 15 | A21, A22, A31, A41, A82, A85, B31, B81, B82 |
| 173 | 2301 | 182 | A11, A14, A83, P62 |
| 174 | 2302 | 24 | A83, P62 |
| 175 | 2303 | 8 | A11, A83 |
| 176 | 2304 | 4 | A83 |
| 177 | 2305 | 2 | A83 |
| 178 | 2306 | 17 | A11, A83 |
| 179 | 2307 | 4 | A11, A83, P60 |
| 180 | 2308 | 6 | A11, A83, P62 |
| 181 | 2309 | 128 | A11, A14, A83, P62 |
| 182 | 2401 | 285 | A12, A14, A85, H10, P62 |
| 183 | 2402 | 2 | H10 |
| 184 | 2403 | 3 | H10 |
| 합계 | | 28,061 | - |

부록 4. 할랄 시장⁶⁰

1. 개요

1.1. 할랄 시장과 할랄 식품

1.1.1. 정의 및 특징

- 할랄 시장은 이슬람법 ‘샤리아’에 부합하는 시장을 총칭함.
 -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의 계율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의미함.
 - 이슬람이란 아랍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610년에 제창한 일신교로 유일한 신 알라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세계 3대 종교로 세계 인구의 30% 정도 차지함.
- ‘할랄 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 식품임.
 -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함.

⁶⁰ aT Focus vol. 30(2013), aT get 한국편 2014 K-05, aT(2014) 국가별 농식품 수출 대책(중동편), aT(2013) 수출시장 신규개척 및 다변화를 위한 심층조사(아랍에미레이트편), aT(2013) 수출시장 신규개척 및 다변화를 위한 심층조사(아랍에미레이트편, 사우디아라비아편), aT(2011)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동 이머징마켓 진출여건(이스라엘편, 이집트 편), 톰슨로이터(2014)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 등을 참조하고, 할랄 시장 관련 전문가 회의를 2회 개최한 결과를 참고하여 요약, 정리함.

- 이슬람 방식에 의해 도축된 모든 육상동물(개, 돼지, 육식동물, 당나귀 등 일부 제외)은 할랄 식품이며, 피, 알코올,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물질(마약류)은 금기함.
- P(Poisonous: 독이 있는지), I(Intoxicate: 취하여 혼미하게 하는지) H(Hazardous: 위험한지) 요소를 모두 피할 수 있다면 할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람으로 구분함.

1.1.2. 할랄 규정

- 해외 주요 인증기관 중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생산, 생산 준비, 처리, 저장)은 범위, 정의, 필수 요건(requirements), 준수 사항(compliance), 할랄 인증, 할랄 인증 마크로 구성되어 있음.⁶¹
- 할랄 식품의 필수요건은 관리 책임, 부지, 장비 및 기계, 위생 및 식품 안전, 생산 공정(할랄 식품 및 음료의 원재료), 도축 과정, 가공 및 처리, 저장 및 운송, 판매 및 제공, 포장 및 표시, 광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도축과 관련하여 도축 위치를 그림을 통해 명확히 제공하고 있음.
 - 할랄 식품 중 육류 인증이 까다로운데, 공인된 할랄 도축 기관의 인증을 받은 무슬림이 도축을 해야 하며, 도축 시 건강하면서 살아 있는 동물을 알라의 이름으로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⁶¹ 전문은 www.msonline.gov.my에서 MS 1500: 2009를 참고할 수 있음(유료).

〈 육류에 대한 할랄과 코셔 비교 〉

| Comparison of halal and kosher me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actices (Regenstein et al., 2003; Farouk, 2013) | | |
|--|---|---|
| Practice/attribute | Kosher | Halal |
| Pre-slaughter handling | Humane and deliberate treatment required | Humane and deliberate treatment required |
| Pre-slaughter state of consciousness | Animal must be alive and conscious pre-slaughter | Animal need only be alive pre-slaughter |
| Pre-slaughter stunning | Any stunning that renders the animal insensible prior to slaughter is not acceptable. None of the current methods are acceptable | Although non-stunning is most preferred, reversible forms of stunning is widely accepted and practiced |
| Post-slaughter stunning | Accepted by very few kosher authorities | Next-best to no-stun for the proponents of this method |
| Slaughterer | Must be a Jewish shochet | A Muslim or a practicing Jew (follower of Judaism) or Christian |
| Slaughter knife | A special knife (chalef) is required for each specie | No special knife is required. Knife can be used across species |
| Blessing on animals at time of slaughter | Not required on each animal | Required on each animal |
| Slaughtering | Must be a single stroke to sever the four vessels in the neck without severing the head. Multiple strokes renders meat non-kosher | Single stroke is preferred. Multiple strokes do not render the meat non-halal. The head should not be deliberately severed during slaughter |
| Post-slaughter further processing | On the complete death of the animal | On the complete death of the animal |
| 'Porging' and koshering | Required practices | Not required |
| Meat spiritual quality | Foundationally important | Foundationally important |
| Residual blood in meat following slaughter | Not acceptable. Must be koshered | What naturally remains in meat is acceptable |
| Edible portions | Certain parts of the carcass and some organs are not eaten | All edible parts are halal |
| Meat spiritual status | Kosher status could be affected when mixed with certain kosher foods | Halal status remain regardless of what other halal food it is mixed with |
| Acceptability | Kosher meat is halal for Muslims | Halal meat is not kosher for Jews |

자료: Farouk, M., H. Al-Mazeedi, A. Sabow, A. Bekhit, K. Adeyemi, A. Sazili, and A. Ghani. 2014. "Halal and Kosher Slaughter Methods and Meat Quality: A Review." Meat Science 98(3):505-519.

1.1.3. 전망

- 할랄 식품은 성분, 위생 측면에서 엄격한 검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검열이 비무슬림에게도 선호되고 있음.

- ‘The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에 따르면 할랄 식음료 시장은 2013년 1조 2,920억 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17.7%)에서 2019년 2조 5,370억 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21.2%)로 성장 예측함.
 - ‘The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3’에서는 2012년 할랄 식음료 시장이 1조 880억 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16.8%)에서 2018년 1조 6,260억 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17.4%)로 성장 예측함.
 - 호주, 브라질 등 낙농국가나 무슬림 거주인구가 많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할랄 산업에 적극 대처, 할랄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 중임.
 - 일본은 230개 업체가 할랄제품 도입에 적극적이며, 일부는 말레이시아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할랄 식재료, 식품, 어육 가공제품을 생산함.
 - 기존의 할랄시장은 무슬림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화장품, 의약, 금융, 오락, 여행, 물류, 미디어, 동물의 사료까지 영역이 확장됨.
- 할랄 시장은 지역적 개념이 아닌 종교적 개념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종교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태 유사성으로 강한 거대시장을 형성함.
- 중동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할랄 인증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 말레이시아 등 선진 이슬람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서 적용, 북아프리카 및 방글라데시 등 일부 빈민 무슬림 지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 적용함.
 - 단일 국가 규모로는 톰슨 로이터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약 1,904억 달러)가 가장 큰 시장이며, 그 다음으로는 터키(1,685억 달러), 파키스탄(1,084억 달러), 이란(970억 달러), 이집트(948억 달러), 방글라데시(59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527억 달러), 러시아(437억 달러), 인도(411억 달러) 순서임.

2. 할랄 시장 동향

2.1. 지역별 동향

2.1.1. 아시아

- 무슬림 인구의 60% 이상이 아시아에 거주하여 인구 대비 할랄 시장 규모 면에서 아시아가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큼.
 - 동남아는 할랄시장의 국제허브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할랄 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할랄 시장의 중간 유통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할랄시장 주요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신장 위구르 지역), 싱가포르, 인도 등임.

2.1.2. 중동⁶²

- 중동지역은 경제수준이 높고,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GCC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중심으로 할랄시장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큼.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GCC 지역 전체 식품 수입의 75% 차지함.
 - 터키는 유럽지역 할랄시장의 관문역할을 할 잠재적인 할랄 식품 공급 국가임.
 -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아프리카 할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이 가능함.
 - UAE는 국제 할랄 허브센터 구축으로 할랄인증제도의 통합화 추진중임.

⁶² 중동은 아시아 남서부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을 총칭하며 아랍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함. 이슬람권은 중동 및 동남아 지역 등의 이슬람 국가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됨.

- 건강 식품, 유기농 식품, 다이어트 식품, 생수, 청량음료, 커피 및 차 등 시장 확대 전망됨.
- 중동지역은 할랄에 대한 의존도 및 규제정도는 아주 높으나, 정부 시스템으로서의 할랄인증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증식품 소비에 대한 인식은 아시아 무슬림 국가 대비 낮은 편임.

2.1.3. 유럽

- 높은 소득 수준과 무슬림 인구 증가로 할랄 식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구매에 대한 수요로 비무슬림 소비자의 할랄 제품 소비가 증가함.

2.1.4. 미주

- 북미지역의 무슬림 인구는 타 지역에 비해 적지만 현재 약 800만 명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매력이 1인당 약 25,000 달러로 고급화된 할랄시장을 목표로 진출하기에 좋음.

2.2. 할랄 인증

- 할랄과정은 ‘생산-가격책정-유통-광고-소비’ 등 모든 과정에 샤리아에 부합해야 하며, 가공된 제품, 식품은 모두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 할랄 인증은 플랜트+품목 모두 결합된 의미이며, 특정 품목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품목이 생산되는 플랜트를 모두 점검함.
 - 해외 인증은 품목 상관 없이 플랜트 당, 국내 인증은 품목 당 금액을 산정함.

- 할랄 인증이 없어도 바이어 판단 하에 수입하기도 하지만 할랄 인증을 받으면 경쟁력이 더 생기는 것임. 실제 시장에서는 할랄이 없는 물도 마시기는 하지만 할랄이 있는 제품을 더 선호함.
 - 예를 들어 생수도 필터링을 하는데 가끔 돼지 뼈 가루가 필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수원지 인근 청결도, 인근에 축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모두 검증함.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할랄 인증 기준은 없으며, 아랍은 이슬람 종주국으로 할랄에는 철저하나 인증 개념은 약하며,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인증이 다양한 말레이시아에서 발달하여 아랍에서 할랄 인증 체계모니를 찾아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UAE에서 할랄 인증 통일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인증 표준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임.
 - 할랄 인증 산업의 선두주자는 말레이시아, 후발주자는 UAE임.
 - 할랄 시장은 보호무역의 장벽으로 역이용될 가능성 존재함.
- 전 세계적으로 할랄 인증 기관은 약 200~250 개이며, 인증 기준이 상이함. 수출을 위해서는 타겟 국가의 바이어나 소비자가 해당 인증을 신뢰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OIC SMIC, 미국 IFANCA, 영국 HFA가 대표적인 할랄 인증 기관임.
- 현재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가 유일하며, KMF 외에 해외 JAKIM 등에서 할랄 인증을 받기도 함.
- 국내 인증 비용은 품목당 100만 원(30만 원에서 인상)이며, 발급 기간은 통상 5~6개월 가량 소요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여 매해 인

증 갱신이 필요함.

- KMF가 말레이시아 JAKIM의 목록에 등록되면서 인증 획득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짐.
 - KMF는 인도네시아 MUI 목록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9년에는 MUI 대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직접 설립한 인증기관인 BPJPH가 할랄 인증을 담당할 예정임.
- 우리나라에는 할랄 인증 도축장이 없는 상황이며, 인증 받으려고 해도 KMF에서 인력 상 도계나 도축을 인증해줄 여건이 안 됨. 우리나라 도축장이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면 해외 인증 기관에서 한국 전담 슈퍼바이저 직원을 고용, 파견하여 확인 후 인증받도록 할 수는 있음.
- 식당이나 호텔은 재료나 사람이 매우 바뀌므로 인증이 어렵고, 도계 및 도축은 매일 관리자의 감독 하에 도계 및 도축을 해야 해서 매우 어려움.
- 할랄 식품은 인증이 까다로운 편인데, 특히 라면 등 복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하부 공정까지 품목제조공정서, 제조공정도 등 모든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복합 원료의 경우 인증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간소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국내 고추장의 경우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발생하는데 자연 발생 알코올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으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3. 시사점

3.1. 할랄 관련 인프라 확충

- 한국 기업도 2010년 이후 할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가 취약함.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할랄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나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명확한 판단조차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할랄 관련 인프라가 없는 상황임.
 - 할랄 관련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KMF가 JAKIM과 교차 인증이 가능해졌다거나 동등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KMF가 JAKIM 인증기관의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바른 표현임.
- 할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할랄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할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집단과 자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수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파악이 중요하므로 정부 간접 지원 방안으로 해당 지역 할랄 인증 담당자를 초청하여 인증 원료 및 규격 등 할랄에 대한 소개를 하여 현장 상황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 및 생산-가공-포장-저장-유통 등 전 과정의 할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할랄 식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 저장 등의 전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

도록 구분이 필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인프라가 없음.

- 중동 시장은 오히려 냉장, 냉동 저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할랄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할랄 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 클러스터 단지 내에 할랄파크 조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 뒤 할랄 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순서이나 우리나라는 여건 상 기초 인프라 구축과 할랄 단지 조성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 할랄제품도 식품이나 전자 등 다양하므로 전용 단지를 조성해서 단지 내 업체가 함께 용수, 하수 등 할랄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원재료를 공동 소싱, 식품 원료에 대한 데이터 공유, 정보 교류 등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며, 할랄 파크 조성 시 할랄 인증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영국 사우스웨일즈에도 할랄파크를 지정해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태국, 보스니아, 말레이시아 등도 할랄파크를 조성하여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에 할랄파크를 만든다면 한국 식품이 세계로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말레이시아는 HDC(할랄 산업 개발 공사)를 통해 할랄파크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네슬레 등을 유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슬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유치 까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국내 업체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3.2. 할랄 관련 정부 지원 방안

- 할랄 관련 해외 박람회 홍보 및 적극적 참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해외 박람회 참가 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비이슬람 국가라서 더 어려움이 많으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할랄 관련 푸드쇼에 대해 정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 홍보가 필요함.
 - 할랄 관련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한데 aT 지원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나 점점 더 기준이 강화되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완화되어 원재료를 수입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할랄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할랄 관련 특허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기 있는 할랄 식품에 들어간 성분을 분석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할랄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 정보 등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을 생산하는 특정 기업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를 DB로 구축하여 국가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까지 모두 정리하였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구축된 DB를 활용하면 새로운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음.
 - 현지인의 맛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 할랄 인증 절차의 까다로움 및 비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할랄 인증은 처음에는 매우 까다로우나 갱신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므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국내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이 더 저렴하고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내 KMF는 해외 인증기관만큼 인지도가 높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므로, 국내 KMF 위상이 제고된다면 국내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됨.
 - KMF는 현실적으로 인력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KMF 외에 해외 할랄 인증기관을 통한 할랄 인증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음.
 - 인증기관에 지급하는 신청료 개념으로 인증비용을 산출해보면 국내 KMF는 품목당 100만 원이고, JAKIM 등 해외 주요 인증기관은 플랜트 단위로 200~350만 원 수준으로(기타 컨설팅 등 부대 비용 별도) 20개 정도의 품목이 있는 플랜트인 경우 KMF에서 매년 2,000만 원이 소요됨.⁶³ 해외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신청료 외 출장비 및 컨설팅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더라도 국내 인증비용에 비해 비싸지 않음.
- 할랄 인증 기관 및 수출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호주 농업국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산 할랄 식품에 대한 신뢰 형성을 기대해볼 수 있음.
 - 동남아, 중동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도 많아 한류+할랄 인증으로 화장품 처럼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⁶³ 인증 비용은 국내 KMF는 품목당 100만 원, 말레이시아 JAKIM 해외 인증 시 2년마다 230만 원, JAKIM 현지 공장인증 시 2년마다 75만 원, 미국 IFANCA 해외 인증 시 매년 200~350만 원, OIC ICRIC 해외인증 시 매년 200만 원 수준임.

- 현지에서 한식이나 한국 문화(김치나 장류 등)를 많이 알리고, 문화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지 시장 진출이 성과를 내기 위해 현지 유통 환경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 향후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슬람 마케팅 윤리 숙지, 할랄 및 할랄 인증 관련 전문가 양성, 국제 패러다임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이슬람 혐오증에 대한 대응은 과제임.
 - 현재 할랄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은 상표법에 저촉되어 할랄 인증 마크를 붙여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의 하나로 2015년 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무슬림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대안으로 일본처럼 할랄 앱을 출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할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김종훈. 2012.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3(1): 73-99. 한국무역보험협회.
- 김태윤 외. 2010a.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태윤 외. 2010b.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연구자료 1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명현. 201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비관세장벽 증가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길 외. 2010.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5): 24-54. 한국무역학회.
- 송주호 외. 2010.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R6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주호 외. 2012.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R67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평섭 외. 2013.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연구보고서 13-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 2014.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법 개정. 양자경제진흥과. <http://goo.gl/gxrSEj>
- 이상훈 외. 2012.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연구자료 12-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윤. 2010.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의 모색 -비관세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법학농촌」 27(4): 27-4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용준 외. 20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호민 외. 2008.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 경희법학 43(1):295-324. <http://goo.gl/S6Pr5T>
- 전형진 외. 2010. 「중국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제도 분석 및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 C2010-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2012a. 「중국의 농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2012b.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환우. 2012.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11(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정환우. 2013.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FTA 협상시사점_기술무역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1(3): 89-115. 한중사회과학학회.
- 조윤희. 2013.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사업평가 13-05. 국회예산정책처.
- 관계부처합동. 2013.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
- aT. 각 연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 aT. 2014. ‘중국 내 김치 생산, 유통 및 소비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2014.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3. 「2013 외국의 통상환경」.
- 한국은행. 2014. 「2010 산업연관표」.
- Deardorff, A.V. and R.M. Stern. 1998. Measurement of Nontariff Barriers. 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ean, J.D., J.E. Signoret, R.M. Feinberg, R.D. Ludema, and M.J. Ferrantino. 2009. “Estimating the Pric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9(1), pp 1-39.
- EU. 2014. Indonesia: Law on Halal Product Guarantee. EU Delegation to Indonesia, Brunei Darussalam and ASEAN. <http://goo.gl/CttGDs>
- Farouk, M., H. Al-Mazeedi, A. Sabow, A. Bekhit, K. Adeyemi, A. Sazili, and A. Ghani. 2014. “Halal and Kosher Slaughter Methods and Meat Quality: A Review.” Meat Science 98(3):505-519.
- Kee, L. Hiau, Alessandro Nicita, and Marcelo Olarreaga. 2009. “Estimating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The Economic Journal, 119, pp. 172-199.
- _____. 2008. “Import Demand Elasticities and Trade Distor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4), pp. 666-682.
- Nakyinsige, K., Y. Che Man, A. Sazili, I. Zulkifli, and A. Fatimah. 2012. Halal Meat: A Niche Product in the Food Market. 2012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Trade and Development IPEDR 36. <http://goo.gl/1jXh1K>
- UNCTAD. 2005. Report on the Experts Meeting on Methodologies, Classification, Quantification, and Development Impacts of Non-Tariff Barriers.

TD/B/COM.1/EM.27/3. New York and Geneva.

UNCTAD. 2013.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February 2012 Version.

UNCTAD/DITC/TAB/2012/2. <http://goo.gl/1UaEtI>

USITC. 2011. China's Agricultural Trade: Competitive Conditions and Effects on U.S.

Exports. <http://goo.gl/g2FqAA>

USTR[Office of US Trade Representative]. 2015. WTO Appellate Body Affirms U.S.

Victory in Trade Enforcement Dispute Against Argentina's Import Licensing

Restrictions. Press Releases, January 2015. <http://goo.gl/8PvFRN>

USTR[Office of US Trade Representative]. 2014. United States Challenges Indonesia's

Ongoing Import Restrictions on Hort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Animal

Products. Press Releases, May 2014. <http://goo.gl/u3EZIX>

WTO. 2013. Trade Policy Review: Indonesia. Trade Policy Review Body, WT/TPR/S/278/Rev.1.

WITS(wits.worldbank.org)

GTA(www.globaltradealert.org)

<http://goo.gl/8PvFRN>

C2015-1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2.
발 행 2015. 2.
발행인 최 세 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